학생인권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조례

▌일시 : 2009. 9. 23.(수) 15:00~18:00

▌장소 : 경남교육정보연구원 4층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경남교육연대

일 정 표

일 정	주 요 순 서
15:00 ~ 15:10	인사말 : 이광영(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진선식(경남교육연대 공동대표) 조재규(경남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15:10 ~ 16:10	제1부 :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 발제.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 이필우 회장(경남생활지도전문연구회) 토론. 그린마일리지제의 의미와 효과 김갑영 교사(대방중학교) 토론. 학생의 입장에서 본 그린마일리지제 김지수 학생(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토론. 그린마일리지제의 효과성 진단 조형래 교수(창신대학교) 토론. 학교현장에서 바라 본 그린마일리지제 진영욱 교사(마산구암고등학교)
16:10 ~ 16:20	휴식
16:20 ~ 17:20	제2부 :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전망 발제.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전망 김현옥 집행위원장(경남교육연대) 토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당위성 김궁배 교사(창원봉림고등학교) 토론. 학부모입장에서 본 학생인권조례 김미선 지회장(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토론.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쟁점 김중섭 교수(경상대학교) 토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실효성 점검 노일환 연구위원(경남생활지도전문연구회)
17:20 ~ 17:50	종합토론
17:50	폐회

자료 목차

1.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 ····· 1
- 이필우 경남생활지도전문연구회 회장 kd0419@hanmail.net

2. 그린마일리지제의 의미와 효과 ····· 27
- 김갑영 대방중학교 교사 k33han34@naver.com

3. 학생의 입장에서 본 그린마일리지제 ····· 39
- 김지수 마산제일여고 학생 s2jisus2@naver.com

4. 그린마일리지제의 효과성 진단 ····· 47
- 조형래 창신대학교 교수 chohr@csc.ac.kr

5. 학교현장에서 바라본 그린마일리지제 ····· 55
- 진영욱 마산구암교 교사 tlappa@hanmail.net

6. 학생인권조례의 전망 ····· 69
- 김현옥 경남교육연대 집행위원장 scmaul@hanmail.net

7.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당위성 ····· 95
- 김궁배 창원봉림고 교사 goong62@hanmail.net

8.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조례 ····· 109
-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장 jinjuchamhak@hanmail.net

9.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쟁점 ····· 115
- 김중섭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kimjs@gnu.ac.kr

10.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실효성 점검 ····· 139
- 노일환 경남생활지도전문연구회 연구위원 nih2446@naver.com

11. 참고자료 ····· 155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

이 필 우 회장
(경남생활지도전문연구회)

발제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

이 필 우 (경남생활지도전문연구회 회장)

1. 그린마일리지제 도입 배경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잠재력 계발, 민주시민의식 함양, 인권과 환경의 중요성 자각 등을 통해 모든 생명체의 공존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는 생명의 공존 가치를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장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학생을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로만 인식하여 간섭과 통제로 일관하고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우리 사회가 거대 학교, 과밀 학급이라는 만만치 않은 조건 속에 있는 교사들에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은 시간을 생활지도라는 책무에 투자하기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지도를 강조하면서도 그 이면에 깃든 경쟁적인 교육 풍토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권위주의 문화는 그 어떤 빛나는 교육철학이나 교육목표라도 입시교육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초라하게 사라지게 하고 만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담임과 학생부장, 학교장은 “학생인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입시교육의 현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는 사치스러운 생각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학교 규정을 무시하는 학생들, 체벌의 범위를 넘어 선 교사의 폭력과 성추행, 학생의 교사 폭행과 성추행, 자녀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 사람 됨됨이와 능력의 기준점이 되는 학벌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특수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교원과 학교는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교원의 책무성을 말하기에 앞서 교원 자신이 이미 학부모이며, 사회 구성원의 선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더 이상 미래의 인격체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단위 학교에서 기존 생활지도의 제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는 아직도 교육 주체들의 합의 없이 만들어져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이 존재하고 적용되어 온 학교의 여러 규칙과 규정들이 있다. 현재의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 학생의 의사표현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고, 체벌 규정을 명시하여 허용함으로써 유엔국제기구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사례도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존중받으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열어주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단위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이후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앞서 언급한 우리 교육의 '특수한 현실' 속에 공교육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안에 따른 여러 연구 중 채택된 것이 그린마일리지제[1]라고 할 수 있다.

그린마일리지제는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상점과 벌점으로 지도하는 제도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 시책사업이다. 목적[2]을 간략히 정리하면 벌점

---

1) ○ 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하여 학생다운 행동 규범이나 생활 수칙을 학교,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고 학생의 실천 여부를 평점화하여 관리하는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 선행이나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칭찬점수(Blue Point)를, 위반 시는 지도점수(Red Point)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상응하는 보상이나 벌을 내림
○ 지도점수가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봉사활동이나 자구노력 과제를 스스로 이행하면 회복점수(Green Point)를 주어 회복점수만큼 지도점수를 감해줌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 나가도록 함
○ 칭찬점수가 많은 학생은 학교 규정에 의하여 시상하고, 지도점수가 많은 학생은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하여 학생들 스스로 긍정벌 위주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이행하도록 함
○ 운영의 효율화 및 교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경남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경남 GMDS)'을 기반으로 운영
○ 'SMS 문자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칭찬점수나 지도점수가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칭찬점수 및 지도점수 부여 상황을 실시간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림

누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에게 순화교육 이수 및 교내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상점을 주고 벌점을 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고 체벌을 대체하여 학교규칙 준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여러 시각과 실행의 어려움

기존의 학생생활교육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린마일리지제는 제도적 낯설음과 과정의 복잡함, 정서적 거부감, 정보 수집과 공유를 통한 유출의 위험성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는 다소 염려스럽게 인식되는 면이 있다. 학생들은 훈육과 훈계로도 되는 인성지도까지도 점수화 하고 누적 기록함으로써 자괴감이 생기게 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점수화되어 기록되는 것보다 매를 맞는 것이 낫다고 얘기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일탈된 행동이 점수로 누적·기록되는 것을 꺼려하며,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는 적용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는 인성교육은 사랑과 믿음이 있는 소통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점수화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생각과 일관성 있는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편으로 아직도 생활지도에 체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을 말하기도 한다.

경남 그린마일리지제

경남그린마일리지제는 교과부에서 제시한 추진 근거[3]에 따른 추진 방향인 '학교 자율화 취지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 '운영 효율화 및 업무 경감을 위한 GMDS 구축・활용', 'Off-Line 학생자치법정 연계 운영 권장'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지금까

---

2) **추진 목적**
- ○ 기존의 생활지도 방식 및 상벌점제 운영 방식 개선
- ○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칙 및 학교규정 정비
-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생활지도 실천
- ○ 기초질서 준수 등 학칙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
-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운영을 통한 공공의식의 생활화
- ○ 초・중・고를 연계한 규정 준수 교육을 통한 생활지도의 연속성 확보

3) ○ 국정과제 '09년 추진계획 : 규칙과 약속이 움직이는 학교풍토 조성
○ 2009년 생활지도 정책방향 및 운영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8.12.04.)

지 일부 학교나 타 시도에서 시행한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지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행 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을 고려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의 기조 위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그린마일리지제 운영의 실제

□ **1단계 :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
- ○ 학생생활규정의 인권침해 소지 조항 삭제 및 제·개정
- ○ 인성지도의 본질과 관계없는 조항은 과감하게 삭제
- ○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합의로 제·개정
- ○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의 활용 : 그린마일리지제 운영 매뉴얼 참조
- ○ 마일리지 포인트 항목 정하기

□ **2단계 : 학생생활규정 제대로 알리기**
- ○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학부모 및 교사에게 반드시 알리기
- ○ 학생의 칭찬 및 위반 행동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바로 알리기(SMS)

□ **3단계 : 학생생활규정 제대로 지키기**
- ○ 적용범위 결정 및 학생생활규정 엄정 적용
- ○ 학생 생활지도 수단으로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GMDS)[4] 활용
- ○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GMDS)과 연계한 학생자치법정 운영

그린마일리지제 실행을 통한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풍토 조성 방안의 기본 논리

---

4)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활용**
- ○ 시스템명 : 경남 GMDS (Green Mileage Digital System)
- ○ 운영방식 : 학교단위 서버 운영
- ○ A/S관리 : 개발업체 3년간 유지 보수(A/S)
- ○ 업데이트 : 그린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 업데이트
- ○ 자료의 백업 : 자료 저장 시에 자동 백업 ○ SMS 연계 운영
- ○ **경남 그린마일리지 전용 홈페이지 운영 : http://그린마일리지.kr**

□ 오늘날 심각한 사회 폭력과 비도덕적인 사회문제 해결
□ 계속되는 학생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

↓

□ 학교에서 인성교육 철저

↓

□ 대학입시에 인성분야 내용을 반영 **※ 정책 제언 사항**

↓

□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기록(객관적 자료)에 의한 서술평가 기록

↓

□ 교사의 **교권이 존중**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

↓

□ 객관적 자료의 제시 **※ 권한과 책임 부여**

↓

□ 그린마일리지 실행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

↓

□ 학생 인권 존중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없어짐)

그린마일리지제 만족도 조사 결과 <참고자료 1>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그린마일리지제 우선 시범운영 학교 140개교를 대상으로 그린마일리지의 제도와 운영 대해 자체 제작한 설문지 방식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지도 관련 제 규정 정비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생이 공감하는 규정 만들기' 질문에서 제정한 학교가 41개교이며, 개정한 학교가 99개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규정이 미비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 초등학교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연수가 필요하다.

학교 규정 제·개정에 참여한 인원수는 1교당 평균 341.4명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로는 학생 > 교사 >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 고등학교 >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학부모

의 참여율이 다소 낮았다. 개선 방향으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린마일리지제 운영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포인트 부여 현황'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칭찬점수(BP) 위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BP를 RP보다 많이 부여하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BP보다 RP를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보이며,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징계규정과 연계하여 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선방향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한 강화가 더욱 바람직한 생활지도 방법임을 인식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BP 항목 개발과 BP 부여 위주의 그린마일리지제 운영이 필요하다.

교사의 참여율이 낮고, 특히 BP 포인트 부여에 참여율이 낮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의 교사가 그린마일리지 포인트 부여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RP보다 BP를 부여하는 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와 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마일리지 포인트 부여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가 참여하는 교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중등학교에서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선방향으로는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칭찬점수 위주의 그린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시범학교 실시 결과에 따른 그린마일리지제 운영상 유의사항

학생생활규정은 인권 친화적으로 제·개정되어야 한다.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지금까지의 관행인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조항(체벌, 두발, 용의복장, 용모 등)은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시 되도록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지 않는 생활지도 방법은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마련이다. 특히 학생들이 학생생활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공감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생의 공감을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린마일리지제의 취지와 목적 및 학생생활규정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생활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그린마일리지제가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린마일리지제의 취지와 목적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대로 알려 공감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이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해와 동참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린마일리지제의 한글 용어는 '학생생활평점제'로 정의한다.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생활평점제'는 같은 의미의 용어이며, BP는 '칭찬점수'로, RP는 '지도점수'로, GP는 '회복점수'로 정의한다.

그린마일리지제는 기존의 '상벌점제'와는 기본 철학과 목적이 다름을 이해하고 '상벌점제', '상점', '벌점' 등의 용어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그린마일리지제는 칭찬점수(BP) 위주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그린마일리지의 근본 취지는 상과 칭찬으로 학생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있다. BP 부여 항목을 더욱 개발하고 BP 부여 위주의 운영을 하여야 한다. 칭찬이 벌보다 더 효과적인 강화 방법이다.

전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린마일리지의 성패는 전 교직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참에 달려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하여 정한 규정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적용하여야만 규정준수 풍토 조성과 교권 확립이라는 그린마일리지제의 두 가지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지도 실천을 위해 SM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린마일리지제의 목표 중 하나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지도'이다.

학생의 학습 상황 뿐 아니라 학교 생활태도에 대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습태도와 관련한 학생의 특성에 대한 그린마일리지 포인트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

학습태도와 관련한 BP나 RP의 적용에 대하여 단위학교의 구성원이 자발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학습태도[5]의 평가는 교과담임이 수행평가 등의 형태로 교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학습태도는 학습활동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간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존중,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적 능력에 의해 지도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 분위기를 크게 훼손하는 정도가 상습적인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포인트의 항목은 교육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포인트 항목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적으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포인트의 항목과 내용이 '그린마일리지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 교육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항목은 지양해야 한다.

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RP 항목[6]은 제거하여 학생, 학부모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벌점항목에 넣어 숨쉬기 힘들 정도로 통제[7]가 심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항목도 없애야 한다.

교육적인 신고[8]와 비교육적인 고자질[9]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자질' 혹은 '내부 고발자'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린마일리지는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린마일리지는 학생을 체벌로부터 보호를 하자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체벌을 행한 교사의 교권은 어떤 이유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린마일리지를 통해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GMDS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GMDS 접근 권한을 다르게 구분하여 부여한다.

전학 및 편입, 졸업 시 GMDS의 기록에 대한 보존, 자료이관, 폐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결과 자료의 활용 범위를 결정한다.

GMDS의 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의 객관적인 자료로만 사용한다.

GMDS의 결과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의 인성관련 분야의 객관적인 기록의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학생이 어떤 부분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한지, 어떤 부분의 능력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연말에 가서 학생에 대한 평가를 두루뭉술하게 서술하여 오던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벗어나 학생의 평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린마일리지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지켜야 한다.

그린마일리지는 제정된 규정을 학생과 교사가 상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마일리지의 실천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사가 체벌, 인격모독, 인권 침해, 규정 무시 등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책임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는 학생 개인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누가기록이다.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는 점수의 개념보다는 횟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칭찬 또는 지도받은 행동을 누가 기록하여 시상의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나쁜 버릇으로 습관화되어 지도와 개선이 요구되는 행동 특성을 발견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행동 특성은 상대평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이해하는 절대적 평가여야 한다. 다른 학

생과 비교하기 위한 점수화 나 서열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급별이나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학년은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초점을 둔다면, 고학년에 대하여는 '상벌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고위험군, 위험군, 주의군, 안전군 등 학교 안전도[10]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BP만 활용, BP·RP만 활용, BP·RP·GP 모두 활용, 학생자치법정과 연계 또는 징계규정과 연계 운영 등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다.

월별 중점 지도 덕목을 정하여 하나의 덕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린마일리지제의 시행 여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학교공동체가 판단하고 결정할 몫이다.

소규모 학교나 그린마일리지제 보다 더 효율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의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

'인권은 상대적이다. -인권의 딜레마?',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냐? 교권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둘 다 소중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

5) 수업 시작 후 늦게 입실하는 경우, 수업 중에 떠드는 경우, 과제물의 준비 부족,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 수업 중에 발표를 잘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발표를 잘하는 경우 등
6) 학교 중앙현관 출입금지, 타반 출입 금지 등
7) 학습시간이 아니거나 타인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이해 될 수 있는 행동까지도 통제 하는 경우
8) 학교폭력의 현장이나 예비음모 신고, 화재 신고, 습득물 신고 등
9) 고자질을 통해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포인트를 아주 낮게 적용하여 점차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다.
10) 학교부적응 지수 활용 조견표에서 학교부적응 수준의 비율이 5% 이하인 학교를 고위험군, 10 이하인 학교를 위험군, 30% 이하인 학교를 주의군, 50% 이하인 학교를 안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권을 대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과 보편적 가치를 교사의 교권(여기서는 가르치고 지도할 권리로 한정)과 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며, 내가 인격적 존중을 받기 원하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끊임없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할 그린마일리지제 포인트

그린마일리지제는 블루포인트(이하 'BP', Blue Point), 레드포인트(이하 'RP', Red Point), 그린포인트(이하 'GP', Green Point)를 통해 적용 관리되며, 이 항목들에 담긴 하나하나의 기준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단위 학교 현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고려하여 제시한 항목들은 지금도 수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시범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항목들의 기준이 모호하다.', '너무 세세하게 하여 학교생활이 숨 막힐 지경이다.', '학생의 입장에 보면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된다.', '규제와 통제만이 강화되고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보장한다는 참여와 배려, 소통 등이 부족하다.', '수업 진행을 원만히 하고 성적 우수자와 모범생을 배려, 유도하는 항목들이 있다.', '초·중·고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계와 전문계고의 실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원인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 항목 중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거나, 단위 학교에서 교육주체가 진솔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소홀히 하여 알맞은 항목과 배점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연구위원들과 그린마일리지제를 시범 실시한 '초·중·고, 일반계와 전문계고의 학생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생활교육의 대전제는 사랑과 소통, 그린마일리지제는 새로운 대안 수단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나 활동하는 모든 시간은 생활교육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업시간조차 엄밀한 의미에서 교과지도활동과 인성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은 "생활교육의 본

질은 '사랑'이라 믿어왔고 그것을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는데도 솔직히 요즘 학생들 교육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생활교육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생활습관, 가치관, 문화 등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이미 교사와 학생 세대 간에 가치관과 문화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활동을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내 자녀교육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회(언론 등)는 학교에 더 이상 관대하지 않다. 학생들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공유하는 시대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다양해진 요구와 의식 변화를 바르게 읽고 이해한 바탕에서 교육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은 상하관계나 우선순위가 아닌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소통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마일리지제는 '학생생활교육의 본질은 사랑이다.'는 변할 수 없는 명제 아래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학생생활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생활교육에는 변하지 않는 모범 규범이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린마일리지제 또한 치밀한 준비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어야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첫째, 운영의 확대를 시간 설정을 목표로 하지 않고 4단계(시범운영 단계 - 확대 시행 단계 - 정착 단계 - 완성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장 컨설턴트(학부모 대표를 포함)를 구성하여 그린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자리를 마련한다.

셋째, 그린마일리지제의 시행 여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학교 공동체가 판단하고 결정할 몫이나, 포인트 항목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민주적 의사결정 수렴 구조를 위해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도록 지원, 지도해야 할 것이며, 단위 학교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과 포인트 항목 적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위 네 번째 단계를 거친 단위학교 그린마일리지제 실시가 바람직하다.

여섯째, 생활교육에 있어서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는 잣대는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함을 직시하고 지도해야 한다.

일곱째, 교사가 항목 포인트를 고의나 부당하게 적용했을 했을 경우 사과, 시정,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이 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남 그린마일리지제의 부족한 점과 우려되는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판을 수용하고 교육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린마일리지제의 정신이고 나아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린마일리지제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거나 학생 관리와 효율적 통제수단이나 또 하나의 잡무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관리자, 학교와 교육청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진정한 소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그린마일리지제 만족도 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 시범운영 기간 : 2009년 4월~5월(약 2개월)

□ 조사도구 : 그린마일리지의 제도와 운영 대해 자체 제작한 설문지

□ 조사대상 : 그린마일리지제 우선 시범운영 학교 140개교

□ 결과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 대상학교 중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그 문항만 제외하였다.

□ 학생자치법정 문항은 실시한 학교가 없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학생자치법정의 필요성 조사 문항12에 대하여는 응답한 학교의 자료만으로 분석하였다.

□ 문항7, 문항8은 GMDS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문항이다.

□ 문항9, 문항10, 문항11은 그린마일리지제 운영과 관련한 교사의 태도 및 만족도 조사 문항이다.

□ 5점 척도 문항으로 3점(보통)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부정적, 그 이상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대상별 GM 만족도

□ 전체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남

□ 대상별 만족도 결과 교사가 가장 높고, 학부모, 학생 순으로 나타남

□ 학생은 GM 홍보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제일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 학생의 인권 향상도는 '보통이하'로 나타남

□ 문항별 분석은 학생자치법정의 필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문제점 :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개선방향 : 전체적으로는 '보통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우려 되었던 결과이다.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취지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을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 문제점 : 학생의 인권향상에 대한 인식 정도가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 개선방향 : 학생의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학교 규정의 제·개정 시에 인권이 침해되는 조항은 제거하여 학생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제·개정 되어야 한다.

■ 문제점 : 문항별 분석에서 학생의 자치법정의 필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개선방향 : 학생자치법정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자치법정을 실시하려는 주된 취지와 목적의 이해가 필요하다.

다. 학교 급별 학생의 GM 만족도

□ 학교급별 학생의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의 만족도는 전 문항에서 '보통이하'로 나타남
□ 중학교는 GM 홍보, GM 인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3.0점 이하로 나타남
□ 중학생은 포인트 부여 후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대해 만족도가 3.0점 이하로 나타남

■ 문제점 :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생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개선방향 :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는 징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 :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모두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 개선방향 : 고등학생의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이해와 학교의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문제점 : 중학생은 자신이 받은 포인트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 개선방향 : 교사가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해 오면 의견의 타당성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학교급별 학부모의 GM 만족도

□ 학교급별 학부모의 만족도는 모두 '보통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만족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는 홍보와 학생 인권향상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문제점 :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개선방향 :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부모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부모의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문제점 : 고등학교 학부모의 홍보분야와 인권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개선방향 : 고등학교는 학교 규정의 개정 시에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

여를 유도하는 등 그린마일리지제의 시행에 앞서 보다 철저한 준비과정과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의 생활지도 방법 개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2> 학생생활규정 예시(중등)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규정은 '000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본 규정은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규정' 등을 제외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 규칙과 질서가 지켜지는 학생의 기본생활정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체벌금지)에 근거한다.

제4조 (구현방안) 본 규정은 제2조 (목적)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린마일리지디지털시스템(GMDS)'을 활용한다.

제2장 권리와 책임
제5조 (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1.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
3.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4. 말이나 글 등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6. 출신, 성별, 성적, 외모,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6조 (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호의 책임이 있다.
1. 상호 존중하며 폭력과 체벌을 행하지 않을 책임
2.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3.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4. 정해진 시간을 지킬 책임
5.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6. 바르고 고운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영위할 책임

제3장 기본 품행
제7조 (예절) ① 인사는 서로 먼저 본 사람이 한다.
② 학생과 교사는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휴대폰사용) ① 학습 공간에서의 모든 활동 및 자율학습 시에 휴대폰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
②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 예절을 지킨다.
③ 위의 ①과 ②를 위반할 경우 교사와 학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질서) ①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여 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성교제) ① 교내에서 다음 각호의 건전한 이성교제는 존중한다.
1.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에 맞는 이성교제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이성교제
② 교내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이성교제는 규제한다.

제11조 (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4장 건강과 안전
제12조 (음식물의 섭취) ① 음식물은 교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어디에서나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품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13조 (청결활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한다.
1.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2.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3. 침, 가래, 콧물 등 신체 분비물
4. 각종 음식물

제14조 (소지품) ① 가방은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②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③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 흉기(체인, 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매니큐어, 색조화장품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④ 실내청결 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껌이나 사탕 등의 소지를 금할 수 있다.
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용의 복장
※ 특별히 용의복장에 관한 부분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예민하므로, 규정 제·개정 시에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복장) ① 학교에서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②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
③ 지정된 체육복은 교내에서 생활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등하교 때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기타 의류[11]를 착용할 수 있다.

제16조 (두발) 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두발규정을 적용한다.
② 머리카락의 변형을 가하는 행위(파마, 웨이브, 염색) 및 미용품(무스, 젤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여학생은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할 목적으로 머리핀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용모)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초 화장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② 안경이나 렌즈는 시력 보정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③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의 착용은 금하되 종교적인 것은 예외로 한다.

제18조 (부착물) ① 교복 착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부착물(이름표, 배지 등)은 정해진 위치에 착용한다.
② 머리띠나 핀의 모양과 색상은 개성에 맞게 하되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고 수업

중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한다.

제19조 (신발 등) ① 신발은 학생용 단화 또는 일반 운동화로 한다.
② 실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③ 발목양말을 허용하며 색상은 자유롭게 한다.

제6장 교내생활
제20조 (등·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 합당한 사유나 보호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교육과정 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해당학년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22조 (수업시간) 학생은 수업시간 중에 다음 각호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수업 시간에 맞춰 미리 학습 준비를 한다.
2. 수업의 진행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3. 수업 중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4.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5.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6. 기타 수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제23조 (수업 외 시간) 학생은 수업, 자율학습 외 시간에 다음 각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합당한 이유 없이 복도에서 뛰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
2. 실내에서 공놀이, 격투기 등 심한 장난을 하는 행위
3.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4. 싸움 또는 폭력이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제24조 (공공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1. 학급, 복도 환경게시물
2. 학급 청소용품, 책걸상과 기타 교구
3. 교실 및 실내·외 출입문, 유리창, 냉온풍기, 음용수기 등의 교내 공공 시설물
② 제1항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 (타 학급교실 출입) ① 필요한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도록 한다.
② 다른 학급에 용무 외에 출입할 때 해당 반 담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 참여 및 학교 업무보조 활동을 한 경우에 봉사활동 시수로 인정 할 수 있다.

제7장 학생자치활동
제27조 (목적)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한다.

제28조 (학급회) ① 학급회 조직을 구성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학급에 대한 모든 문제의 논의는 학급회를 통해서 해결한다.
③ 담임교사는 학급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제29조 (전교학생회) ① 선거를 통해 학급 대표가 된 학생은 전교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
③ 담당부장은 전교학생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율해야 한다.

제30조 (기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내용은 '전교학생회회칙', '전교학생회선거규정'에 따른다.

제8장 동아리활동
제31조 (허락) ①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조직한다.
②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동아리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교내 및 교외 학생 동아리 활동은 담당지도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활동) ①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동아리 활동을 권장·보호·지원 하며 학생은 지도교사와 함께 활동한다.
② 허가된 동아리에 대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한다.
③ 허가된 연합동아리 활동 및 행사 참여를 보장한다.
④ 공인된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제9장 그린마일리지
제33조 (목적) 학생의 기본생활지도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제34조 (적용 기간) 그린마일리지 적용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 모든 포인트는 초기화 하도록 한다. (단, 축적된 자료는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는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에 각 영역에 적합한 내용으로 서술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제36조 (포인트) ①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는 각호와 같다.
1. 블루포인트(이하 'BP', Blue Point)
2. 레드포인트(이하 'RP', Red Point)
3. 그린포인트(이하 'GP', Green Point)
②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는 각호에 의해 주어진다.
1. 칭찬과 격려를 받을 행동을 한 경우는 제1항 제1호의 포인트를 받는다.
2. 개선하거나 변화되어야 할 행동을 한 경우는 제1항 제2호의 포인트를 받는다.
3. 제1항 제2호의 포인트를 받은 학생이 '<별표 3> 자구노력 종류에 따른 GP 배점표'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제1항 제3호의 포인트를 받는다.
③ 그린마일리지 포인트 기준은 '<별표 1> 그린마일리지 BP 배점표', '<별표 2> 그린마일리지 RP 배점표', '<별표 3> 자구노력에 따른 GP 배점표'에 의해 결정한다.
제37조 (포인트 부여)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는 전교사가 그린마일리지 배점표에 의거하여 포인트를 부여한다.
제38조 (이의 제기) ① 학생은 자신이 받은 포인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제기를 접수한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즉시 담당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의를 접수한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면담하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9조 (BP 상위자 처리) ① 그린마일리지 BP 상위자는 각종 외부 표창의 추천 시에 활용하거나, 학교장 표창 시 근거자료로 삼는다.
② BP상위자의 일정비율은 '그린마일리지상(학교장상)'을 수여한다.
③ 학년별 BP TOP5는 학교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록한다.
제40조 (RP 과다자 처리) ① 그린마일리지 RP 과다자는 '<별표 5> RP 단계별 지도 방안'의 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② 그린마일리지 RP 과다자 중 '<별표 5> RP 단계별 지도 방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하되, 학생과 학부모에게 차기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학생자치법정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통보한다.

③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이 학생자치법정 개시일 이전에 '<별표 3> 자구노력 종류에 따른 GP 배점표'에 의거한 행위를 하여 BP를 받아서 그린마일리지 포인트가 3단계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학생자치법정 회부가 자동적으로 취하된다.
④ 판결에 의한 의무 이행 후에는 상담을 실시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 한다.

제10장 학생자치법정
제41조 (목적) 학생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며, 그린마일리지 운영의 결과 RP 과다자의 적절한 처리를 담당한다.
제42조 (범위) 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으로 부여받은 그린마일리지 포인트의 RP 과다자에 한한다.
② 학교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하며, 폭력 및 성폭력 관련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43조 (자치법정의 구성) 학생자치법정은 다음 각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인
4. 서기
5. 배심원
제44조 (구성원의 역할)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판사는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2. 검사는 RP 과다자의 RP 내용을 확인하고, '<별표 6> 그린마일리지 긍정벌'의 수준을 결정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3. 변호인은 RP 과다자의 변론을 담당한다.
4. 서기는 법정에서의 발언을 기록하고, 증인선서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5. 배심원은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RP 과다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45조 (자치법정의 운영) 학생자치법정은 RP가 규정된 상한선 이상의 학생이 생겼을 경우 학교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제46조 (판결) 판사는 배심원의 합의문을 참고하여 최종 판결한다.
제47조 (판결의 이행) 대상 학생은 자치법정의 판결 내용을 실행해야 하며, 담당교사는 그 결과를 내부결재 형태로 학교장에게 보고 한다.
제48조 (판결의 불이행 처리) 대상 학생이 자치법정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한다. 1차 경고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담당부장은 대상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49조 (참여자에 대한 보상) 학생자치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다양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있다. 단 RP 과다자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학생자치법정 활동 시간을 학교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2. 1회당 일정한 BP를 부여
3. 학교 봉사상에 추천
4. 일정액의 문화상품권을 제공
5.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사실을 기록

제11장 규정의 개정
제5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51조 (규정개정위원회) 규정개정위원회는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교사위원(교감, 담당부장, 학년부장 등), 학생위원(전교학생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등) 등 5 ~ 10인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3> 학생생활규정에서 체벌 조항 삭제에 대한 근거

현행법상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체벌을 없애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교육 현실의 이중적 구조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체벌 대체 생활지도방안을 연구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체벌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례 요점(2004. 06. 10)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등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의 지도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요점(2006. 07. 27)

-.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훈육,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이 불가능할 경우)

-. 체벌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 이상 유무를 살핀 후, 학칙에서 정한 체벌의 절차에 따라)

-.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정해진 체벌 도구 사용,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

-.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성별, 개인적 사정에 따라 수인할 정도여야,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됨)

교육기본법

-. 제12조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제20조 (교직원의 임무)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 제31조 제7항(체벌금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유엔아동청소년 권리협약

-. 제1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11월-3월중 동복 상의 속에는 넥타이가 보이는 스웨터, 폴라, 목티를 입을 수 있다. 11월-3월중 동복 상의 바깥에는 코트, 파카, 패딩류의 외투를 입을 수 있고, 모자가 달린 것도 허용하며, 길이도 제한하지 않는다. 코트와 목도리를 허용하되 등·하교 시 명찰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여학생은 바지와 치마를 착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검정색 타이즈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그린마일리지제의 의미와 효과

김 갑 영 교사
(대방중학교)

토론

그린마일리제의 의미와 효과

김 갑 영 (대방중학교 교사)

1. 그린마일리지제란?

○ 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하여 학생다운 행동 규범이나 생활 수칙을 학교,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고 학생의 실천 여부를 평점화하여 관리하는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 선행이나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칭찬점수(Blue Point)를, 위반 시는 지도점수(Red Point)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상응하는 보상이나 벌을 내림

○ 지도점수가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봉사활동이나 자구노력 과제를 스스로 이행하면 회복점수(Green Point)를 주어 회복점수만큼 지도점수를 감해줌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 나가도록 함

○ 칭찬점수가 많은 학생은 학교 규정에 의하여 시상하고, 지도점수가 많은 학생은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하여 학생들 스스로 긍정벌 위주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이행하도록 함

○ 운영의 효율화 및 교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경남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경남 GMDS)'을 기반으로 운영

○ 'SMS 문자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칭찬점수나 지도점수가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칭찬점수 및 지도점수 부여 상황을 실시간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림

2. 추진 근거

○ 국정과제 '09년 추진계획 : 규칙과 약속이 움직이는 학교풍토 조성
○ 2009년 생활지도 정책방향 및 운영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8.12.04.)

3. 추진 목적

○ 기존의 생활지도 방식 및 상벌점제 운영 방식 개선
○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칙 및 학교규정 정비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생활지도 실천
○ 기초질서 준수 등 학칙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운영을 통한 공공의식의 생활화
○ 초·중·고를 연계한 규정 준수 교육을 통한 생활지도의 연속성 확보

4. 추진 방향

○ 학교 자율화 취지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
○ 운영 효율화 및 업무경감을 위한 GMDS 구축·활용
○ Off-Line 학생자치법정 연계 운영 권장

5. 그린마일리지제 운영의 실제

□ 1단계 :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

○ 학생생활규정의 인권침해 소지 조항 삭제 및 제·개정
○ 인성지도의 본질과 관계없는 조항은 과감하게 삭제
○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합의로 제·개정
○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의 활용 : 그린마일리지제 운영 매뉴얼 참조
○ 마일리지 포인트 항목 정하기

□ **2단계 : 학생생활규정 제대로 알리기**

○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학부모 및 교사에게 반드시 알리기

○ 학생의 칭찬 및 위반 행동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바로 알리기(SMS)

□ **3단계 : 학생생활규정 제대로 지키기**

○ 적용범위 결정 및 학생생활규정 엄정 적용

○ 학생 생활지도 수단으로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GMDS) 활용

○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GMDS)과 연계한 학생자치법정 운영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학생자치회에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제·개정안 제출

◇ 교직원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후 제·개정안 제출

◇ 학교생활규정개정 추진단에서 협의를 통해 최종안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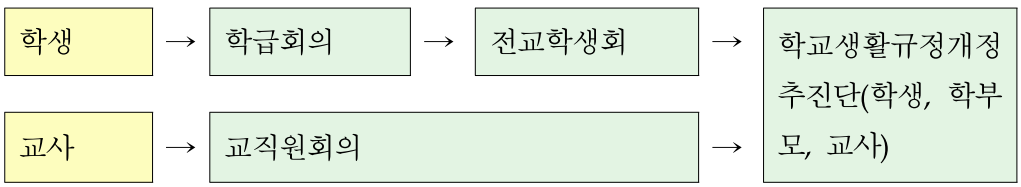

□ **마일리지 포인트 항목 설정 시 유의사항**

○ 바른생활 실천 덕목 설정(Top→Down 방식으로 카테고리 설정)

○ 자발적 선행에 대한 칭찬 위주의 BP 항목 개발

○ RP 항목 선정 시 유의 사항

- RP 항목 위주로 치우치거나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지양
- 징계 사유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 비교육적, 전근대적인 항목은 삭제
- 교과 학습태도 관련 항목은 지양
- 수시로 수정·보완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여 첨가

그린마일리지제 운영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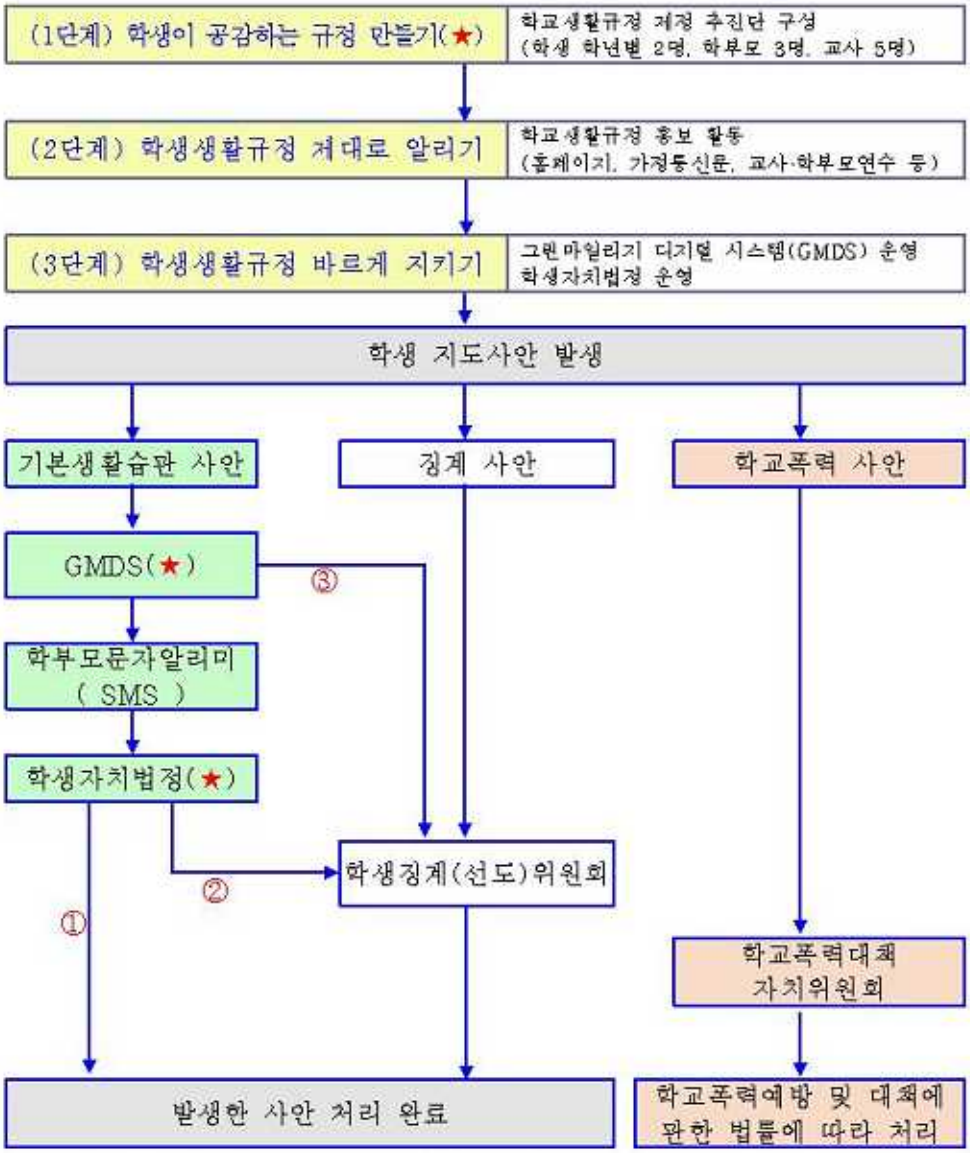

①의 경우 :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자치법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권장)

②의 경우 : 학생자치법정의 판결 불이행자나 상습적인 학생자치법정 회부자 처리

③의 경우 :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지 않고 학생징계(선도)규정과 연계 할 경우

□ **학생생활규정 및 그린마일리지제 홍보**

○ 홍보 방법 : 직접홍보, 가정통신문 활용, 학교 홈페이지 활용

○ 교육청 차원의 홍보 자료 개발·보급

□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활용**

○ 시스템명 : 경남 GMDS (Green Mileage Digital System)

○ 운영방식 : 학교단위 서버 운영

○ A/S관리 : 개발업체 3년간 유지 보수(A/S)

○ 업데이트 : 그린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 업데이트

○ 자료의 백업 : 자료 저장 시에 자동 백업

○ SMS 연계 운영

○ 경남 그린마일리지 전용 홈페이지 운영 : http://그린마일리지.kr

6. 그린마일리지제 운영상 유의사항

1 학생생활규정은 인권 친화적으로 제·개정되어야 한다.

♣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지금까지의 관행인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조항(체벌, 두발, 용의복장, 용모 등)은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2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시 되도록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지 않는 생활지도 방법은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마련이다. 특히 학생들이 학생생활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공감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생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3 그린마일리지제의 취지와 목적 및 학생생활규정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생활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그린마일리지제가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린마일리지제의 취지와 목적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대로 알려 공감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이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해와 동참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4 그린마일리지제의 한글 용어는 '학생생활평점제'로 정의한다.

♣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생활평점제'는 같은 의미의 용어이며, BP는 '칭찬점수'로, RP는 '지도점수'로, GP는 '회복점수'로 정의한다.

♣ 그린마일리지제는 기존의 '상벌점제'와는 기본 철학과 목적이 다름을 이해하고 '상벌점제', '상점', '벌점' 등의 용어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5 그린마일리지제는 칭찬점수(BP) 위주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 그린마일리지의 근본 취지는 상과 칭찬으로 학생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 BP 부여 항목을 더욱 개발하고 BP 부여 위주의 운영을 하여야 한다. 칭찬이 벌보다 더 효과적인 강화 방법이다.

6 전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그린마일리지의 성패는 전 교직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참에 달려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하여 정한 규정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적용하여야만 규정준수 풍토 조성과 교권 확립이라는 그린마일리지제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7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지도 실천을 위해 SM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그린마일리지제의 목표 중 하나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지도'이다. 학생의 학습 상황 뿐 아니라 학교 생활태도에 대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8 학습태도와 관련한 학생의 특성에 대한 그린마일리지 포인트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

♣ 학습태도와 관련한 BP나 RP의 적용에 대하여 단위학교의 구성원이 자발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 학습태도[12]의 평가는 교과담임이 수행평가 등의 형태로 교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학습태도는 학습활동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간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존중,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적 능력에 의해 지도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 분위기를 크게 훼손하는 정도가 상습적인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9 포인트의 항목은 교육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포인트 항목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적으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포인트의 항목과 내용이 '그린마일리지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학생 교육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항목은 지양해야 한다.

♣ 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RP 항목[13]은 제거하여 학생, 학부모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너무 세세한 것까지 벌점항목에 넣어 숨쉬기 힘들 정도로 통제[14]가 심해 졌다는 생각이 드는 항목도 없애야 한다.

♣ 교육적인 신고[15]와 비교육적인 고자질[16]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자질' 혹은 '내부 고발자'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

12) 수업 시작 후 늦게 입실하는 경우, 수업 중에 떠드는 경우, 과제물의 준비 부족,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 수업 중에 발표를 잘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발표를 잘하는 경우 등
13) 학교 중앙현관 출입금지, 타반 출입 금지 등
14) 학습시간이 아니거나 타인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까지도 통제 하는 경우
15) 학교폭력의 현장이나 예비음모 신고, 화재 신고, 습득물 신고 등
16) 고자질을 통해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포인트를 아주 낮게 적용하여 점차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다.

10 그린마일리지는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 그린마일리지는 학생을 체벌로부터 보호를 하자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체벌을 행한 교사의 교권은 어떤 이유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린마일리지를 통해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1 GMDS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

♣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GMDS 접근 권한을 다르게 구분하여 부여한다.

♣ 전학 및 편입, 졸업 시 GMDS의 기록에 대한 보존, 자료이관, 폐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결과 자료의 활용 범위 결정한다.

12 GMDS의 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의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한다.

♣ GMDS의 결과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의 인성관련 분야의 객관적인 기록의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학생이 어떤 부분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한지, 어떤 부분의 능력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연말에 가서 학생에 대한 평가를 두루뭉수리하게 서술하여 오던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벗어나 학생의 평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13 그린마일리지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지켜야 한다.

♣ 그린마일리지는 제정된 규정을 학생과 교사가 상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마일리지의 실천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사가 체벌, 인격 모독, 인권 침해, 규정 무시 등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책임도 병행되어야 한다.

14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는 학생 개인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누가기록이다.

♣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는 점수의 개념보다는 횟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칭찬 또는 지도받은 행동을 누가 기록하여 시상의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나쁜 버릇

으로 습관화되어 지도와 개선이 요구되는 행동 특성을 발견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행동 특성은 상대평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이해하는 절대적 평가여야 한다. 다른 학생과 비교하기 위한 점수화나 서열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학교급이나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학년은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초점을 둔다면, 고학년에 대하여는 '상벌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 고위험군, 위험군, 주의군, 안전군 등 학교 안전도[17]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BP만 활용, BP·RP만 활용, BP·RP·GP 모두 활용, 학생자치법정과 연계 또는 징계규정과 연계 운영 등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다.

♣ 월별 중점 지도 덕목을 정하여 하나의 덕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 그린마일리지제의 시행 여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학교공동체가 판단하고 결정할 몫이다.

♣ 소규모 학교나 그린마일리지제 보다 더 효율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의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17) 학교부적응 지수 활용 조견표에서 학교부적응 수준의 비율이 5% 이하인 학교를 고위험군, 10 이하인 학교를 위험군, 30% 이하인 학교를 주의군, 50% 이하인 학교를 안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본 그린마일리지제

김 지 수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학생)

토론

학생의 입장에서 본 그린마일리지제

김 지 수 (마산제일여고 학생)

1. 설문 조사 개요 18)

경남지역 그린마일리지 시범학교 10개교(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중·고등학생 1,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구 분	학교수	응답자수
중학교	5개교	606명
고등학교	5개교	527명

2. 조사기간 : 2009년 7월 5일 - 7월 15일

3. 분석 시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 : SPSS 12.0

4. 설문조사 목적

- 그린마일리지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으로서 그린마일리지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알아볼 수 있음.

5. 문항별 분석 방법

빈도분석 기법을 이용함.

6. 주 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 전교조경남지부 정책실

18) 본 설문조사는 2009. 7. 5.~ 7. 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짙역모임과 전교도 경남지부에서 실시하였음. 토론자의 토론문은 별도로 제출 예정임.

7. 설문조사 결과

가.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	들어봤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응답자수	476 (42)	607 (53.6)	50 (4.4)
중학생	206 (34)	375 (61.9)	25 (4.1)
고등학생	270 (51.2)	232 (44)	25 (4.8)

그린마일리지에 대해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한 학생이 중학생 61.9%, 고등학생 44%로 나타나 시범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 중에서 그린마일리지의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학생이 58%로 나타남.

나. 귀하의 학교가 그린마일리지 시범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
응답자수	880 (77.7)	253 (22.3)
중학생	464 (76.6)	142 (23.4)
고등학생	416 (78.9)	111 (21.1)

다. 귀하의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가 실시된 후 체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라졌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줄어들었다.	변함없다.	더 심해졌다.
응답자수	26 (2.3)	278 (24.5)	696 (61.4)	133 (11.8)
중학생	13 (2.1)	120 (19.8)	395 (65.2)	78 (12.9)
고등학생	13 (2.5)	158 (30)	301 (57.1)	55 (10.4)

그린마일리지 시행 이후 체벌이 사라지거나 줄었다고 답한 학생이 26.8%, 변함없거나 더 심해졌다고 답한 학생이 73.2%로 나타나 도교육청이 그린마일리지 시행으로 체벌이 사라진다고 하는 주장은 실효성이 없음.

라.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점수로 매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 지도가 일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벌점처럼 점수를 매기는 것은 심하다.	개인의 생활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비인간적이므로 있을 수 없다.
응답자수	28 (2.5)	301 (26.6)	506 (44.7)	298 (26.2)
중학생	11 (1.8)	159 (26.2)	281 (46.4)	155 (25.6)
고등학생	17 (3.2)	142 (26.9)	225 (42.7)	143 (27.2)

학생 생활 전반을 점수로 매기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 비율이 29.1%, 부정적으로 답변한 학생 비율이 70.9%로 생활지도를 점수화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마. 상점과 벌점을 주는 기준이 뚜렷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교사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적도 있었지만, 그다지 문제는 없었다.	교사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어서 상·벌점 기준을 잘 지키지 않은 적도 있었다.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기준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응답자수	205 (18.1)	334 (29.5)	397 (35)	197 (17.4)
중학생	134 (22.1)	193 (31.8)	185 (30.5)	94 (15.6)
고등학생	71 (13.5)	141 (26.8)	212 (40.2)	103 (19.5)

상벌 점수를 주는 기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응답 비율은 47.6%,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52.4%로 나타나 상벌점 기준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의 요소가 있음.

바. 정부는 그린마일리지를 NEIS와 연계하여 상·벌점 기록이 평생 남게 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마일리지도 학교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학생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응답자수	124 (10.9)	859 (75.8)	150 (13.3)

중학생	59 (9.7)	458 (75.6)	89 (14.7)
고등학생	65 (12.3)	401 (76.1)	61 (11.6)

그린마일리지를 NEIS와 연계하여 기록이 남게 되는 방안에 대해 75.8%의 학생이 부정적으로 응답함.

사.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구체적 기준이나 항목, 벌점 정도 등)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반영되었다.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반영되지 않았다.
응답자수	48 (4.2)	318 (28.1)	767 (67.7)
중학생	19 (3.1)	154 (25.4)	433 (71.5)
고등학생	29 (5.5)	164 (31.1)	334 (63.4)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에 대해서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32.3%,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67.7%로 나타남.

아.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응답자수	238 (21)	895 (79)
중학생	116 (19.1)	490 (80.9)
고등학생	122 (23.1)	405 (76.9)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1%,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79%로 나타남.

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에 대한 이유

-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하면 학생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여 학교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
- 학교에서 장난치거나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

- 상점을 받기위해 학생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
- 벌점 때문에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 벌점은 상점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을 받은 학생들이 상점을 받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할 것이다.
- 이제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것 같다.
- 학생들이 단정해 질 것이고 왕따가 사라질 것이다.
-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학교규칙이 잘 지켜질 것이다.
- 민주시민이 양성되기 위한 기본제도가 될 것 같다.
- 요즘 같은 시대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 선생님께 달라드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

②'부정적인 영향을 중 것이다' 에 대한 이유
- 선생님의 기준에 따라 상벌점을 주며 사소한 것도 벌점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학교생활이 위축된다.
- 이런 제도가 너무 비인간적이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다.
- 학생들이 선생님들 앞에서만 착하게 보일려고 하고 이로 인해 교우관계는 더욱 나빠진다.
- 상벌점을 가지고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한다.
- 상점을 받기위해 너무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친구가 있다.
- 벌점을 주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 가령 속옷색깔을 검사한다고 상의를 들춰보기도 한다. 이럴 때는 수치심을 느낀다.
- 벌점에 대해 학생이 해명하려고 해도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벌점을 준다.
- 벌점은 받기 쉬운데 상점은 잘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뭔가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 학교생활이 감시당하는 기분이고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벌점을 받는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는다. 벌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벌점의 기준이 교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 사람의 행동에 점수를 매긴다는 생각이 말이 안된다. 특히 아무리 교사라 하더라도 그럴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잘못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벌점만 주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 나중에 우리나라 학생들 모두 성격장애(이중인격)가 올 것이다.

-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고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운이 나쁘면 걸린다.
-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 제도 때문에 더욱 힘들다.
- 사춘기 학생들이 괜히 반발심이 생기는 것 같다.
-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못하더라도 벌점을 받지 않는것 같다.
- 학교생활이 소극적으로 된다. 상점보다는 벌점을 주기 위한 제도인 것 같다.
- 학교가 오기 싫다

자. 귀하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관심 없다
응답자수	23 (2)	158 (13.9)	295 (26)	401 (35.4)	256 (22.7)
중학생	7 (1.2)	69 (11.4)	160 (26.4)	217 (35.8)	153 (25.2)
고등학생	16 (3)	89 (16.9)	135 (25.6)	184 (34.9)	103 (19.6)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전국적 확대 실시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15.9%, 반대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61.4%로 나타남.

그린마일리지제의 효과성 진단

조 형 래
(창신대학교 교수)

토론

그린마일리지제의 효과성 진단

조 형 래 (창신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어떤 제도나 정책의 시행에 앞서 청문회나,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대중 앞에서 검증받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이념을 존중하는 사회일수록 정책 입안자들은 이 같은 여론수렴의 과정을 중시할 것이고, 또한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여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폭넓은 만남이 필요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도를 이해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당사자들의 이견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후, 제도의 도입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행 혹은 유보, 심지어 폐기까지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 제도나 정책이 교육과 학생지도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결정 과정이 필요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린마일리지제'는 교육주체이자 당사이기도 한 학생, 학부모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려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처음 듣거나 생소한 이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과제 '09년 추진계획에 의해 2008. 12월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다. 벌써 한 학기의 시범운영을 거쳤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현장 적응 가능성을 살펴보고 시행에 앞서서 여론수렴의 시한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이 그린마일리지제를 다른 시도보다 앞당겨 올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종합적인 여론수렴과 제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경상남도 교육청이 왜 이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교육청이 밝힌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12년을 이 제도의 완성단계 목표연도로 정해 두고 있으며 더욱이 우수학교를 발굴 육성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까지도 명문화하고 있어서 일선 학교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어찌되었던 경남교육청의 성급한 제도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일어나 본격적인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의 시행을 재고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일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의 비현실성과 비교육성 등을 비판의 기조로 하여 제도 자체의 개선이나 유보가 아닌 원천 폐기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2. 학교생활규정의 문제

경상남도 교육청이 발표한 그린마일리지 시행단계의 제1단계가 '학교생활규정' 만들기이다. 따라서 그린마일리지제는 '법치주의'에 근간하여 학교자율자치법령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 제도임을 엿볼 수 있다. 교육청이 내세운 이 제도의 추진 근거를 보면 '규칙과 약속이 움직이는 학교풍토 조성'을 강조하고 있음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이념을 교육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지나친 법치주의의 중시는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소통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한편 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지침은 그 메카니즘을 상세히 도해하면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단위학급의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전교학생회에서 심의하여 안을 확정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교직원회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확정·제출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추진단(학생 학년별 2명, 학부모3명, 교사5명)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이다. 도식적으로는 매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현실의 적용에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점과 벌점을 주는 기준이 뚜렷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47.8% '문제가 있다'는 비율은 52.4%였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설문결과는 결국 학교나 교육 당국이 정해 놓은 규정 예시안을 형식적으로 열람하는 하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 원안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 요컨대 형식은 민주적이지만 실체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도에 따르면 창원 시내 A중학교와 B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도에 문제가 많아 시행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록 한 두 학교의 사례이지만 제도 시행의 첫 단계인 규정의 제정과 적용과정에서 이 같은 거부감이 표출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의 문제점들

1) 상점과 벌점의 적용

그린마일리지제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의 합의점은 상점배점표와 벌점배점표라고 할 것이다. 한 시범학교의 배점표(C여중)를 보면 Blue Point 27개 항목, Red Point 30개 항목으로 각의 배점이 주어져 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칭찬받을 일과 비난받을 일이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행동이 57개로 확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배점표를 학생들과 교사가 일일이 숙지하는 일도 불가능할 것이고 상벌점을 적용하는 것도 매 순간 일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학생에게 상·벌점을 부여할 때마다 컴퓨터 시스템을 켜고 항목번호를 찾아 입력해야 하는 일은 또 하나의 번거로운 사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게 된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상벌점제가 시행되었지만 체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61.4%의 학생들은 변함없이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게다가 생활 전반을 점수로 매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은 29.1%였고, 70.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이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며,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제도를 강행하려는 것은 학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 학생생활규정 제대로 알리기

교육청의 시행지침은 이 제도를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제대로 알려지도록 권하고 있으나 실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벌점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는 답변이 58%였다. '잘 알고' 있는 학생이 42%였으나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른다'는 53.6%, '전혀 모른다'는 4.4%라는 결과는 학생들이 이 제도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과 무관심의 표출로 보인다. 학생들이 이 제도 자체를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지도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인 것이다.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 결과는 찾아 볼 수 없었지만 필자의 경우도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도 잘 몰랐다. 아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던 필자의 과오는 차치하더라도 학교도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학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교육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읽혀진다. 여러 가지로 번잡한 학교 사무에서 그린마일리지제는 당장의 급선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3) SMS 서비스의 문제

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제의 목표 중 하나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지도'를 내세우고 있다. 생활태도에 대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의 벌점부여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다. 80글자로 제한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자녀의 벌점 상황을 통보받는 것 자체는 그린마일리지제의 선의의 취지와는 달리 기분이 좋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부모에게까지 알려지고 사춘기의 민감한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꾸중을 듣게 된다면 학생의 고통은 배가될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벌점의 누적으로 자치법정에 서게 될 때까지 교사는 뭘 하였는가?

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전화나 서신으로 통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냉정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보하는 행위 자체가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학생의 잘못이 빈번할 경우 교사가 직접 나서 문제를 중재해야 할 몫이지 문자 메세지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4) 점수누적화의 문제

그린마일리지제를 일종의 '도덕성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한 학생의 글에 공감한다. 학생은 "잘한 것에는 상점을 주고 못한 것에는 벌점을 준다. 상점과 벌점이 누적되면 도덕성을 점수화시킨다. ...중략... 벌점이 상당 수 쌓인 학생에게 상점 한두 번 받아도 숫자상의 벌점은 사라지겠지만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칭찬받기는 힘들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 성적의 점수화와 서열화를 통해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에게 도덕성조차 점수화되어 서열이 매겨진다면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불행한 일은 없을 듯하다. 그린마일리지제가 의도하지 않은 바라 할지라도 결과는 점수화로 인격을 평가하는 비교육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누적된 벌점의 결과는 학생자치법정이나 징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학생생활규정에 정해진 긍정벌로서 처벌받게 된다. 결국 교사에 의한 체벌은 사라졌으나 일종의 강제노역에 의한 체벌은 존재하는 것이며, 당사자는 심적인 수치심과 좌절감을 떠 않은 채 낙인찍힌 학생이 되고 말 것이다.

4. 평가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린마일리지제는 현 정부의 '법치주의' 국정이념을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무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생활지도의 문제를 인간적인 상호 소통이 아니라, 정해진 법규를 앞세워 점수화하여 처벌 또는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어정쩡하게 상호 존중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학생의 생활기록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객관성과 증거를 담보하기 위해 컴퓨터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제도의 완벽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단순히 엄격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인 법률의 입법, 이를 위한 기반 환경의 조성, 나아가 이를 지키고자 하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온전히 실현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매경춘추, 법치주의, 정병두 춘천지방검사장)라는 주장처럼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제도는 근원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신과 거부감이 내재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력평가에 덧붙여질 도덕성 평가의 새 잣대와 제도를 결코 환영하지 않는 것 같고, 교사나 교장들도 새 제도에 따른 규정의 마련과 절차의 번거로움에 힘겨워 하는 것 같다.

제도를 입안하신 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여론수렴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불신과 거부감이 확인된 이상, 이 제도에 대한 과감한 폐기 결정이 필요하다.

발제자는 그린마일리지제가 치밀한 준비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법치주의’의 이념과 ‘반휴머니즘’적 성격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육주체간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치’에 앞서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진보하는 의식의 혁명이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바라 본 그린마일리지제

진 영 욱

(마산구암고등학교 교사)

토론

학교현장에서 바라 본 그린마일리지제

진 영 욱 (마산구암고등학교 교사)

1. 발제문에서

1.1. 학생을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로만 인식하여 간섭과 통제로 일관하고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

⇒ 상점과 벌점은 과연 학생을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여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학생이 어리고 미성숙하면 안 되는가? 오히려 학생의 어리고 미성숙함을 인정하는 데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고 미성숙함에서 비롯되는 실수조차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1.2. 생활지도를 강조하면서도 그 이면에 깃든 경쟁적인 교육 풍토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권위주의 문화는 그 어떤 빛나는 교육철학이나 교육목표라도 입시교육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초라하게 사라지게…

⇒ 입시교육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어떤 빛나는 교육철학과 교육목표라도 삼켜 버리는 현실에서 과연 그린마일리지제만은 어떻게 그 목적하는 바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린마일리지제가 정착되면 그린마일리지제조차 입시교육의 거대한 블랙홀로 빠져드는 게 아닐까?

⇒ 혹시 상점과 벌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은 아닐까?

1.3. 단위 학교에서 기존 생활지도의 제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라고…

⇒ 바람직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린마일리지제 같은 제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닐까? 바람직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 그린마일리지제의 정착보다 훨씬 근원적인(가치 있는) 문제이고 그 해결이 난해한 문제가 아닐까?

1.4.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는 적용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 완전한 객관성의 획득이 불가능한 전제라면 현실적인 객관성은 교육 주체간의 상호 합의와 약속일 것인데 현실적으로 학교를 지배하는 힘은 학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닌 교육 관료가 아닐까? 객관성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에 물든 교육 관료적인 발상은 아닐까?

⇒ 일관성은 개인 단위에서의 일관성인가, 학교 단위에서의 일관성인가? 만약 학교 단위에서의 일관성이라면 체벌이나 그린마일리지제가 아닌 방법으로(예를 들면 상담 등의 인간적인 만남)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그 일관성을 해치므로 금지되어야 할까?

1.5. 인성교육은 사랑과 믿음이 있는 소통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점수화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 그린마일리지제가 바로 소통의 또 하나의 장벽이 아닐까? 소통이라는 것이 그 본질상 예외성의 인정은 아닐까?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아예 그 예외성을 인정하는 소통을 막아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린마일리지 점수 입력을 위해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볼 시간에 비록 화난 얼굴일지라도 학생과 대면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은 아닐까?

1.6. 1단계 :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 2단계 : 학생생활규정 제대로 알리기

⇒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린마일리지제는 필요 없는 게 아닐까?

⇒ 학생생활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학생, 교사, 학부모 중 몇 명이나 될까?

1.7. 학생생활규정은 인권 친화적으로 제·개정되어야 한다.

⇒ 인권은 그린마일리지제처럼 표준화될 수 없고 점수화될 수 없는 게 아닐까? 인권은 예외성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표준화와 점수화는 인권의 적대 개념이 아닐까?

1.8.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시 되도록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어떻게 하면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 교사들의 참여라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을까? 과연 관심은 있을까?

1.9. 학부모와 함께 생활지도 실천을 위해 SM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학부모의 입장에서 몇 십 자 안팎의 문자 발송을 통해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의도와 방침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을까?

⇒ 이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아닐까? 교육은 좀 더 귀찮은 일이 아닐까?

1.10. 학습태도와 관련된 학생의 특성에 대한 그린마일리지 포인트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

⇒ 생활태도와 학습태도는 관연 무관할까? 생활태도와 학습태도의 경계를 무자르듯 정확하게 자를 수 있을까? 그 기준은 시간인가, 공간인가, 아니면 개인의 주관인가?

1.11. 그린마일리지는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 체벌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과연 그린마일리지제 같은 제도적 대안이 없어서일까? 체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체벌을 조장하는 학교 환경과 사회 환경 때문은 아닐까?

1.12. 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과연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기피하는(눈치 보기) 교육 관료적

인 발상이 지배하는 학교 경쟁 체제는 학교를 오히려 획일화시키지 않을까?
⇒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기 위해서 교사 개인의 자율성은 희생되어도 될까?

1.13.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생활교육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 그린마일리지제가 기술 이상의 그 무엇일 수 있을까?
⇒ 생활교육이 오히려 기술로 전락하는 게 아닐까?
⇒ 생활교육에서 부족한 것이 과연 기술일까? 열정이나 여유는 아닐까?

1.14.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거나 학생 관리와 효율적 통제 수단이나 또 하나의 잡무로 전락할 수 있다.
⇒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느냐'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에서라도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었을까?
⇒ 제도의 시행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그린마일리지제가 '또 하나의 잡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2. 학생생활규정은 누가 만들었나?

학생생활규정은 보다 보면 한 번씩 드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이 규정은 누가 만들었을까?' 교육청의 지침이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지긴 했지만 대부분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기본 틀은 수십 년 전(유신시대가 의심된다)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수십 년 전 하나의 시안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시안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실정을 거의 고려하지 못한 채 하나의 업무처리 과정으로 학교마다 대동소이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어느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든 그 규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 학생생활규정이 실제 학생들의 생활과는 무관한 서류철 안에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규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학생들의 생활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생활과 학생생활규정은 거의 관련성이 없다. 관

련성이 없으니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다. 그것은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마찬가지다. 기껏 해야 두발이나 복장 규정 정도에 관심이 있는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게 봐야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생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학생생활에 대한 통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학생생활규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기보다는 잘못일 수도 있는 상식과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생활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이라도 해 본 사람은 학교 안에 거의 없다.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규정을 왜 들여다보겠는가?

3. 현실 ① : 점수가 학교교육을 망친다?

그린마일리지제 시범운영 결과를 일단 믿을 수 없다. 어떤 제도든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제도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시범운영은 대부분 행정적으로(서류상으로) 운영되고 행정적으로(서류상으로) 성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범운영에 성공한 그 많은 제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그토록 많은 시범 운영의 성공이 학교 현장을 얼마나 변화시켰나-학교 현장이 얼마나 변한 게 없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시범운영의 성공(?)은 그것이 교육적 가치보다는 교감-교장 승진 점수와 연관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처음부터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교감-교장 승진 점수 때문에 시범운영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겉으로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시범운영은 대체로 조용히 이루어지고 시범운영의 흔적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시범운영을 실시한 학교에조차 거의 남지 않는다. 차라리 각종의 시범운영이 비록 그 운영 규모와 범위가 줄더라도 교감 교장 승진 점수와 무관하게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운영했다면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점수가 개입하면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본래의 가치를 상실한다. 즉 학교 교육을 망치는 것이 바로 점수화다. 국어 점수가 시와 소설을 읽는 재미를 앗아

갔고, 수학 점수가 수학적 사고의 고차원적 즐거움을 앗아갔고, 영어 점수가 영어를 통한 영어권 문화를 획득하는 지적 풍요로움을 앗아갔다. 그리고 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체능 과목의 예체능적 가치 역시 점수에 의해 전도되고 말았다(고등학교 때까지 나쁘지 않은 음악 점수를 받았지만 악보 하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학교의 비정상적인 일과 운영 역시 점수 때문이고, 사라지는 방학도 점수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보면 점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점수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1년 봉사활동 시간 20시간을 못 채우는 학생은 아주 드물지만 청소 시간에 정말 정성껏 청소를 하는 학생은 그 이상으로 드물다. 심지어 1년에 200시간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오는 학생이 정작 학교에서는 청소시간에 빗자루조차 들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린마일리지제 역시 점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점수화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그린마일리지제가 성공(?)을 해서 학교 현장에 안착된다고 했을 때에도 그린마일리지 규정에 따라 점수화되는 것에만 학생들이 반응을 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교생활의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에 대한 점수화는 될수록 최소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점수화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된 미신은 아닐까?

4. 현실 ② : 왜 체벌이 존재하나?

왜 초등학교에서 비교적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을까? 그것은 아마 학생생활에 대한 구속이 중고등학교보다 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등교시간도 중고등학교에 비하면 비교적 많이 늦고 하교시간은 중고등학교(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르다. 수업도 중고등학교처럼 기형적으로 입시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관심에 대해서도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싶다. 중학

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생각해 보면 체벌은 구속의 결과다. 구속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위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위반의 강도도 강해진다. 그래서 그 위반의 정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과도한 체벌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다. 등교 시간을 당길수록 지각생은 늘어나고 지각회수도 늘어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단속의 강도도 세어지고 강도가 세어지다 보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도 넘게 되지 않을까?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린마일리지제가 체벌을 대신할 수 있다는 데는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 그동안 그린마일리지제가 없어서 체벌이 있었던 건 아니다. 체벌은 잘못된 생활교육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생활교육을 개선하려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이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근원적인 치료(개선)를 포기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어떤 면에서 그린마일리지제 역시 학생생활을 지도하는 데 있어 넘어서는 안 될 한계는 넘어서는 또 하나의 변칙일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다. 체벌에는 그래도 책임이라도 따른다. 오판이든 아니든 자기 결정에 따른 것이니 책임감도 따를 수밖에 없다(따라서 체벌에 따른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린마일리지제는 그 책임을 제도에 떠넘길 우려가 있다. '이건 내 판단이 아냐? 규정에 따른 거야. 그러니 날 원망하지 마라.' 무관심은 과도한 관심(?)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닐까?

5. 현실 ③ : 교사는 교육청 소속이다?

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 그것은 현실이 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기 때문이다. 학교간의 지나친 입시경쟁이 학교 간에 눈치 보기 경쟁을 얼마나 심화시키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등교시간을 당기거나 하교 시간을 늦출 때 누군가 항의라도 하면 대번에 돌아오는 답이 다른 학교 다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학교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했다가 그 결과가 나쁘면 어쩔 거냐는 것이다. (눈치 보기다. 눈치 보기의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 그런 점에서 그린마일리지제 역시 자율화보다는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끔 싫든 좋든 교사는 교육청 소속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의 획일화는 학교가 교육청 소속으로 교육청의 통제를 받은 결과다. 학교 현장에서 직책이 높을수록 그 소속감(?)은 더 큰 것 같다. 교무실의 조직 자체가 교육청 소속 조직 체계이다. 교무기획부, 생활지도부, 평생교육부……, 교육청 조직과 학교 조직에 별 차이가 없다. 즉 학교의 조직은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부터 상명하달의 관료조직의 특성이 너무 강하게 배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가치 있어야 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의 귀찮은 업무로 전락하고 만다. 심지어 수업조차 하나의 업무가 된다. 방과후학교가 그렇고 부진아 지도가 그렇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거나 해줘야 하는 일이다.

그린마일리지제 역시 교육청이 그 진행을 주도한 혐의가 크다. 물론 그 과정에 선의의 뜻을 보태고 선의의 능력을 보탠 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선의는 행정편의주의나 관료주의에 희생되고 그 진행 방식이 여느 학교 업무의 진행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범학교의 운영, 그리고 반발을 무릅쓴 전면 실시 일방 통보!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율적-민주적인 절차도 없었다. (학교 현장에 그런 자율성-민주성이 있냐고 하면 솔직히 의문이 든다. 하지만 그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교육청의 지금까지의 그 일방적 관료성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의 작성이 하나의 업무이듯이 그린마일리지제 역시 교사에겐 하나의 업무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6.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가 목표다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는 그린마일리지제의 전제가 아니라 목표라야 한다. 굳이 그린마일리지제를 시행해야 한다면 그린마일리지제는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의 결과가 아니라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의 수단이라야 한다. 즉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린마일리지제의 시행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아니 만약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린마일리지제와 같은 과도기적 제도나 장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는 그린마일리지제의 형식적인 시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목표다. 그것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전 교육 주체들이 좀 더 자발적-자율적-민주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그 과정 자체가 교육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그린마일리지제를 반대하는 입장이 그 본질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것인 것처럼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도 그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 공감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를 우리의 공동 목표로 제안하며 이 글을 마친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전망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전망

김 현 옥
(경남교육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전망

김 현 옥 (경남교육연대 집행위원장)

1. 도입

학생들에게 학교는 가고 싶거나 즐거운 배움의 공간이 아니다. 학교가 대학진학을 위한 통과의례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여 학생들은 시험 치르는 기계로, 학교는 입시를 준비하는 기관이 된지 오래다. 학교 교육의 목적이 인권이 되고 교육과정 역시 인권을 존중할 때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남 학생인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해 경남지역 700명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인권 실태를 보면('경남교육연대' 자체 조사) 교칙 등을 제정하는 데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거나 반영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부정적 응답이 50% 내외에 이르고 학생들 자신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불과 20%에 그칠 정도로 학생들의 인권이 거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학생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신체적 폭력도 상당히 높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문화와 교육정책에 따른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지난 해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시행하여 아동이 적절하게 휴식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와 참여는 약화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학생 이전에 한 인간인 인격체로 존중하여야 함에도 학생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학생의 법적 지위를 특별권력관계론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어도 피지배자는 복종하도록 하는 권력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순응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규제와 제재 조치 등을 정

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서구 사회가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인권과 시민권을 부여하고 선택권을 주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육의 목적은 어른이 원하는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하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무시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는 2008년 12월 경남교육연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자유권, 교육복지권, 평등권의 영역으로 나눈 설문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나라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함께 뜻하는 개념"(한상범 1991:17)이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두 개의 국제규약을 기초로 하여,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역사적인 탄생을 하게 된다. 한국정부도 1991년 12월에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국내법으로는 2007년에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4(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가 신설되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인 장치는 학생인권 조례의 근간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신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근간이 될 것이다.

2. 학생인권의 개념

인권은 천부권이며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모든 권리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생득적이며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실정법

이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루소는 에밀에서 '어른들은 항상 어린이를 어른 속에서 찾으려 했을 뿐 어른이 되기 전의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 '아동은 성인의 축소물이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서 아동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동의 인권이 주목되기 시작한 때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점차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산업화 초기에는 아동은 저임금 노동력 제공자로서 선호되었다. 아동이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사망하자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아동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아동 노동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아동들이 노동에서 해방되고 미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과학, 생산 기술이 발달되고 전문화되면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을 요구하면서 학교교육이 경제활동의 준비기간의 역할을 하면서 대중적이고 장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정치적으로 보면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가 탄생되면서 통일된 의식을 갖춘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어 국민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아동들이 강제적인 노동에서 해방되고 학교에서 공부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은 넓게는 학생이라는 한 개인이 문화적, 사회적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지위권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백유영, 2000) 학생도 한 인간으로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이에 따라서 간섭을 받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학생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여 학교에서도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이다.

3. 학생인권의 역사를 통해 본 법적 근거

인권의 역사에서 아동의 인권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것은 아동을 성인과 구분하는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게 된 시점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성인중심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일반화되어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 정체성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

로 자각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아동의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제적인 운동이 확산되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이라는 신념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였다. 1차 세계 대전 뒤 영국의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아동구호기금'이 창립되었는데 이 단체에서 발표한 아동의 권리 선언이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되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즉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이 나오게 된다. 이 선언에서 아동은 우선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최선의 것을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전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의 기조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경우 시혜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만약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역시 분명하지 않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게 된다면 권리의 평등성을 보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헌법에 권리 보장이 명문화되어 누군가 권리가 침해될 경우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아동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 아동의 권리를 성문화하려는 노력의 결실이 1959년 '아동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게 된다. 이 선언에서 '아동에게 불가결한 권리를 승인'한다고 하였고 아동에게 ' 이름과 국적에 관한 권리'라는 최초의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제네바 선언과 차이가 있고 아동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국제적인 최초의 선언이라는 점에 의의가 크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아동들이 기본권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주변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겨난다. 이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구속력 없는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966년에 국제규약에서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유엔은 1979년을 국제아동의 해로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마

침내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탄생한다. 1995년 12월말 현재, 이 조약은 유엔이 채택한 여러 조약 가운데 190개국이라는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한 영향력 높은 국제조약이 되었다. 이 조약은 기존의 국제조약에서 진일보하였다. 권리의 주체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였고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프라이버시, 통신, 명예의 보호, 매스미디어의 접근권등을 권리로 인정하였다. 또한 아동의 인권을 법적, 행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사국과 국제사회간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다. 아동인권 개념에는 청소년 인권도 포함되었다. 비준국의 아동 인권 진척 상황을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유엔은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12조 1항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주체와 보호받을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서 추상적인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하게 된다. 마침내 2007년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4(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가 신설되어 학생의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써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인권의 내용과 보호해야 할 주체가 확실하게 명시되어서 국제인권조약 수준의 학생인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4. 학생 체벌의 문제점과 정책

강대교(2002)는 학생 체벌이 벌어지는 원인을 학급당 학생 수 과다와 흥미 없고 적성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들고 있다. 경남교육연대 주관식 설문조사를 보면 '성적 하락, 두발 단속에 걸려서, 수업시간에 졸다가..' 등 학생 생활 지도 단속에서도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1997년 6월 2일 대통령 자문 교육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체벌 금지 조치'를 내린다. 그러다가 학교현장에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자 1998년 3월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체벌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1999년 1월26일 교육부는 학생체벌기준을 마련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시한 것은 체벌이 일차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체벌을 하게 될 경우 학생 당사자가 체벌에 대하여 납득하여 체벌 결과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체벌을 금지하라는 완곡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조치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체벌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내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들어 학교 내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벌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시기상조라고 발표한다.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과 체벌의 부당함을 지적하게 된다. 그리고 2004년 9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 상담에서 체벌 문제를 상담한 학부모와 함께 학생체벌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다.

Godwin은 '교사는 아동을 절대 처벌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분노의 표정이나 비난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교실에서 체벌을 할 상황이 된다는 것은 교사 자신도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체벌을 통해서 학생과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체벌을 하는 것은 대체로 즉각적인 효과를 중시한 것인데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받는 영향(예를 들면 체벌에 익숙해진다거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체벌은 일시적인 행동을 억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습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김혜선,1994) 체벌이 교육적일 수 없다는 증거는 많다. 체벌과 낮은 학업성취도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는데 체벌을 하면 학생들이 학업에 싫증내고 무서움이나 공포를 야기시켜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반항적인 행동이 오히려 증가하고 공격성과 불안을 조성하여 폭력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신뢰관계가 파괴될 것이다.

교사가 행사하는 통제나 규제, 관섭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개별 교사의 기분이나 개인적 확신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순종적이 된다고 해도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의 권위를 합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교의 권위에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표면적으로 순종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중적 행동원리'를 낳고 '감추어진 갈등'으로 연결된다. (이수광.2000)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면,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개혁은 형벌제도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그 다음 학교 등의 기관과 입양가정 마지막으로 일반 가정에서 체벌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태형이 금지된 이후에 머물러 있다. 어디에서든 체벌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다.

5. 교육권과 학생인권

교육권은 교육관계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 형성된 권한에 대한 총칭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권은 교육을 할 권리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로 변화하였다. 모든 현대 국가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Weimar헌법에서 비롯되었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아동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를 국가가 교육제도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의무 공교육 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교사의 교육권은 아동,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상 필요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국가가 교사의 교육활동 수행에 있어서 공권력으로 통제하고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나친 공권력으로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사의 자유, 자율성을 요구하고 보장받는 것이 교육권이다.(손상미, 1996). 교육에서 교육의 자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이광윤) 1. 교육활동 주체의 본질적 측면이다. 본질상 창의성, 수용성을 지닌 미성년과의 상호작용이므로 자유를 필요로 한다. 2. 교직의 특성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므로 고도의 자율성이 요청된다 3. 교수방법론적 측면에서 독자성이 있다. 교육 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 특수성과 독자성이 인정된다.

즉 교육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배타적이며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학생인권이 존중되면 될수록 교육권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의 자유란 학생을 상대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활동에서 교사의 자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의 자유가 학생에 대한 통제나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교사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6. 미성년자와 권리제한

아동을 미성숙한 자로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허용하고 제한하는 기준을 나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최윤진(2004)에 따르면 성인과 아동 사이의 능력과 성숙 정도의 차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아동은 미성숙하다고 인식한다고 말한다.

우선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성숙의 의미나 정도는 사람의 발달 영역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고 변화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연령 미만의 아동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원화된 사회의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동이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때 필요한 능력은 인지능력의 발달에 따른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아동의 인지능력의 발달은 10대 초반에서 15세 이전에 이루어져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도덕성이나 논리적 사고력은 아동기에 최고에 이르지 못할 수 있지만 이는 성인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아동의 성숙이나 능력을 문제 삼아서 아동의 실수가능성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아동들이 실수를 하면서 중요한 경험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 가능성은 성인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전쟁 발발이나 인종차별, 종교 분쟁등의 현상들은 성인들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선택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의 능력이 성인과 다르다고 확신할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유연성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7. 경남 학생인권의 실태와 현황(경남교육연대의 2008년 12월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 역역은 크게 자유권, 교육복지권, 평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권은 「학생의 존엄성과 의사결정권」「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신체의 자유」「사상·양심·종교의 자유」「표현·집회·시위의 자유」「사생활(프라이버시)과 개인정보의 보호」「정보접근권의 보장」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복지권은 「교육권」「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급식」「안전권」「휴식과 문화의 권리」「적법절차와 권리실현절차의 권리」「보호를 받을 권리」등이다.

평등권은 「교육재정 등에서의 차별」「학업에 의한 차별」「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수준에 의한 차별」「여성이라는 성차로 의한 차별」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세 영역을 중심으로 경남지역 7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권침해 요소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유권에 대하여

자유권은 학교규정제정과정, 정규수업 이외의 수업과정, 급식, 도서구입 등에서 학생들의 의견이나 참여가 존중되거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주체로서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모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유권에 비추어 학교 현실을 살펴보면 교칙들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대체로 야간 자율학습이나 0교시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동의권한이 침해되고 있다. 학생자치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여부를 모를 정도로 학생들은 자치활동에 무관심하고 동아리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때 학교의 지원보다 규제가 심하고 심할 경우 교직원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재정적 지원이나 교사들 도움이 미미하다. 학생임원 출마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체벌과 언어 폭력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나친 두발 단속과 반성문과 서약서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가방 검사와 핸드폰 압수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생들의 자유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자유권 침해는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과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상부 교육행정기관의 간접적인 통제와 간섭 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은 학생

들의 자기표현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문화를 만들어 낸다. 또한 검열과 통제를 일상화하여 아이들을 규격화, 표준화하여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2) 교육복지권에 대하여

「교육권」과 관련하여, 차별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위권학생을 위한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험횟수가 많고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동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실 안 공기, 소음, 수도 등의 위생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 급식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지 않고 적법절차와 권리실현절차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도도 낮게 나왔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의 대응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나왔다.

교육복지권의 침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학교 환경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예산 부족과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는 권위주의적인 통제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3) 평등권에 대하여

특정 학교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다. 학업성적을 이유로 교직원으로 차별이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학력숭상문화와 입시 문화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설 보완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8. 대안-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1) '경남교육연대'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요 활동 일지

2008년 7월 16일「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사업 제안

2008년 9월 5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안 발의방안 협의(교육위원)

2008년 11월 24일 - 12월 20일「학생인권조례를 위한 인권실태조사」
2008년 12월 10일 <경남도교육위원회> 주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2009년 1월 - 2월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09년 3월 4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완료
2009년 3월 23일 설문조사 분석에 대한 결과 토대로 조례 초안 작성 시작
2009년 4월 23일 도교육청 시범실시 그린마일리지제 관련 반대성명 발표
2009년 5월 1일 도교육청 그린마일리지제 연구팀 간담회
2009년 6월 4일「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 및 경남학생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09년 6월 16일 조례제정안 발의책임(교육위원) 간담회
2009년 6월 23일 조례제정안 A안/B안 완성
2009년 6월 - 9월 지역별 단체별 학생인권조례제정 설명회 내지 간담회 (진행중)
2009년 9월 23일(예정) <경남교육연대>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토론회
2009년 9월 - 10월(예정) 경남도교육위원회 정책협의
2009년 12월(예정) 조례제정안 의결과 공포
2010년 1월 - 2월 각 학교별 학교규칙과 관련 규정 개정
2010년 9월 조례 시행

2) 조례제정운동의 원칙과 성격

(1) 원칙

▌지역학생들의 인권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례안을 구성한다.
▌조례안을 구성하는 데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의견과 고민들을 충분히 반영한다.
▌인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며 그 참여를 확보한다.
▌교권침해 내지 후퇴라는 인식을 충분히 설득하며, 교사들의 참여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 성격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사업은 교육운동이며 지역운동이자, 주민(자치)운동이다.
▌조례 제정은 모든 학교교육 현안의 본질을 관통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에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사업이다.

(3) 조례안의 구성 원리

▌구성 순서 : 전문-총칙-자유권-평등권-교육복지권-학생인권보장위원회-부칙

▌각 조문마다 제1항에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2항부터는 구체적 쟁점을 다룬다.

▌이미 법률이나 관련 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3)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

(1) 전문(前文)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비롯하여 자유와 평등에 관한 천부적 인권과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양심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은 학업성적, 주거지역이나 형태, 가족형태, 경제력, 출신지역이나 학교의 종류, 학년, 성별, 장애, 종교, 인종, 피부색, 용모,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학습과 자아실현에 필요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울러 학생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학교와 사회로부터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그리고 주민들은 신나는 공교육과 자주적인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인정하며, 학생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 관용, 박애, 헌신, 협력과 배려의 가치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무엇보다도 학생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다.

(2) 학생인권개념의 심화 확대

제10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내지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등(이하 교육청), 학교 등(이하 학교), 교직원 등(이하 교직원), 그리고 주민의 역할,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0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종류의 것으로서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은 제1호가 규정하는 학교에 재학하거나 퇴학처분을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주민은「지방자치법」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라 함은「헌법」, 여러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협약), 그리고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말한다.

제103조(적용)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 그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규범목적을 존중한다.

제104조(원칙) ①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와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그리고 교직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활동에 관한 학생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⑤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자유권

제201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학교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제202조(학생의 의사결정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재량활동, 선택과목,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기타평가(사설모의고사)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칙이나 학교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가 교복, 앨범, 체육복 등 선정할 경우 반드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3조(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생회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유휴 시설 우선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4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어떠한 체벌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어떠한 노동도 강요할 수 없다.

④ 학생은 두발의 자유를 갖는다.

제205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서약서, 지문날인, 서명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인격에 반하는 대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206조(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 ① 학생은 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복, 양말, 머리핀, 반지 등 복장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이름표착용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④ 학교축제의 내용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⑤ 학생들의 주장을 담은 홍보물은 학내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⑥ 학생은 교외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207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③ 교직원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08조(정보접근권) ①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얻기 위하여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휴대폰 사용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3장 평등권

제301조(평등권) ① 모든 학생은 평등하다.
② 학교의 교육재정(예산)이 모든 학급이나 동아리에 균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302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이나 나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②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④ 학생이 그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등)의 직업이나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⑤ 학생의 용모,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303조(성차에 의한 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성차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학생들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제304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제기는 적절하게 반영되어 기록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복지권

제401조(교육권) ① 학교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학

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수업할 때 학생들의 질문기회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⑤ 학교는 교내외 행사를 위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⑥ 성적이 하위권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유로써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402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숲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

④ 질 높은 수업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⑤ 학교생활을 하는 데 방해되는 소음을 예방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⑥ 수도, 화장실 등 학교의 각종 시설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⑦ 체육활동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⑧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403조(급식에 관한 권리) ① 급식과 그 식자재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② 급식은 학생의 선호도 등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식자재의 안전도에 대한 검수권을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04조(안전권) ① 학생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안전을 이유로 학생활동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학생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학교는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과 함께 협조해야 한다.

⑤ 학교의 시설물은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05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자유로운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휴게실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야 한다.

④ 학교는 생리로 인한 공결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널리 교육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06조(적법절차와 권리실현절차의 권리) ① 학교규정은 학생징계절차를 학생인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받는 학생의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③ 학교규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며,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2. 학생은 학생관련 제 규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학교규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야 하고,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4.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인격모독 등의 심리적 폭력,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생자치기구의 개정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07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성차별, 성희롱 등 제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직원은 학교폭력, 성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서 등 외부기관과 신속하고 적절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학생인권보장기구 관련

제501조(학교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 등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장과 교감은 제외된다. ③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학부모위원, 시민단체위원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④ 시민단체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관련 업무 교직원이 간사가 된다.

⑤ 학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학교정책 수립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6.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7.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
8.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⑥ 학교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학교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

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02조(교육청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교육청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청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선출직 교육위원회 추천 교육의원 2인, 교원단체 추천 1인 이상 2인 이내, 학부모단체 추천 1인 이상 2인 이내, 창원지방변호사회 추천 1인,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1인을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관련 업무 장학사를 간사로 한다.

④ 교육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그리고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6.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7.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8.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
9.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청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 교육청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03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학교위원회와 교육청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학교위원회나 교육청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학교위원회나 교육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그리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4조(진정과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 학생의 인권과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된 경우 교육청위원회에 이를 진정하거나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청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 등의 침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결정 이전에 피해학생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를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과 권리의 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중지

2. 인권과 권리의 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3. 그 밖에 피해 학생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5조(인권자료실) ① 교육청위원회는 도교육청 안에 인권자료실을 둔다.

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립·정리·보존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506조(교직원인권연수 등)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의 인권과 권리

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교직원인권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모든 직무연수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연수를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07조(학생인권교육)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나 대학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8조(인권영향평가) 교직원은 학생인권과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나 행위를 할 경우 미리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책 등의 집행 후에는 인권영향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학생인권조례의 한계 - 소통이 원활한 보다 작은 민주주의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 교사회 법정기구화와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국정·검인정 교과서제도가 제한 내지 폐지되어야
▌학급당 학생의 수를 축소하여야(A안 제402조 제4항 : OECD 수준)
▌보다 작은 학교를 확보하여야

9. 결론

그동안 학생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들이 여러 단위에서 많이 제시되었다.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조약'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제18조 4의 학생인권 보장 조항 등의 법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육주체들의 민주적 시민교육의 필요성이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학부모의 민주적인 참여보장, 친인권적 학교 문화 조성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민주적인 학생생활 규정 제

정 등의 필요성과 실행을 요구하여왔다. 이러한 대안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더불어 함께 추진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학생인권 옹호에 대한 목소리는 외부에서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당사자들의 노력도 많았다. 이미 2000년에 학생들은 두발 규제나 소지품 검사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고 보고 두발을 포함한 자신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을 했다. 이 때 청소년 인권선언을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이후에 스스로의 인권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남에서도 YMCA 청소년 연합회, 청소년 단체 아수나로와 진주지역 행동하는 청소년 등의 자생적인 청소년 단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대안들이 모색되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학생 의견을 제시하거나 일인시위를 하는 등 실천 활동도 한다.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으로 볼 때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 아동 인권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지만 현재 아동 인권이 향상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10 여년 전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의 노래가 흘러간 박제된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유효하고 진행형이다.

입시 문화가 주요한 교육목적이 되면서 입신 출세주의가 정당한 생존수단이 되고 이를 기회로 성적향상을 위해서라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는 관료적이고 통제 일변도의 교육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순종천국, 반항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일'로 규정하여 학생들을 획일화시키고 표준화 규격화시킨다.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이 크다. 자율은 '자기 결정이나 자기 통제를 의미' 하는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지시와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을 존중하여 아동들이 성숙한 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미성숙한 존재로 아동을 인식하다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다른 정책보다 뒤로 밀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불가항력이라는 인식마저 있어왔다. 남성의 여성 폭력 금지가 남성들의 인식 변화나 여성 지위 향상 뒤의

일로 미루어질 없는 것처럼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는 당연한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당위성이 법적으로 현실 여건상 그리고 교육주체들의 요구 등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 스스로 나서고 있고 상위법에서 학생인권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인권법안 내용은 인권의 보편성을 담은 내용이어야 할 것이며 미성숙한 존재로 학생들을 인식하지 않고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 뿐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교가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로 가꾸어지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이자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체험 장소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당위성

김 궁 배

(창원봉림고등학교 교사)

토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의 당위성

김 궁 배 (창원봉림고등학교 교사)

1. 여는 말

요즘 교육과정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프레임을 얹은, 새 교육과정은 교육주체들에게 매우 신선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인재 육성'이라는 과정목표는 어느 누구도 가타부타 토를 달 수 조차 없다. 그야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의 성찬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니, 그 고마움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법하다. 교과 선택제, 교과 교실제, 교과집중 이수제, AP 제도, 교육과정 20%증감 편성권, 고교 조기 졸업제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형 교육과정을 2009년 12월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선진국으로 반드시 진입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담았다는 자랑도 덧붙인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한 내용이며, 우리 교육 여건이나 현실 등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귀에 거슬린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운운하며 전국 일제고사를 전면 시행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야단법석이다. 평준화 정책으로 학력이 저하되었으니, 마땅히 학력을 높여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여론도 제법 따라 주는 편이니, 이쯤에서 초등학생까지 강제보충수업에 자율학습까지 탄력을 받고 있다. 심지어 여름방학조차 보충수업으로 메우는 중학교가 경남지역에 아주 많았었다. 학생들 간의 경쟁을 넘어 학교와 지역 간에도 어느덧 경쟁의 도가니에 순식간에 빨려 들었다. 일제고사로 인한 서열화 결과만 있지,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털끝조차 보이지 않는다. 교육 관료들은 학교와 지역을 줄 세우는 비교육적인

일제고사 정책에 순응하며 부화뇌동할 뿐이다. 공교육은 전인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순식간에 팽개친 것이다. 교육의 진정성은 찾아 볼 수 없고, 서열화 경쟁만 난무할 뿐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나 '일제고사'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교육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인 학생들은 항상 소외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갈수록 대상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에는 '학생인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현실에서는 '학생인권'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야 교육 선진국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초중등교육법 18조 4에 담긴 '학생인권보장' 그리고 '유엔 아동 · 청소년 권리 협약' 등의 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마저 일선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소홀하게 여겨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서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이 지난 2008년에 시작하여 오늘 토론회까지 이어진 과정에 대하여 자못 높이 평가한다. 학부모, 시민단체, 학생, 교사 그리고 대학교수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진행하는 오늘 토론회에서 교육 주체의 여망을 담아 대승적인 합의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2. 학생 인권 실태 파악과 분석

학생 인권에 대한 실태 자료를 학생과 교사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찾고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앞에는 쟁점이 될 만한 주장을 제기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며, 뒷부분에서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배경 지식과 관심정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지만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했다. 교사는 모두 87명이 응답했고, 창원 지역의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15명 안팎으로 표집 했다. 학생은 모두 116명이 참여했고, 일

반계 고등학교 1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남녀 구분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설문은 성별이나 교육경력, 학년 등에 대한 교차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인권에 대한 경향성과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자 했다. 단지 사족을 붙이자면 '학생인권'을 거론하면, 교권이 위축되고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저간의 우려를 실제로 확인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2-1. 토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2-1-1. 주장에 대한 반응 결과 분석

주장 1) 학생을 위해서 교육적인 체벌이 필요하다.

주장1) 학생을 위해서 교육적인 체벌이 필요하다					
구 분	**교사**(87명)		**학생**(116명)		비고
	동의	반대	동의	반대	
반응 수	55	32	71	45	
비 율	63.2%	36.7%	61.2%	38.8%	

위 주장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체벌에 동의한 경우에,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의 허용 여부 의견을 추가한 결과, 교사와 학생 간에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 체벌에 동의한 교사(55명)중 직접체벌(회초리)을 허용한 교사는 35명으로 63.6%의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간접체벌 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0명으로 36.4% 비율로 나타났다.

- 학생들은 체벌에 동의한 71명 가운데 직접체벌에 동의한 학생은 28명으로 39.4%인 반면, 간접체벌에 동의한 학생은 43명으로 60.5%의 비율을 보였다.

- 따라서 교사들이 직접체벌에 동의한 비율은 63%인 반면, 학생들은 간접 체벌의 비율이 60.5%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잘못에 대하여 직접 체벌(회초리)보다 간접체벌을 선호하고, 교사들은 직접체벌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학생체벌을 인정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교육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주장2)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해야 한다.

주장2)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해야 한다.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동의	반대	동의	반대	
반응 수	40	47	99	17	
비율	45.9%	54.0%	85.3%	14.7%	

- 교사들은 학생 두발자유화 주장에 반대 비율이 54%로 다소 높은 편이나, 학생들은 85%의 아주 높은 비율로 두발 자유화에 동의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에 두발자유에 대한 인식차(30%)가 현저하다.

주장3) 학생들의 교복을 자유화해야 한다.

주장3) 학생들의 교복을 자유화해야 한다.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동의	반대	동의	반대	
반응수	17	70	53	63	
비율	19.5%	80.4%	45.7%	54.3%	

- 교복 자유화 주장에 대해 교사들은 반대 비율이 80%로 높은데 비해, 학생들은 찬 반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복 자유화에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보다 10%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활동적인 시기에 신축성이 없는 불편함과 보온성과 통기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장 4) 학생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주장4) 학생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동의	반대	동의	반대	
반응수	66	21	75	41	
비율	75.8%	24.2%	64.6%	35.4%	

- 학생회 법제화 주장에 대해서 교사들의 동의 비율은 75%를 넘겼다. 학생들보다 10%정도 높게 나타나 학생회 법제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에 대한 뚜렷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회 법제화에 35%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 내용은 35%의 학생들이 학생회의 법제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주체로서 민주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학급회의와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체득해야 할 텐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자율학습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론할 수 잇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의 제·개정문제나 동아리 구성활동 등 교육주체로서 최소한의 존재감을 체험했다면 학생회의 법제화를 당연시 했을 것이다.

- 학생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자신들의 자치권을 스스로 외면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학생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을 가지는 항목이다.

주장 5) 교문에서 학생 등교 지도를 꼭 해야 한다.

주장5) 교문에서 학생 등교지도를 꼭 해야 한다.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동의	반대	동의	반대	
반응수	25	62	35	81	
비율	27.8%	72.2%	30.2%	69.8%	

- 학생들은 등굣길에서부터 학교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혹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없을까하는 조바심을 갖게 하며, 학생 스스로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킨다.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와야 한다. 교사나 학생들은 각각 70% 비율로 반대하고 있다.

- 교문에서 하는 아침등교지도는 일제 강점기에 군국주의 이념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한다. 학생들을 권위적으로 통제하고 순응하게 하는 비교육적인 관행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학생을 교육주체로, 동반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주장6) 학생 그린마일리지제(상 벌점제)는 필요하다.

주장6) 학생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는 필요하다.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동의	반대	동의	반대	
반응수	42	44	13	103	교사-1
비율	48.2%	50.5%	11.3%	88.7%	

- 학생 그린 마일리지제에 대하여 교사들의 반대 비율이 50%정도인 반면, 학생들은 90%에 가까운 비율을 보여 대조적이다. 이 제도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 그린 마일리지제는 학생들을 손쉽게 통제하는 카드이기는 할지언정, 교육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학생 교육과 인권은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벌점을 주고 자구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은 학생들을 대등한 교육주체 기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이며 복종과 순응을 내면화시킬 뿐이다.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되리라고 본다.

주장7) 학생인권 신장은 교권침해로 연결된다.

주장7) 학생인권 신장은 교권침해로 연결된다.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동의	반대	동의	반대	
반응수	17	70	24	92	
비율	19.5%	80.5%	20.7%	79.3%	

-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이 확대되면 교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결과적으로 '기우'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 반대 비율이 80%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을 교권과 대립적인 구도로 몰아가는 주장이 허구임이 증명되었다.

-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교권도 확보되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교권을 볼모로 하여 학생인권침해를 당연시해서는 곤란하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학생인권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성장과정에서

체득한 인권의식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장8)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성적이 떨어진다.

주장8)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성적이 떨어진다.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동의	반대	동의	반대	
반응수	6	81	14	102	
비율	6.9%	93.1	12.1%	87.9	

- 학생들의 권리가 신장되면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또한 소수의 학생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가 생겨 학습 분위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우려도 있다.

- 하지만 위 주장에 대한 교사와 학생 응답 비율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오가는 견해와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93%, 학생들은 88%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학생인권 신장과 성적 하락은 설정자체가 불순하다는 생각을 한다.

주장9) 학생 인권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

주장9) 학생 인권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동의	반대	동의	반대	
반응수	79	7	99	17	
비율	90.8%	8.0%	85.3%	14.7%	

-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삶, 건강하고 조화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하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식토록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기본적 인권의 주체임을 인식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구호로써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활동과 생활 속에서 실현토록 해야 한다.

- 학생인권 교육에 동의한 교사 비율은 90%이고, 학생이 동의한 비율은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1-2. 질문에 대한 반응 결과 분석

질문1)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질문1)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잘 안다	모른다	잘 안다	모른다	
반응수	10	75	1	115	
비율	13.8%	86.2%		99.1%	

-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학생들은 '모른다'고 응답비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교사 비율도 만만치 않은 86%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력 이나 교육수준에 비해 국제 조약에 대한 인식수준과 정보가 매우 빈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과정 목표가 우리 교육의 현실과 동떨어져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질문2)우리나라도 1991년 가입하여 이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지켜야할 국제적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2) 우리나라도 1991년 가입하여 이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지켜야할 국제적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잘 안다	모른다	잘 안다	모른다	
반응수	18	69	6	110	
비율	20.6%	79.3%		94.8%	

- 질문2의 결과가 이 설문의 신뢰도에 '옥에 티'로 남았다. 다소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질문1)에서'유엔 아동 청소년 협약'을 '잘 안다'는 답변보다 질문2)에

서 '잘 안다'는 답변이 다소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질문2)에서 '잘 안다'고 응답한 교사 중에 8명, 학생 5명은 모르고 있는 조약에 가입한 꼴이다. 어떤 조약인지도 모른 채, 가입하여 의무를 지녔다고 응답한 것이다.

- 다만, 1989년 11월에'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조약'이 제정되어 세계 191개국이 비준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에 비준 국가로서 마땅히 "아동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질문3)초중등교육법 제18조4의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3) 초중등교육법 제18조4의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잘 안다	모른다	잘 안다	모른다	
반응수	21	66	10	106	
비율	24.1%	75.8%	8.6%	91.3%	

- 2007년에 초중등교육법에 추가된'제18조4'의 내용에 대하여 현직교사들조차'학생인권'보장에 대한 법률 규정조차 모른다는 응답이 75%에 이른다. 학생들 역시 91%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인식 수준은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거듭 확인시켜준다.

질문4) 경남교육연대에서 경남지역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질문4) 경남교육연대에서 경남지역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잘 안다	모른다	잘 안다	모른다	
반응수	17	70	6	110	

비율	19.5%	80.4%	5.2%	94.8%	

- 경남지역에서 교육주체들이 1년여에 걸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정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이 응답결과는 조례제정 활동 방법과 홍보를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하였다.

질문5) 만약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질문5) 만약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구 분	교사		학생		비고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반응수	58	6	101	2	교사 무응답 23명
비율	66.6%	6.8%	87.0%		학생무응답13명

- 교사와 학생의 무응답 비율이 높은 이유는 조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막연한 질문이지만, 학생들의 찬성비율이 교사들의 찬성비율보다 20%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현실적인 갈망을 엿볼 수 있다.

3. 마무리

학교는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교육활동의 근간인 동시에 마땅히 실현해야할 덕목이기도 하다. '유엔 아동 청소년 조약'이나,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4의 내용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교육목적이 학생들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땅히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그 가치실현을 전제로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적용할 인간의 존엄성이란, 학생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여 학교에서도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복장마저 제한을 받는다. 교복을 정해진 기간에 따라 동복, 춘추복, 하복을 입어야만 한다. 학생개인의 건강조건이나 추위나 더위에 민감한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 개인차를 무시한 채, 환절기에 학생들의 선택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학생 그린 마일리지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학생 개인차를 벌점카드로 좁히고 있다. 학생 두발 문제도 2005년 국가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통해 "학생의 두발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불가피하게 제한할 경우에 극히 한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두발 제한의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학생들의 참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규정'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배제되는 현실에서 국제인권조약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생인권'보장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이러한 학생인권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학생의 인권보장과 실현은 가정과 학교의 책무이다. 부모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당사자들이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12조 1항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젠 이러한 규정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강구해야할 때이다. 먼저 교육주체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격 형성과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평화, 박애, 헌신, 협력과 배려의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모색해야 한다.'학생인권조례'제정은 교육의 모순과 부조리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성장할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조례

김 미 선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장)

토론

학부모입장에서 본 학생인권조례

김 미 선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장)

들어가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교육현장에서 뿜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때로는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었다. 세상 밖으로 붉어져 나온 학교폭력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마구 두드려대면서 온갖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대하는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학생인권이 거론되고 교권이 무너졌다며 여기저기서 한소리를 내어 우리를 다잡아 줄 제도권 범주에 있는 어려운 법문 해석에서부터 시작해 학교규칙(교칙)을 찾아본다. 학생들을 보호해 줄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감이 거론되고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의 처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게 된다.

교육은 학생 학부모 학교(교사포함)의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 어느 한쪽의 힘이 크게 작용하다보면 아파하며 다치는 쪽이 생긴다. 학생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존중받을 때 학부모도 학교를 신뢰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은 본연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 하니 학부모로서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다.

필요성.

'학생'을 단순히 '교육받는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주체'로 인식하기 위한 논의 방식의 하나로 학생인권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학생인권 논의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간의 민주적 관계 설정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학생인권 논의는 ‘인성 교육’, ‘창의성 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에게 요구되는 ‘인성’, ‘창의성’ 등은 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되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허용되고 장려되는 것이다. 요컨대, ‘인성’이나 ‘창의성’은 서로 마음을 열고 있는 개방적인 풍토에서 더 잘 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 논의의 필요성은 ‘시민사회’의 도래라는 사회 발전적 맥락으로 간주되어진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은 법적 ·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가?
즉, 학생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론적 관점이 있는가?
학생들은 어떤 사회적 존재로 인식 · 규정되고 있는가?
둘째,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 어떤 사회적 삶을 구성하고 있는가?
특히, 학생들의 학교공간에서의 제도적 삶은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가?
셋째, 학생인권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즉, 학생인권에 포함될 권리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를 준거로 할 때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권리 향유정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학생인권 침해의 경우 이와 관련한 교사들의 명시적 · 암묵적 논리는 무엇인가?
넷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는가? 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내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학생인권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체벌,두발규제,강제자율학습,학생자치활동 등이 있다.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내세우고, 학교 측은 면학분위기와 학생다움을 내세워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교권과 학생인권의 갈등시점에서 상생의 교육을 이뤄나갈 방안은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여 결정지어져야 한다. 일방적인 학생통제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학생들의 반발과 이탈을 범하게 만들뿐이다.

초등학교 시절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일기쓰기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논란에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 두발규제, 강제자율학습, 학생자치활동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물론, 체벌에 관한 것은 초중고가 따로 없다.

학교 등하교길 여학생의 스커트 길이는 천차만별입니다. 반에서 교복수선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짧은 스커트길이에 퍼머를 가미한 여학생의 차림새에서 참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때로는 보수적인 어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강요하고 교육은 대학입시에 불을 붙여 학생들을 억압한다. 학교가 즐거운 곳이어야 하고 그 곳에 가면 재미가 있어야하는 일의 횟수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교내에서 학생체벌규정을 정해놓고 있지만, 빈번하게 이탈하는 사례들을 본다. 머리를 쥐어박고 발길질을 하고 뺨을 때리는 행위는 이성을 가진 인격체의 행동으로 보이질 않는다. 엄격하게 말하면 교내 학생체벌규정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학교 내에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간에 마찰이 생기는 일을 접하게 된다. 학교 시설 중에 제대로 쉴 만한 공간을 마련되어 있지 못해 학생들은 쉼터의 아쉬움에 대해서도 배고픔을 토한다. 등나무 아래 마련된 의자의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복도 이음부분에 체육복을 입고 눕기도 하고 학교뒤쪽 공터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책을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열악한 교육시설만큼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마무리하며.

선진사회 시민의식이 촉구되어진다. 배려하는 마음, 배려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회를 꿈꾸지는 않는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생의 인격이 무너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의 중심에 있는 학교현장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할 때 인성교육이 이뤄진다. 학생들의 창의력은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존중받아지면서 면학의 분위기는 한껏 밝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무지했던 시절 '인권'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의 아픔을 다시금 우리 역사에 묻어나게 하지 않고 싶다.

오늘도 아이들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쇠창살이 없는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끌어 줄 꿈과 희망이 있는 즐거운 학교에 간다.
웃음을 머금고 아이들을 반기며 맞이해줄 선생님이 기다리는 곳.
그런 학교에 간다.
나도 오늘 아침 집을 나선 우리 아이들이
간 곳이 그런 학교이기를 바란다.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쟁점

김 중 섭
(경상대학교 교수)

토론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쟁점

김 중 섭 (경상대학교 교수)

2009년 6월 16일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양해영 시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인권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보류시켰다. 이 결정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리라고 기대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전국 최초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이라는 부담감 탓으로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보류하였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지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19] 하여튼 부결이 아니라 '보류'로 결정함으로써 2010년 6월 30일에 폐회되는 제5대 진주시의회 회기 중에 언제든지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조례 제정의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이렇게 진주시 인권조례가 어떻게 처리될 지 그 행방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을 따져보며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왜 인권조례가 필요한가?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엄과 안녕 복리를 누리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인권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러한 명제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나 사회관에 따라 인권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다르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난 세기동안

19) 진주시의회 규칙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안건은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진주시의회 재적 21명 중 7인 이상)이 요구하여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류된 안건의 처리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게 있다.

인류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보장받는 사회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1948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 여러 형태로 만들어진 국제인권협약들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장치를 마련해 왔다. 유엔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구를 운용하며 인류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에는 유엔의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로 확대 개편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공식적인 국제기구뿐만 여러 형태의 비정부기구 중심으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각 나라의 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자국의 문제로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국제 사회는 전통적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간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권은 국제 사회의 주요한 규칙이 되고 기준이 되었다. 이른바 인권 레짐(human rights regime)이 형성되어 인권 실행에 대한 국제 기준이 국제 사회 질서의 주요 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국의 영토 안에서 국민들에게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가는 그 나라 인권 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곧,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국정 지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지키는 것에 따라 인권 발전의 수준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법인 헌법에 모든 사람이 기본 인권을 누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여러 국가기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를 비롯하여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부가 있으며, 법을 판결하는 사법부가 인권 보호와 증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행정부에 속한 국민권익위원회나, 국제 사회의 결의를 좇아 2001년에 국가 독립기구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기구이다.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이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활동 영역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러 형태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회 전반의 인권 실행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인권 보호와 증진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주요 책무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자국의 범주에 멈추지 않고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한 인권 개념에도 잘 나타나있다.[20]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권의 특성에 있다.[21] 그래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의 사회적 장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 가운데에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인권 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인권 의식을 갖고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인권 중심으로 사회적 관행을 만들어가는 인권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적 제도와 장치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장치가 사람들의 일상생활 터전인 지역 사회에 마련될 때 가장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인권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주목하게 된다.

지난 수 십년 동안의 인권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국제 사회나 국가 차원의 성과에 비하여 인권 실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의 터전인 지역 사회에서의 성과는 비교적 낮다. 국제 사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인권 협약이 발전하고 인권 레짐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고 기구가 발전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 차원에서 그에 부응하는 발전 양상을 보기 힘들다. 이러한 특징은 비정부기구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인권을 위한 국제

---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1) 인권의 특성과 사회적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김중섭.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 김중섭 (엮음),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2001 진주지역 사례 연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15-48쪽 볼 것.

적인 비정부기구나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발전하였지만, 지역 사회에서의 비정부기구 활동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의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을 전담하는 행정 기구가 없다. 인권의 주요 내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사회권은 복지 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고, 인권 침해의 형사상 처벌은 검찰이나 경찰, 법원에서 실시하고, 인권 교육은 교육청의 관할이다. 특히, 인권 관련 진정이나 조사, 정책 수립의 책무를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3개의 지역사무소를 갖고 있을 뿐, 지자체의 행정 기구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인권 관련 업무가 여러 기구에 흩어진 상황에서 인권 실태를 조사하거나 인권의 보호 증진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쟁점 별로, 또 인권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권 전담 기구가 없는 지자체의 실정 탓으로 인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 스스로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고 지역 민주주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또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새로 도입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 전담 기구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전담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인권 발전의 1차적 과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인권 보호와 증진은 인류 사회 전체의 목표이고, 국가 차원에서 주요하게 인식하는 과제이지만, 아울러 개개인이 매일 매일 생활하면서 보장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이 중요하다는 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재대로 인식하기 못한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첫째 요인으로 지적한 인권전담기구의

설치는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 전담 기구도 없고 획기적인 인권 인식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사회에서 인권 취약 집단이 급증하고, 인권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전통 사회의 가치 변화와 함께 학대와 소외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인권 문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 문제,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의 변화에서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 전통적 관습에서 생겨난 차별과 사회적 배제 대상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이혼 등 가족 해체가 급증하면서 생겨나는 한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장의 인권 문제, 빈부격차 확대와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인권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권 문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권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폐쇄회로 감시카메라가 급증하면서 생기는 사생활 보호권의 피해, 범죄의 급증과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에서 비롯된 안전권의 위협, 교통, 환경, 음식물 등과 관련되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위협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인권 문제가 되었다. 이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특정한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사안이 되었다. 게다가 사회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인권 문제의 영역이 계속 확장하고 있다.

요컨대,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또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권 보호와 증진의 문제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며 대처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어떤 내용의 인권이건, 그것이 올바로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전체가 인권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 사회의 노력이나 국가의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22]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이 인권

22) 김중섭, “지역 공동체와 인권: 인권 실행의 증진 방안을 찾아서,”「현상과 인식」(한국인문사회과학회), 30권 4호(2006, 겨울호), 131-153쪽.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여러 방안, 예를 들면, 인권 전담 기구 설치, 인권 교육 실시, 인권 문화 확산 방안 실행,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실시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지와 방안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의지와 정책을 제도화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안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곧,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법제화인 조례와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조례 제정은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방안이다. 이러한 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을 그 지역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중심의 정책 수립과 수행을 약속하게 될 것이며, 인권 관련 사항의 보호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기하고 있는 여성발전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같은 여러 법률의 취지를 올바로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여러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대로 실행하는 장치가 될 인권조례의 제정은 주민 전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민주화에도 기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발전과 지역 민주화를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점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포괄적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반면에, 특정 집단이나 사안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부문별 인권조례'의 사례는 여럿 있다.[23]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입장을 밝힌다는 점에서 인권기본조례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아직 한 곳도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법리적 쟁점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23)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안산시에서 제정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09. 3. 27 공포)는 부분별 인권조례의 좋은 본보기다. 진주시 경우에도 부문별 인권조례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여럿이다. 김중섭,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과 조례 제정: 진주시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1권 4호(2007, 겨울호), 33-56쪽 볼 것. 안산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 제목에 인권이 표방된 사례는 아직 없다.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기본조례의 법적 근거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인권조례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1)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2)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3)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괄호 번호와 밑줄은 글쓴이가 덧붙임).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근거의 법령이 있는가, 둘째, 인권 관련 사무가 지자체의 지방사무인가, 셋째는 단서 조항의 법률 위임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리적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은 어려울 것이다. 사회 제도가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인권조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법령 안에서 인권조례 제정은 불가능한가? 이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근거 법령 쟁점

첫째 쟁점인 근거 법령의 쟁점은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주요 이유로 든 상위법 부재 문제와 이어져 있다.[24] 지금까지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표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판박이 조례를 제정해 온 관례 탓으로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살려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인권조례안은 상급 기관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제시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인권

24)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보류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토론 과정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유는 크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인권은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며,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경남일보, 2009. 6. 17; 서경방송, 2009. 6. 18; 경남도민일보, 2009. 6. 19.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의 존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진주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인권조례안을 공표한 뒤 대표 발의를 맡은 시의원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만들어 진주시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자, 진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하였는데,[25] 상위법 존재 여부는 그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전국 최초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이라는 점에서 진주시가 상급 기관에 질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였다고 보이지만, 질의서 공문에 나타난 진주시의 기본 입장은 인권조례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상급 기관에 보낸 질의서에는 지자체가 인권조례 제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을 제시하면서 진주시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던 것이다.[26] 그러나 진주시의 의견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회신을 보냈다. 양 기관은 인권조례 제정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갖고 있으며(헌법 제10조), "조례가 규율하려는 인권보호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96추244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1항)은 인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27]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에 대하여 진주시는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행정안전부의 회신(2009. 2. 13) 내용이 불명확하고 잘못 판단되었다고 사료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권한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법제처에서는 조례 제정(안)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주시에 질의서를 반려하였다.[28]

---

25)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진주시인권조례'(안)을 양해영 시의원의 발의로 제정을 추진하자 진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각 2차례씩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가 있다. 이후 논의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고자 한다.

26) 진주시는 2009년 2월 3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 공문을,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관련 제정 권한 및 상위 법령 저촉 여부 질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9일에 답신 공문을 발송하였다.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 ① 항은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위법 문제는 여전히 인권조례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진주시가 국가인권위원회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권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진주시의장에게 5월 28일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례 제정시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나열하며 부정적 의견을 보냈다. 그리고 진주시 소속 공무원인 진주시의회 전문위원 2인은 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접수한 직후인 6월 4일에 인권에 대한 통합법이 없어 조례 제정의 뿌리가 없다는 등 부정적인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인권조례안에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29] 그 결과, 1992년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의 적극적 적용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인권조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에서 편협하게 법을 해석하여 상위법 부재의 근거로 보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30] 이렇게 인권조례의 상위법 쟁점은 특히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의 근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2) 지방 사무 쟁점

상위법에 관련된 첫째 쟁점은 둘째 쟁점인 인권 보호와 증진 사항이 지방사무인가 아니면 국가사무인가의 쟁점과 밀접하게 이어져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권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은 뒤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다가 반려되자, 진주시가 이번에는 "인권의 옹호와 향상을 위한 사무"가 국가사무인가 지방사무인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재차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사무 분장 문제가 자연히 인권조례 제정의 또 다른 쟁점이 되었다.

진주시의 요청에 대하여 법제처는 "인권 옹호와 향상을 위한 사무"는 추상적이

28) 진주시의 4월 13일 장문의 법령해석요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고, 법제처는 4월 14일에 법령해석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라면서 조례 제정(안)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반려하였다.

29) 경남일보, 2009. 6. 17; 부산일보, 2009. 6. 19 ; 경남도민일보 2009. 6. 19, 6. 25; 강민아, "왜 인권조례를 보류했나," 경남도민일보 2009. 6. 25 ; 진주MBC 2009. 6. 19 강민아 시의원의 인터뷰.

30) 김중섭, "인권조례 제정을 가로막는 것들," 경남도민일보, 2009. 7. 2.

고 광범위한 사무영역이기 때문에 자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인지 제11조의 국가사무인지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며 질의 자체가 법령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려하였다.[31] 그러자 진주시는 인권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묻는 질의서를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보냈다.[32] 이에 대하여 5월 12일 행정안전부는 인권 보호 증진 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밝히며, 단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독립적 수행 사무에 관하여는 제한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조례 규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달아 진주시에 회신하였다. 한편,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업무 전담기구이고,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련 인권업무는 그 기관장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33]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범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각종 법률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이 지방사무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회답은 법제처에서 구하라고 5월 25일에 진주시에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두 인권은 국가업무일 뿐만 아니라 지방업무라는 것을 거듭 밝혔던 것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나열한 예시 사항에도 '인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항)가 직접 간접으로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다음과 같이,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 여러 법률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34]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

31) 2009년 4월 14일 인권조례 제정권에 대한 법령해석이 반려되자 4월 16일 다시 법제처에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법제처는 4월 24일에 답신을 보냈다.
32) 진주시는 5월 6일 행정안전부에, 그리고 5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33)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시에 보낸 회신(2009. 2. 19) 볼 것.
34)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신보건법 제4조 볼 것.

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부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회신이나 여러 법률에 적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국가사무라는 주장은 진주시가 진주시의장에게 보낸 의견서나 진주시의회 전문위원들의 의견서에서 거듭 반복되었다. 진주시의회 전문위원들은 그 법률적 근거로서 인권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 범위로 적시한 총 57개 사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11조 국가사무 처리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하는 사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권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시의원들도 인권사무가 국가사무라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인권 사무가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갈리는 견해 차이는 인권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인권조례 제정에 찬동하는 입장은 지방사무로,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은 애써 국가사무로 보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 결과 인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장 문제는 여전히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주요한 논란거리로 남게 되었다.

3) 단서 조항의 법률 위임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이 조항은 만약 조례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될 때 제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조례 내용이 상위법의 법률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정 자체를 포기하거나, 관련 내용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없다는 대법원 판례(1992. 6. 23, 92추17)에 비추어 이 단서 조항이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조례의 제정 자체를 막을 법리적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인권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인권조례 제정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이 단서 조항은 인권조례 제정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인권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인권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 자체를 좌절시키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다. 이렇게 법률 위임이나 상위법 상충 문제는 조례 제정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이 쟁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형태의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성공 여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 위임이나 상위법 상충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 문제는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년 이상 준비하여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공표한 안과 2009년 6월초 시의원의 발의안이 크게 다르게 된 주요 이유이었다. 시민단체 안에는 인권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교환과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인권센터의 설립, 인권 보호와 증진에 지원하는 인권기금 조성, 인권 발전의 지표로 활용될 인권 실태 조사와 백서 발간, 인권 교육 실시, 인권 보호와 증진을 담당하는 행정 기구와 자문심의 기구로서 인권증진심의위원회의 설치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나 의원 발의안을 작성하면서 이런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을 법리적인 이유로 삭제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권을 담당하는 행정기구 설치 문제였다.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의 축소 통폐합 권한만을 갖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행정안전부의 회신(2009. 2. 13)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인권 기구가 설치되려면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발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다. 따라서 의원 발의안 제출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은 삭제될 수밖에 없었다.[35] 반면에 인권증진심의위원회 구성은 소관 사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의거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또 예산 소요 사안은 집행부와 협의하여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인권센터 설치, 인권기금 조성, 인권실태 조사 및 백서 발간 등은 의원 발의안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안들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의지가 주요 변수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처럼, 행정 정책이나 집행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명문화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이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고, 실행 수단이 미비된 탓으로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하였다.

그리고 인권조례안에 제시한 시 구성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조항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

35) 물론 이 문제는 예산 소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령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하여 시 구성원들의 기본적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안에는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36]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37] 정신보건법 제5조[38] 등은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교육책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39]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40] 따라서 시 구성원의 책무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는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인권조례 제정의 사회적 토대

지금까지 왜 인권조례가 필요한가 그 이유를 제시하고, 법리적 해석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았다. 국제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선언과 협약, 헌법,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권조례 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이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시대적 요구가 거세고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 우선,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발의, 지방의원 발의, 주민 발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

---

36)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7)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8) 정신보건법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보건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39)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대부분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한다는 점에서 집행부 발의는 가장 손쉬운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진주시의 경우, 진주시장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41] 시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하면 된다. 또 지방의원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데, 진주시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이 발의하면 된다.[42] 그리고 주민들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일정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진주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43]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권한은 전적으로 지방의회에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심의를 받는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단체장에게 이송되고, 단체장이 공포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만약 단체장이 이송된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의가 요청된 안을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이 안은 조례로 확정된다.[44] 요컨대, 발의 방법은 달라도 조례 제정의 권한은 전적으로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권인식과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인권조례 제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의원들이 인권조례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인권이나 인권조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일반론에 비추어 인권조례 제정 여부는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41)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볼 것.
42) 현재 진주시의회 의원 재적이 21인이므로 5인 이상 서명하면 발의안은 성립된다.
43)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7조. 현재 진주시 19세 이상 주민 수가 대략 25만명 이므로 주민 발의를 하려면 5천명 이상의 연서 서명이 필요한 셈이다.
44) “지방자치법” 제26조.

그만큼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 조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방안도 의미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퍼센트의 유권자로부터 연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의원이 발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단체장이 인권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정 자체에 반대하는 경우 이 방안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진주시의 경우, 상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될 때 단체장의 발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의원 발의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생긴다. 인권조례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 관계없이, 현실 정치 상황에서 의회 구성원들 사이의 역학 관계가 조례 제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례 발의 방안이 제각기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위하여 제일 선결되어야 할 것은 인권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이다. 따라서 인권조례 제정 노력은 결국 인권 교육 실시와 인권 문화의 확산이 함께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원들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인권조례 제정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때 인권조례의 제정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지역 사회의 시민사회 발전 수준과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인권조례 제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쉽게 전개될 것이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이라면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핵심 활동가, 상임활동가, 대표자 같은 중심 세력이 인권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제 설정 과정에서 거주 외국인 밀집, 교육기관 과다, 노령화의 심화와 같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인권조례 제정을 먼저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먼저 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조례 제정 활동에는 지역의 여건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진주의 경우처럼, 형평운동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배경을 활용하거나, "인권도시

진주 만들기" 같은 의제를 설정하여 그 일환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주장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또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같이 지역 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 활동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그 의제로 인권조례 제정을 설정하여 활동할 때 작은 규모의 지역 사회에서는 효과를 클 것이다. 또 역량 강화의 방안으로서 워크숍, 시민토론회, 초청간담회, 선진지역 방문, 국제교류 등을 활용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45]나 다른 지역 인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외연을 확대하는 것도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한 일본 사례와 같이, 선진 지역의 사례로부터 학습하는 것도 역량 강화의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이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토론회, 초청간담회, 인권문화제 같은 행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적 지형 고려, 정당과의 관계, 정치권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중요하다.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언론과의 협력 유지의 중요성이다. 인권 관련 행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이 시민 홍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도 자료 배포 같이 언론에 끊임없이 인권 관련 행사를 알릴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방식을 고려한 행사 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나갈 때 인권조례 제정의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4. 인권조례 내용과 제정 방향

인권조례 제정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이다. 이제, 인권조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 뒤, 제정 방향과 그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45) 진주의 경우에는 2007년의 진주인권사랑한마당 개최와 2008년의 인권조례 제정 여건 조성 사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의 원활과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입법인 조례는 조직, 예산, 제도의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게 된다. 인권조례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은 아주 지대하지만,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 수준과 정책 실행의 책임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재의 제약 조건에서 인권조례의 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목표에 따라 부문별 인권조례 제정을 지향하거나, 포괄적 인권조례인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지향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경우에는 외국인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이나, 진주시의 경우 거주민 모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 본보기일 것이다. 이처럼 목표 설정에 따라, 또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조례 내용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번에 발의된 진주시 인권조례안을 보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첫째는 인권 정책의 기본 이념을 실행한다는 목표 아래 시 구성원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는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권증진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상설적인 인권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심의기구 설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부딪칠 비판은 과연 이 조례가 인권 보호와 증진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행태가 관치형의 중앙정부 축소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단체장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현실 속에서 조례의 운용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고 과연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겨볼 때 이러한 우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효과에 대한 우려로 말미암아 제정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정과 함께 제정 이후의 운용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 이 조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로 예상되는 비판은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비판은 시민단체의 조례안 가운데 많은 내용이 삭제되어 실질적인 내용이 없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단체의 안은 법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던 반면에, 시의회 발의안은 실현 가능한 수준의 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요약하자면, 시민단체의 안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었고, 시의회 발의안은 지나치게 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겠지만, 상반된 이 두 가지 평가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징적 수준의 조례라는 비판이 있겠지만, 일단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은 조례 내용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와 정책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하여 가져야 할 기본 입장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인권조례 제정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쨌든 조례 제정은 제정 당시의 현실 상황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조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 인식 자체가 끊임없이 바뀐다는 점에서 제정 이후에도 인권조례의 바람직한 운용과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46]

셋째, 실효성이나 내용에 관한 논란과 함께 발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이다. 인권조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또 제정 이후에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 발의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의 방안은 전적으로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될 수 밖에 없다. 이 제안대로 주민발의의 장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9세 이상 주민의 일정수 이상으로부터 연서명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다. 연서명 자체가 인권조례의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 일을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다

46) 김중섭, 윗글 (2006) 볼 것.

면 주민 발의 방안은 적극 권장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진주시의 경우처럼,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초안을 기초로 시민단체와 대표 발의할 시의원이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뒤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는 인권과 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소임을 수행할 수 있지만 조례 발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반면에, 조례 제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보좌관이나 법무지원팀이 없어 조례 제정 준비가 쉽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둘이 협력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 제정 과정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곧, 시민단체와 지방의원 모두 서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맺음글

지금까지 진주시 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황을 중심으로 인권조례의 의미와 전망을 논의하였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 존중의 합의와, 또 이를 실행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인권조례의 제정은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선언, 협약, 법령,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권조례 제정은 시급한 과제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법리적 논란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아래에서도 인권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조례 제정의 제일 중요한 관건은 법리적 해석보다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인권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권인식과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 전반의 인권 인식 제고와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조례 제정이 지역 사회의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지역 사회의 인권 이해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은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끊임없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문화를 확산하는 일이 병행될 때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인권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권조례의 실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례 제정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실효성 점검

노 일 환

(경남생활지도전문연구회 연구위원)

토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실효성 점검

노 일 환 (경남생활지도전문연구회 연구위원)

들어가며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그 핵심은 헌법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가 조직·운영되는 제도이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운영되는 제도이다. 때문에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의 보장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학교교육의 힘이 근간이 되어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국민들의 인권도 크게 향상되었다. 남성에 비해 차별받아온 여성들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왔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민주화가 진행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가고 있지만 학교 조직의 변화는 우리 사회 다른 조직에 비하여 그 변화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학생은 미성숙한 보호의 개체로 인식되어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아닌 부모와 어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몸에 익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또한 지나친 학력 중시의 문화는 교육을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인성교육이나 학생의 인권 보호를 등한시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과학과 발달심리학의

발달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연주의적 아동관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청소년은 성인을 표준으로 미성숙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절대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 온전한 인격체로 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사상의 연장선 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두발 자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가 두발의 길이와 스타일을 규제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데서부터 시작한다. 1983년 두발 자율화 이후 규제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어 가면서 학교가 두발의 스타일과 길이에 대한 제한을 학칙으로 제정하자, 학생들이 2000년 8월 초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한 서명운동을 통해, 청와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9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공고하였지만, 두발 규제권은 학교장에게 넘어간 상태였기에 그 기대가 충족되기는 어려웠다. 두발 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후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영역은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와 체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관심 영역은 성별, 성적, 가정환경 등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사상·양심·종교의 제한, 자치활동 및 외부 집회 참여 제한, 일기·소지품 검사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정부 및 일선 학교나 교사들도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그 변화의 속도가 다소 늦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과 직접 관련된 체벌, 생활규정, 적법절차,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

1. 학생 인권 유형 분류[47)]

평등권	자유권					복지권					
						보호권		건강권		일할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문의 자유	표현 및 참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 보장·통신의 자유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	부당 대우 및 처벌	급식	시설	일할 권리	직업 선택

2. 학교에서의 인권사안 현황[48]

가. 최근 진정사건 처리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계	인용(권고 등)	기 각	각하 등
2006년	37	4	8	25
2007년	155	11	20	124
2008. 9월 현재	125	14	24	86
계	317	29	52	235

나. 학교과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2006~2008.9	317	60	81	133	43

다. 학교관련 주요 진정사건 유형

47)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06)
48) 한국 학교에서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표시열 (2008)

진정사건 유형	비율(%)	진정사건 유형	비율9%)
과도한 두발규제 등	18	집단 따돌림(왕따) 관련	2
과도한 체벌 등	16	학생선수 이적동의 불허	2
교사 등의 인권침해	12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침해	2
폭언 및 명예 등 인격권	12	보호의무 위반 등	1
부당한 행정처분	6	보충학습 및 야간학습 등 강요	1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침해	6	통학로 및 안전권 미흡	1
학교폭력 방치 및 축소 등	4	종교의 자유 침해	1
반성문·각서 등 강요	4	과도한 소지품 검사	1
부당징계 및 적법절차 위반 등	4	기타 유형	2
부당 학칙운영 및 벌점제도 등	3		
부당전학(불허가) 강요 등	2	계	100

위의 진정사건의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인권 관련 진정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발규제와 체벌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학생인권침해의 원인으로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 학교규칙의 미흡함 내지 형식적 운영,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규칙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의 한 요소라는 주장도 있다.[49] 학생들도 학교생활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실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50]

3. 체벌

특히 체벌의 경우는 오랜 유교적 전통에 의해 정당화 시켜온 관습도 문제지만 체벌로서 학생을 다스리려는 교사들의 인식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체벌이 아닌 다른 유형의 불이익 내지 처벌을 통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교육적 방편으로 체벌을 행하였다고 하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체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하나, 체벌에 대한 상세화의 필요성은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해진다.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외국의 경우 교사들은 체벌을 하지 않는다. 이는 체벌하지 않고

49)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203-211면.
50)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203-211면.

서도 학교생활규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벌로 학생을 다스리려는 교사의 인식도 문제지만, 학교생활규칙의 준수성에 대한 학생들의 실천 의식도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제정 단계부터 학생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칙이 필요하며, 학생들도 학교생활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위반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학생생활규정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의 실질적 기초는 헌법상의 기본권, 교육관계법령이 아니라,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학생생활규정의 문제점은 비민주적인 규정이 많고, 학생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용어 및 규정 내용이 모호한 것이 많고, 유사한 비행에 대한 징벌양도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51]

또한 합리적인 징계 절차, 명확한 징계 기준, 제·개정 절차에의 학생 참여, 규정의 공지 등이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52]

5. 적법절차

적법절차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 관한 규칙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생 징계 시 징계 대상 학생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학생에게 적법 절차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학교 당국의 임의적인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고 징계에 앞서 자기 의견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학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

51) 박재윤 '학생징계제도와 운영 실태' 「교육법학연구」 제9호, 대한교육법학회, 1997.
52)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생 인권실태조사」, 2006.

6.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2항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3조에서도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매체를 통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법원은 팅커(Tinker)[53]판례에서 학생도 학교 밖에서는 물론 안에서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학생들의 자유는 학교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간섭인 경우와 남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다고 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므로 자기와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류를 통하여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데 있다. 특히 자유로운 표현은 참여를 유발하고, 인간은 참여과정을 통하여 자기 성장을 이룩해 간다고 볼 때 충분한 선택 능력이 없는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학교 환경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도 인정하여야 한다. 수업 시간중의 소란 행위 같은 학교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본질적인 간섭, 남의 자유(다른 학생의 학습권)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7. 사생활의 자유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의 용모에 관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가꾸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인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된다.

두발 규제의 찬성론자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등학생이나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므로 보호의 객체임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 금지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권 제한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54] 학교는 사회로 나가기 전에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규율을 배

53) 학생들이 월남전 반대 표시로 검은 완장을 다는 것을 금지시킨 학교당국의 조치

우는 곳인 바, 학생 두발이나 복장에 관한 규제는 교사 내지 학교장의 일상적인 재량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두발규제는 학생의 인성을 바람직하게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지도방법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학생도 권리를 행사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임을 강조한다. 그동안 학생을 통제의 수단으로 보고 일방적인 강요만 하여 왔으며 학생의 인권이 학교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나 이제는 학생도 인격주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미성숙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책임 지우도록 권리행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연결 짓고 있다.[55]

두발관리는 자기결정권으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학생의 경우도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로 이러한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배우는 지위에 있으므로 건강 및 위생 관리의 필요성 같은 합리적인 제한은 불가피하다. 두발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규제의 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가면서

지금의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는 권위주의적이며 독재적인 정치, 교육, 문화, 사회 환경 속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예전보다는 향상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또한 독재와 권위주의 하에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이 이제 보호되어야 할 객체로서 인식되던 학생들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 경기도에 이어 이제 경남에서도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

54) 헌재 1996. 02. 29. 94 헌마 213.
55) 이수광, "두발자유화주장과 지금 이곳의 학교현실", 「새교육」 제12월호, 한국교육신문사, 2000, 103-104면.

하려는 논의가 일고 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례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외부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기능은 ① 지역차원의 학생 인권 보장 정책의 입법화 기능, ② 국회의 미비한 학생인권 관련 법률의 보완 및 입법 선도 기능, ③ 주민 자치 실현 기능, ④ 학생 인권 운동의 제도적 근거 및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한 교육적 기능, ⑤ 인권 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 재구조화 기능 등이 있다.[56]

또한 지방자치법 제 20조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조례제정권'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교사, 일반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을 더욱 보장, 신장시킬 것은 분명하다. 영역을 넓혀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조례안은 너무 단언적이고, 규제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야 한다(포지티브 조항) 보다는 이런 것만은 안 된다(네거티브) 등으로 최소한의 범위 규제가 더 현실적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장치 즉, 가정교육의 제도화 등의 조치도 학생인권조례 속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학교 규모의 거대화, 교실의 과밀화, 입시위주의 교육, 학벌 중시의 사회 풍조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특목고, 전문계 등 다양한 학교 환경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교 급별, 교육환경, 개인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조례의 적용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기보다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56) 광주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의 인권. 김재황(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

교사와 학생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교사는 사랑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은 존경의 마음으로 교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사는 지식 전달자, 학생은 지식 수용자의 관계로 변질되면서, 교사는 지배자, 학생은 피지배자로 묘사되면서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57]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완했으면 한다. 그 필요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헌법정신에 입각한 일정 수준의 규제 필요. 많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칙이 복장 및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야기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한 학교생활규칙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복장, 두발 규정의 표준이나 예시안을 제정하여 학교에 내려 보낸다면 이것 역시 학교 간의 차이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칙이 제정되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직접적 관심의 주체인 학생보다 간접적 관심의 주체인 교사가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 절차에 학생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학생대표와 교사대표가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학생자치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학생회 구성을 위한 임원 자격 제한 규정 폐지, 학생회의 예·결산권 확보, 회칙 재·개정권의 확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독일의 경우처럼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기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57)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조금주(2007)

셋째,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학생회가 법제화 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 자신이 무지, 혹은 무관심하다면 학생회의 법제화는 의미가 없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학생회는 간부들만의 학생회가 되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의 법제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넷째,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 의식은 두발, 복장, 등 스타일에 관련된 영역에 그칠 뿐 학생 자치, 정치, 사회에 대한 인권 의식은 거의 무관심에 가깝다. 즉, 인권 의식이 높다기보다는 외모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대부분의학부모는 교사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학생만큼 인권에 민감하지도 않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학교풍토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남 그린마일리지제에서와 같이 학생생활 교육 측면의 접근도 하나의 방법이다. 알다시피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인권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교사들마저 인권 교육의 대상으로 만들기 보다는 이들을 지원하여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실제 교육활동 등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 인권의 가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철학적 합의를 모색하여야 한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을 마구 재단 할 수 없듯이, 교육적 필요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 할 수도 없다. 교직단체, 인권단체, 교육행정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학생인권협의체를 통하여 학생 인권과 교육을 접목시킬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현실적 필요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를 구현하기 어려운 것은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시행착오 없이는 현실을 무시한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 선언적 구호가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재의 법을 잘 활용하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더 절실하다.

또,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를 필요시마다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보다 조례로 제정하면 시간적으로나 정책 실행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급작스런 조례의 제정보다는 현실적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교육현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가는 것이 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아동폭력에 관한 UN 보고서

UN A/61/

유엔총회 2006. 8. 23
원본 : 영어

제 61회
임시 안의 제 62번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

아동권리

아동폭력에 대한 UN연구를 위한 독립적 전문가의 보고서

사무총장의 보고

사무총장은 유엔총회의 회원들에게 아동폭력에 대한 UN연구를 위한 독립된 전문가 보고서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Paulo Sėrgio Pinheiro는 유엔총회 결의안 57/90에 준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무총장은 유엔총회가 이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이 중요한 주제의 결론과 제언의 실행에 대한 후속작업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요약

2002년 유엔총회 결의안 57/90에 준거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 전문가인 Paulo Sėrgio Pinheiro가 연구한 내용에 기초한 이 보고서는 아동폭력에 대한 국제적 양상을 보여주고, 이런 이슈에 대처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언을 시사해 준다. 가족, 학교, 아동보호시설, 격리시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곳과,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지역적 국가적 조언, 전문가 주제 회의, 현장 견학 등 참여적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다. 또한 많은 정부가 2004년 독립적 전문가가 전달한 설문지에 응답하여 주었고 이를 활용하였다.

독립적 전문가는 정부, 지역기구, 정부간 기구, UN, 시민사회조직, 그리고 아동들의 연구를 위한 지원에 매우 감사한다.

목 차

문단번호

I. 도입 :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1-23

A. 훈령 및 연구의 범위 7-10

B. 연구 절차 11-23

II. 국제적 문제 24-37

A. 숨겨진, 보고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문제 25-27

B. 드러난 양상 28

C. 위험요소, 보호 요소 29-35

D. 광범위한 파급효과 36-37

III. 아동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38-80

A. 가정과 가족 38-47

B. 학교에서와 교육현장에서의 폭력 48-52

C. 보호 및 사법제도안에서의 폭력 53-63

D. 노동 환경에서의 폭력 64-68

E.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69-80

IV. 연구성과 81-89

V. 결론 90-93

VI. 제언 94-123

A. 포괄적인 제언 96-109

1. 국가 및 지방의 약속과 행동강화 96

2.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 97-98

3. 예방우선 99

4. 비폭력의 가치와 인식 증진 100

5. 아동을 위하여,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개선 101

6. 회복 및 사회재통합 서비스제공 102

7. 아동참여보장 103

8. 접근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104

9. 책임보장과 처벌 감형의 폐지 105
10. 성별적 차원의 아동폭력에 대한 대응 106
11. 제도적인 국가자료 수집과 조사의 개발 및 시행 107
12. 국제적 약속의 강화 108-109
B. 환경 특별 제언 110-114
1. 가정과 가족 110
2. 학교와 그 외 교육 환경 111
3. 보호 및 사법제도 112
4. 노동현장 113
5. 지역사회 114
C. 시행과 사후점검 115-123
1. 국가 및 지역적 수준 116-119
2. 국제적 수준 120-123

I. 도입 : 폭력으로부터의 아동을 보호

1.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 계층, 교육적, 경제적 수준, 인종적 차이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폭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인권에 대한 책임과 아동발달 욕구와 위배되게 모든 지역에서 아동폭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아동폭력은 합법적으로 정부의 허가 하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통"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성인들로부터 정당화되어 일어나는 것을 중단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타협될 수 없다. 아동의 잠재력과 취약함, 성인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아동의 특성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더욱더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3. 문화,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함을 의미한다.
4. 본 연구는 처음으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과 관련하여 UN에서 실행한 국제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Graça Machel이 작성하여 10년 전에 유엔총회에 제출한 분쟁지역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에 토대를 두었고, 세계보건기구의 "폭력과 건강에 대한 국제 보고"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동참시킨 첫 번째의 국제적 연구이다. 아동은 모든 지역적 자문협의회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이 경험한 폭력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아동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5. 아동폭력은 다차원적이므로 다방면의 반응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인권과 공중보건, 아동보호를 종합하였고, 이처럼 다양한 실무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협력하여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폭력에 대한 원인, 결과, 예방을 설명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6. 아동폭력에 대한 보호는 긴급한 문제이다. 아동은 수세기 동안 성인의 폭력으로부터 고통당해왔으나, 보여지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이제 아동폭력에 대한 범위와 영향이 더 잘 알려졌으므로, 아동에게 그들의 절대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 및 예방이 실시되어야 한다.

A. 훈령 및 연구의 범위

7. 2001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제언에 의하면 유엔총회는 결의안 56/138에 의해 사무총장이 아동폭력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것과 회원국이 적절한 관련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제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3년 2월, 본인은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연구를 지휘하도록 임명받았다.

8.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조에 나와 있는 아동의 정의를 따른다. :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폭력에 대한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19항 이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 상해, 학대, 무시 또는 무관심한 태도, 학대 또는 착취, 성적 학대" 또한,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 보고』에서의 정의도 따른다: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물리적 힘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끼치는 것.[1)]
9. 보고서는 다양한 세팅에서의 아동폭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학교, 대체적인 아동보호 시설, 격리시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곳, 지역사회이다. 분쟁지역의 아동관련된 사항은 아동과 무력분쟁을 위해 임명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의 임무이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쟁지역의 아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난민과 기타 이주 아동에 대한 폭력과 같은 주제는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10. 이 보고서는 연구조사결과와 제언을 포함하는 심층 자료를 책의 형태와 아동우호적인 버전으로 추가된다.

B. 연구절차

11. 본 연구를 준비하는데 있어, 본인은 regional(지역적), subregional(소지역), 국가적 자문협의회, 전문가 주제 회의, 현장 견학 등을 포함하는 참여 절차를 실행했다. 2004년 3월 본인은 아동폭력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131건의 응답을 받았다.[2)]
12. 2005년 3월과 7월 사이에, 캐리비언, 남아시아, 중서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태평양, 중동과 북아프리카, 유럽과 중앙아시아, 동남부 아프리카의 9개 지역 자문협의회가 모였다. 각각의 자문은 정부 장관과 공무원, 의원, 지역 대표,

---

1) E. G. Krug et al.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p. 5*

2) As of 31 July 2006, 132 Member States and one Observer had submitted responses. All responses are available at the OHCHR website: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study.htm.

기타 정부간 조직과 UN, NGO, 국가의 인권 단체인 NHRIs, 기타 시민단체(미디어, 종교 조직, 아동)를 포함하여 평균 350명의 참가자에게서 받았다. 아동은 각각의 지역 자문협의회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연구를 위한 의견과 제언을 개발하여 제공했다. 각 지역 자문협의회의 보고서와 제언들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다수의 소지역과 국가 자문협의회 또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13. 이러한 자문협의회를 개최하는 정부는 연구의 진전을 위해 활발히 개입하였다.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아랍 동맹(the Arab League), 캐리비언 지역사회(the Caribbean Community(CARICOM)),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미국조직의 인권을 위한 미대륙 국가간 위원회(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지역협조를 위한 남아시아협회(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와 같은 지역 조직은 자문협의회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적, 지역적 조직은 연구의 후속작업을 위해 계속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14. 본인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말리, 파키스탄, 파라과이,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본인은 이러한 자문협의회가 열린 정부와 방문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5. 본인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이전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 훈령소지자들과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s) 정기적인 자문협의회를 열었다. 특별 절차의 훈련소지자들의 보고서와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안들을 모두 분석하였다.
16. 본 연구와 제네바의 사무국은 3개의 UN 기관들에 의해 지원되어왔는데, 이들은 UN고등인권위원사무국(OHCHR), 유니세프(UNCEF),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여러 전문 분야로 이뤄진 편집위원회였다.
17. 세계노동기구(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약물범죄사무국(UNODC), UN경제사회여성발전부(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of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등 많은 다른 조직도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UN관계부처 조직 또한 연구의 후속작업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모임을 가져왔다.
18. 본인은 또한 지난 3년 동안 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에 도움을

받았다. 전 세계 270명 이상의 개인과 조직이 공식적 제출물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였다. 아동이 제출한 자료와 주요 연구 보고들 또한 포함되었다.[3)]

19. NGO들이 제출한 보고서도 매우 주요한 공헌을 하였다. 연구초기에 NGO자문 패널이 형성되었다. 이 패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본인은 또한 아동권리 위원회를 위해 형성된 NGO Group산하의 아동과 폭력을 위한 소위원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 수많은 연구들을 준비하는 국제세이브더칠드런연맹은 Unicef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역 자문협의회와 아동의 참여를 도와줌으로써 특별한 지원을 해주었다. 국제아동권리정보네트워크(CRIN)는 본인의 아동면담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과정을 문서화해왔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4)]
21. 연구 센터와 네트워크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문협의에 참여해 주었다. 유니세프 이노센티 연구 센터는 아동매매, 여성할례, 인권기준과 아동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출했다. 성별과 관련된 폭력, 학교, 집과 가족, 아동, 청소년 정의 시스템과 법적분쟁 중인 아동에 대한 주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종교 조직, 정보와 의사소통기술, 피난민과 기타 난민아동, 폭력 측정 방법 연구와 관련된 주제회의 또한 개최되었다.
22. 본 연구의 준비는 지역적·국가적 활동을 야기시켰다. 많은 나라에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국가적 논쟁과 액션을 취해야한다는 인식증진과 후속 활동을 이미 실시하였다.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지역적 후속작업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바뀌게 되었고, 아랍 연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멤버십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정부간의 주체로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남아시아 포럼은 모든 나라의 대표와 함께 장관급 수준에서 실시되었다. 첫 2년 동안에 사무국은 파키스탄에 주재한다. 류블라나 자문협의회의 후속으로 유럽 이사회는 2006년 4월에 “아동을 위한 아동과 함께 하는 유럽 건설하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는 연구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각 나라에 정책과 기술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6년 4월, 지역 자문협의회에 참여했던 아동들이 뉴욕에서 자문협의회와 다른 회의에서 받아들여질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제

---

3) The list of submissions is available at the website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http://www.violencestydy.org
4)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CRIN) : http://www.crin.org/violence/,

언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23. 본 연구 절차는 특히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촉진재가 되길 바라는 아동들에게 높은 기대를 받으며 제작되었다. 본인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II. 국제적 문제

24. 잔인하고 모욕적인 체벌, 여성할례, 방임, 성학대, 살인, 기타 다른 형태의 아동폭력에 대한 보고는 그동안 기록되어왔으나 이러한 국제적 문제의 심각하고 긴급한 특성은 최근에야 드러나게 되었다.[5)]

A. 숨겨진, 보고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문제

25. 아동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문화적 물리적 환경에 의한 희생자와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동폭력의 대다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숨겨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두려움인데, 많은 아동은 아동폭력의 경험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하는 부모는 아동폭력이 가족이나 배우자, 고용주나 경찰, 지역사회 지도자 등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되었을 경우 침묵을 지킨다. 두려움은 아동폭력 기록의 낙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이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다. 특히 강간이나 또 다른 형태의 성학대인 경우 배척하고, 더 나아가 폭력 또는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6.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과 가해자 모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피할 수 없거나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보이거나 지속적인 신체적 상처가 없는 경우 신체적/모욕적 체벌, 왕따와 성적 괴롭힘을 통한 훈육은 정상인 것으로 인식된다. 체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금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 아동폭력근절을 위한 국제단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에 따르면 적어도 106개국에서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 147개국에서는

---

5) A. Reza, J. A. Mercy and E. Krug, “Epidemiology of violent deaths in the world”, Injury Prevention, vol. 7 (2002), pp. 104~111; Krug, op. cit at footnote 1, pp. 59~86.

대안적 보호 환경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가 하면, 16개 국가만이 집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6]

27. 폭력은 아동이나 성인이 안전하게 또는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력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들이 경찰과 사회적 서비스 또는 다른 권위를 가진 자를 믿지 않는다.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폭력을 보고할 기관이 없다.[7] 데이터가 수집된 지역에서 모두가 완벽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법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호 시설과 수용 시설에서의 폭력에 대한 자료는 거의 수집되지 않았는데, 이는 폭력이 행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설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거나 드러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도 요청받지 않았다.

B. 드러난 양상

28. 국제통계 분석에서부터 지역수준의 활동 조사에 이르는 다양한 노력은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적인 양상을 더욱 분명하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한 자료는 어떤 폭력은 예상치 못하고 특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폭력행동에 대한 대다수는 아동이 부모님이나 학교친구, 선생님, 고용주,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배우자 등의 삶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로부터 폭력이 가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은 아동폭력의 범위를 보여주는 예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한정된 국가수준의 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53,000명의 아동들이 2002년 살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추론하였다.[8]
- 세계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 80~98%의 아동들이 가정내에서 체벌을 겪으므로, 이 중 1/3은 도구를 사용한 심한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다.
- 개발도상국의 보고에 의하면 국제학교보건 조사(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에서 최근 20~65%의 학령기 아동들이 지난 30일 동안 언어적, 신체적 왕따를 당하였다고 하였다.[9] 왕따는 선진국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10]

---

6)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Global Summary of the Legal Status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28 June 2006).

7)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8) Global Estimates of Health Consequences due to Violence against Children.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02년 동안 18세 미만의 1억5천만 명의 소녀와 7천3백만 명의 소년들이 성관계 또는 다른 형태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적 폭력을 강요받았다고 한다.[11]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1억 명에서 1억4천명의 소녀들이 여성할례를 경험하였다고 한다.[12] 유니세프에 의하면 2005년에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이집트, 수단에서 매년 3만 명의 소녀와 성인 여성이 여성할례를 당한다.[13]
- 최근 세계노동기구에 의하면 2004년 2억1천8백만 명의 아동이 아동노동에 동원되었으며 이 중 1억2천6백만 명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14] 2000년도 보고에 의하면 5백7십만 명이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에 동원되었고, 1백8십만 명이 성매매나 포르노그라피를 강요당했다. 그리고 1백2십만 명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었다.[15] 그러나 2002년에 보고된 자료와 비교해 보면, 아동노동의 경우 11% 줄어들었으며, 25% 줄어든 아동이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C. 위험 요소, 보호 요소

29. 경제 수준, 지위, 연령, 성별은 치명적 폭력과 관련된 많은 요인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

---

9) Analysis provided to the Study by the 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cdc.gov/gshs or http://www.who.int/school_youth_health/gshs) using data from surveys conducted from 2003 to 2005 for Botswana, Chile(metropolitan areas), China(Beijing), Guyana, Jordan, Kenya, Lebanon, Namibia, Oman, the Philippines, Swaziland, Uganda, the United Arab Emirates, Venezuela (Lara), Zambia and Zimbabwe(Harare)

10) C. Currie et al.,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1/2002 survey. 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o. 4(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11) Global Estimates of Health Consequences due to Violence against Children, op. cit. at footnote 8, based on estimates by G. Andrews et al., "Child sexual abuse", chapter 23, in M. Ezzati et al., Comparative Quantification of Health Risks: Global and regional burden of disease attributable to selected major risk factors(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vol. 2, pp. 1851~1940, and using data of the Population Division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for population under 18 years.

12) Female genital mutil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Fact Sheet No. 241(Geneva, 2000).

13) Changing a Harmful Social Convention: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Innocenti Digest No. 12(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5).

14) The End of Child Labour - Within Reach: Global Report(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6).

15) A Future Without Child Labour: Global Report(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2).

16) Global Trends in Child Labour 2000-2004.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IPEC) and Statistical Information and Monitoring Programme on Child Labour(SIMPOC)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6).

기구는 2002년도 아동살해 비율이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2배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100,000명 인구의 (2.58 대 1.21) 가장 높은 아동살해 비율은 청소년 특히 15세에서 17세의 소년의 경우 (여:3.28; 남:9.06) 많이 발생하고 0세에서 4세의 유아에서 (여:1.99; 남:2.09) 많이 발생한다.[17]

30.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은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은 주로 사춘기에 이르렀거나 청소년기인 아동들에게 가해진다.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신체적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반면 여아들은 성폭력, 방임, 매춘 등을 강요당하는 아동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18] 행동양상, 고정관념적 역할 등의 사회/문화적 형태와 수입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1. 소규모의 연구들에 따르면 어떤 집단의 아동들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고 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장애아동, 소수인종 아동, 거리의 아동, 법적문제에 휘말린 아동, 난민 또는 피난민 아동 등이 이에 속한다.
32. 불평등한 부의 성장, 국제화, 이민, 도시화, 에이즈와 같은 건강 위협, 기술 발전과 분쟁 등은 아동을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를 다루고 새천년개발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동폭력 근절에 도움을 줄 것이다.
33. 아동폭력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있듯이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요소도 있다. 비록 더 많은 이러한 보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정된 가족 단위는 모든 세팅에서 아동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34. 집에서나 다른 세팅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요인은 좋은 부모역할과 부모와 아동간의 강한 유대감, 긍정적인 비폭력 훈육을 말한다. 학교에서의 폭력을 보호하는 요인은 학교 정책, 비폭력, 비차별적 태도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단결은 비록 다른 위험요소가 존재한다할지라도 지역사회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35.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복원력을 높이는 여러 요소를 연구들이 밝혀냈다[19]. 이러한 복원력을 높이는 요인은 가족의 성인과 아동 간에 안전한 친밀감, 아동기 때 부모가 아

17) 17. Global Estimates of Health Consequences due to Violence against Children, op. cit. at footnote 8.
18) Krug, op. cit. at footnote 1.
19)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a guide to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October 2006).

동을 잘 돌봐주는 것, 학대를 하지 않은 부모와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 학대나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동료들과의 지지적인 관계 등이 있다.

D. 광범위한 파급효과

36. 비록 아동폭력의 결과가 그 성질이나 가혹함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지만 장/단기의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이다. 폭력은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결함과 약물중독,[20]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건강 위협 행위들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야기 시킬 수 있다.[21] 관련된 정신건강과 사회 문제는 불안, 우울증, 환각, 능률저하, 기억문제, 공격행동 등을 포함한다. 어린나이에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나중에 폐, 심장, 간 등에 질병, 성병과 사산, 자살과 배우자 폭행을 야기할 수 있다.[22]

37. 아동폭력에 대한 경제적 국제소요비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다양한 장/단기 경제적 비용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6년 미국에서 아동 학대, 방임, 사후의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치료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은 124억 달러로 나타났다.[23]

III. 아동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A. 가정과 가족

38.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문 16조와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조약과 시민적 정치적 국제조약 제 23조에 공포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서문에 의하면 가족은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적인 환경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제공하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20) V. J. Felitti et al.,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14 (1998), pp. 245~258.

2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Atlanta, National Centers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6). Available at: http://www.cdc.gov/NCCDPHP/ACE.

22) See previous footnote. Also see Panel on Research on Child Abuse and Neglect, Commission on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1999).

23) S. Fromm, “Total estimates cost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United States-statistical evidence.” Prevent Child Abuse America(Chicago, PCAA, 2001).

가족의 사생활과 자율성은 모든 사회에서 가치 있고, 가족들의 사생활 보장권은 국제 인권조약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24] 아동폭력을 다루고 근절하는 것은 모든 사적 영역과 비교하여 가족의 구조 안에서 가장 도전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생존, 발달, 존엄과 신체적 통합에 대한 권리는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정부의 책임 또한 대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39. 부모 및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신체적, 의도적인 방임, 성적, 심리적 폭력과 같은 아동폭력의 심각성은 최근 몇 십년 동안 인지되고 문서화되어왔다. 영유아기 부터 18세 까지 아동은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령 및 성숙도에 따라 부모, 양부모, 위탁부모, 형제, 기타 다른 가족 구성원, 보호자 등 다양하다.

40.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아동폭력은 치명적이지 않고, 영구적이거나 심각한 외상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정에서 매우 어린 아동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은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영구적 상처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각 국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유아의 머리 또는 뇌 손상과 빈번하게 관련이 있다고 한다.[25]

41.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주 발생하고 신체적, 모욕을 주는 체벌의 형태로도 발생한다.[26]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혹한 체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다. 보고서에 기록되고 연구 지역 자문협의회에서 발언하였던 아동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러한 형태의 체벌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받아 괴로웠으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27]

42. 신체적 폭력은 종종 심리적 폭력을 동반한다. 모욕, 험담, 격리, 거절, 위협, 정서적 무

---

24) See, for example, article 8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article 1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5) O. Flodmark, "Imaging in battered children", Rivista di Neuroradiologia, vol. 17(2004), pp. 434-436.

26) J. E. Durrant "Corporal punishment: prevalence, predictors and implications for child behaviour and development", in S. N. Hart(ed.), Eliminating Corporal Punishment (Paris, UNESCO, 2005), pp. 52 and 53.

27)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website (http://www.violencestudy. org/r27),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Ending Physical and Humiliating Punishment of Children~Making it Happen, Part 1. Sub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2005).

관심 등은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성장을 헤치는 폭력의 형태이다. 특히 부모와 같은 성인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그렇다. 부모가 비폭력적인 훈육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43.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임은 질병을 치료받아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동이 의료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사망과 질병을 야기한다. 여아와 남아의 성비율의 불균형이 있는 지역에서 여아는 특히 폭력과 함께 방임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장애는 방임의 확률을 높인다. 장애아동들은 버려지기도 하고, 이 또한 장려되거나 용납되기도 한다.[28)]

44. 가정에서 성폭력의 발생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구성된 21개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7~36%의 여성과 3~29%의 남성이 아동기에 성학대의 피해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1.5~3배 정도 더 학대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다.[29)]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여러 나라를 연구한 자료에서도(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포함) 1~21%의 여성이 15세 이전에 성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의 경우 아버지나 양아버지이외의 다른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가해진 것으로 밝혀졌다.[30)]

45. 결혼 연령이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아동이 폭력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다. 8천2백만 여아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많은 수의 아동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강압된 성관계와 같은 폭력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46. 유해한 전통관습은 아동에게 적절치 못하게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통을 부모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아동들에게 강요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에 의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 유럽, 캐나다, 미국 이민자 지역 등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관습인 여성할례는 어린

---

28)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Desk Review: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West and Central Africa, 2005, p.11.

29) D. Finkelhor, "The international epidemiology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vol. 18, No. 5 (2005), pp. 409~417.

30)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op. cit at footnote 7.

31) J. Bruce, "Married adolescents girls; human rights, health and development needs of a neglected majority", paper presented by the Population Council at the Supporting Event: Early Marriage in a Human Rights Context, United Nations Special Session on Children, 8~10 May 2002.

여아에게 더욱 많이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32] 그 밖에 묶기, 상처내기, 화상, 낙인, 종교적 예식, 살찌우기, 결혼강요, "명예"를 위한 범죄, 신부지참금과 관련된 폭력, 엑소시즘이나 마력 등이 존재한다.

47. 1억3천3백만에서 2억7천5백만 명의 전 세계 아동이 매년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3] 집에서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주로 부모들끼리 또는 동거자와의 싸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기와 성인기에 개인 성격 발달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4]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필리핀, 남아프리카의 연구에서는 동거자의 폭력 또한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35] 인도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폭력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36]

B. 학교에서와 교육현장에서의 폭력

48.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들은 집밖의 교육환경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는 아동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감독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

32)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main subsidiary body of the former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s studied several thematic issues relating to the question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last few years.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the girl child, Halima Embarek Warzazi, has particularly focused on the elimin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FGM). See, for example, her ninth and final report on the situation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the girl child(E/CN.4/Sub. 2/2005/36).

33) Estimate based on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data for global population under 18 years for 2000 and domestic violence studies from 1987 to 2005. Behind Closed Doors: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London, UNICEF and The Body Shop International Plc., 2006).

34) L. A. McClosky, A. J. Figueredo and M. P. Koss, "The effect of systemic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vol. 66(1995), pp. 239~1261 cited in Krug, op. cit. at footnote 1, p.103; and S. R. Dube et al., "Exposure to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among adults who witnessed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children: implications for health and social services", Violence and Victims,vol. 17, No. 1(2002), pp. 3~17.

35) Krug, op. cit. at footnote 1, p. 68.

36) W. M. Hunter et al., "Risk factors for severe child discipline practices in rural India", Journal of Paediatric Psychology,vol. 25(2000), pp. 435~447.

49. 교육현장은 많은 아동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 폭력을 보며 배우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인식은 극단적인 총기사례나 유괴사례들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죽음이나 중상들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보다 훨씬 희소하다.

50. 학교교사 및 그 밖의 학교 교직원에 의한 학교폭력은 체벌, 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처벌, 성폭력 그리고 권한을 막무가내로 행사하는 등이 있다. 때리는 등의 체벌은 많은 국가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례적인 행위이다. 아동권리협약은 국가들로 하여금 학교처벌이 이 협약에 일치하게 실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 폐지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The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은 집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102개국에서 학교체벌을 금하고 있으나, 집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37]

51. 학교폭력은 놀이터에서의 형태로도 발생한다.[38] 어떤 국가에서는 싸움을 가벼운 징계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한다. 괴롭힘은 주로 빈민가정의 아동들이나, 소수민족그룹 또는 개인적인 결함(외모나 정신장애)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괴롭힘은 보통 비하하는 말로 상대를 낮추지만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조직 폭력적 문화와, 특히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39]

52. 성폭력 및 성별에 관련된 폭력도 교육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여학생들이 주로 남자교사들이나 급우들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폭력은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및 양성애자를 표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폭력은 해당 정부가 아동들을 이런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지 못해 더욱 쉽게 일어난다.

C. 보호 및 사법 제도 안에서의 폭력

53.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특히 남자아이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아원이나 보호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보호기관 또는 사법제도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지내고 있

---

37)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Ending Physical and Humiliating Punishment of Children~Making it Happen, Part 1.Sub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2005).

38) Global Summary of the Legal Status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op. cit. at footnote 6.

39) D. Olweus,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Oxford, Blackwell, 1993).

다.[40] 이런 아동들은 그들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감독관이나 직원들의 폭력에 의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통제시설에서 벌어지는 체벌을 금하지 않고 있다.

54. 혼잡하고 누추한 시설상태, 사회적인 낙인 및 차별행위, 그리고 직원들의 잘못된 교육은 폭력을 유발시킨다. 효과적인 항의, 모니터링, 감사 및 적절한 정부규제와 감시는 주로 시행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의 가해자는 오행을 저지른 후에 처벌받지 않음으로 폭행에 대한 관대라는 어긋난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수용시설의 영향은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 제도적인 결함에 의해 상처 입은 아동들은 경험에 의한 일시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심한 성장둔화, 신체장애,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 자살충동 및 상습적 범행등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55. 세계적으로 8백만여 명의 아동들이 보호기관에서 생활한다.[41] 이들 중 극소수만이 고아이기 때문이고, 대부분은 장애, 가족불화/분열, 가정폭력 및 빈곤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

56. 보호기관 직원들이 “훈계”의 명목으로 저지르는 아동대상 폭행에는 손, 막대기, 호스 등으로 때리는 행위, 아동의 머리를 고의로 벽에 내려치는 행위, 옷장 속에나 추운 방안에 며칠 씩 아동들을 감금하는 일, 아동 자신들의 배설물에 눕게 하는 행위들이 있다.[42]

57. 보호기관에서는 장애아동들이 치료라는 핑계 속에서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아홉 살 밖에 안 된 아동들이 완화제나 마취 없이 전기경련요법(ECT)을 받기도 한다.[43] 전기충격은 아동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약물은 아동들을 순종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을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

---

40)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Consultation Outcome Report: Caribbean, Port of Spain, March 2005.

41) Please note that the situation of other children in State custody, including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as well as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peacetime armies is addressed in detail in the in-depth study on violence.

42) D. Tolfree, Roofs and Roots: The care of separated children in the developing world.(London, Save the Children UK, 1995) cited i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A Last Resort: The Growing Concern about Children in Residential Care(London, Save the Children UK, 2003), p. 15.

43)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Desk Review: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2005), p. 19;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Hidden Suffering: Romania's Segregation and Abuse of Infan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Washington, D. C.,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2006).

태로 만든다.[44]

58. 방임은 많은 낙후된 보호기관들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많은 아동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많은 시설들에서 장애아동은 교육, 오락, 재활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길이 없다.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그냥 침대에 장시간 동안 아무의 관심이나 보호 없이 방치된다.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킨다.

59. 보호기관의 아동들은 타 아동들의 폭력에 의해 피해입기 쉬운 상태에 처해 있다. 이는 특히 관리시설이 열악하고 관리관의 나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아동들이 어리거나 약한 아동들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 많이 발생한다. 관리직원들은 가끔 이런 아동들 사이에 학대를 허락하고 더욱 부추기기까지 한다.

60. 실제로는 국제 시민 및 정치 권리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어떤 국가들은 여전히 18세 이하의 아동범죄에 대한 사형을 허락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31개국의 나라가 범죄를 지은 아동들에 대해 체벌을 허락하고 있으며,[45] 이는 보통 매질, 채찍질, 돌로 치기나 신체부위 절단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동반 할 수 있다.

61. 비록, 아동권리협약의 제 3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 감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최소감금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1999년에 100여만 명의 아동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46] 대부분의 이런 아동들은 사소한 범행 및 초행을 저지른 경우이며, 특히 꾀부림, 방랑, 가출등과 같은 일 때문에 감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국가에서는 유치된 많은 아동들이 유죄선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47]

62. 유치된 아동들은 흔히 작은 규칙위반 행위 등으로 유치소의 직원들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입게 된다. 최소한 77개국의 나라에서는 체벌과 그 밖의 극단적인 처벌이 형벌로

---

44)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Behind Closed Doors: Human Rights Abuses in the Psychiatric Facilities, Orphanages and Rehabilitation Centres of Turkey(Washington, D. C.,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2005).

45)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Summary report, thematic meeting on violence against disabled children, 28 July 2005(New York, UNICEF, 2005), p. 18.

46) Global Summary of the Legal Status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op. cit. at footnote 6.

47) G. Cappelaere and A. Grandjean, Enfants priv、es de libertv、e: droits et rv、ealitv、es(Li `ege, Editions Jeunesse et Droit, 2000).

허락되고 있다[48]. 아동들은 구타, 매질, 제지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다른 유치된 사람들 앞에서 매질 당하거나 나체로 있는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고문을 받는다. 여성아동들은 특히 남자직원들에 의해 신체 및 성폭력을 당하기 쉽다.[49]

63. 아동권리협약의 사항에 근거하여 어떤 국가들은 법적으로 성인유치소/집행소를 아동시설로부터 분리시키기고 있다. 이는 아동들을 성인들의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들이 성인들과 함께 감금된다. 이런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은 특히 자해나 자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런 환경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됨에 따라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가끔은 감옥에서의 하루가 일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10일 후에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중동의 남아-

D. 노동환경에서의 폭력

64.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다. 더구나 비공식적인 일터에서의 폭력에 관한 자료는 더욱 없다.[50]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ILO) 제138호 같은 국제규범은 고용최소연령 미만의 아동이 일터에 고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폭력 -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이 일터에서,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는 수백만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폭력은 일터의 아동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벌을 주거나 혹은 아동을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범주의 아동노동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판정되어 그 노동은 폭력으로 간주된다.

65. 일터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 행위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비록 가해자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 손님들, 십장들, 고객들, 경찰, 범죄 집단, 그리고 성폭력인 경우는 포주 등에 의해 행해지나 거의 고용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전한다.

66. 16세 미만의 여자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노동범주는 가사노동으로[51] 이는 단속

48) F. Martin and J. Parry-Williams, The Right Not to Lose Hope(London, Save the Children UK, 2005).

49) Global Summary of the Legal Status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op. cit. at footnote 6.

5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on the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State and federal prisons(E/CN.4/1999/68/Add.2), paras. 55 and 58.

51) M. Gr··ondal, One Day in Prison~ Feels like a Year: Palestinian Children Tell their Own

할 수 없는 형태의 고용이거나 착취 이며 때로는 강제노동이나 노예상태로 일한다.[52]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ILO) 제182호에 의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명시하고 있다.[53] 아동노동자들은 그들이 체벌, 모욕감, 성희롱 등 혹사를 당했다고 보고한다. 또한 가사에 종사하는 아동들은 그들이 노동현장에서 끊임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한다.[54]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아동들은 대개 여자 고용주에 의해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당하지만 흔히 고용가정의 남자가족들로부터 성 폭력의 대상이 된다.[55]

67. 18세 미만 아동들을 매춘, 포르노그래피, 또는 이와 유사한 노동착취 하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한다.[56] 매년 이러한 분야로 빠져드는 아동의 수가 백만 명으로 추산 되고 있다.[57] 많은 아동들이 강제로, 유괴를 당하거나 팔리거나 속아서, 혹은 인신매매로 이러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아동매춘, 소년/소녀 매춘,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로 이루어진 성폭력에 더하여 아동들은 신체적/심리적 폭력으로 시달리곤 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흔히 도움을 찾지 못하고[58] 혹시 그들이 도움을 청하여도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자유를 빼앗기고, 보상에도 제한적이다.

Stories(Save the Children, Stockholm, 2003).

52)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Desk Review: East Asia and the Pacific (2005); ibid., Middle East and North Africa(2005); ibid., Latin America(2005).

53) Child Labour: Targeting the Intolerable. Report submitted to the 86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8).

54) Abuses Against Child Domestic Workers in El Salvador,Human Rights Watch, vol. 16, No. 1(B)(2004), Always on call: Abuse and Exploitation of Child Domestic Workers in Indonesia,Human Rights Watch, vol. 17, No. 7(C)(2005); Human Rights Watch, Inside the Home, Outside the Law: Abuse of child domestic workers in Morocco, Human Rights Watch, vol. 17, No. 12(E)(2005); and T. Blanchet, Lost Innocence, Stolen Childhood(Dhaka, University Press Limited, 1998).

55) Helping Hands or Shackled Lives? Understanding Child Domestic Labour and Responses To It(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2004).

56) Child domestic workers: A handbook on good practice in programme interventions(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p. 5 and 6.

57) J. Blagbrough, "Violence against child domestic workers"(Anti-Slavery International paper presented at a Save the Children workshop, Thailand, September 2003).

58) For a full definition of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ee the Declaration of the World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tockholm, June 1996. Availableonline: http://www.csecworldcongress.org/.

68. 아동의 노예적 노동(Bonded Labour)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노동형태이다. 강제노동 혹은 노예적 노동에 처한 아동들은 고용주나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나 아동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폭력이 강제노동이나 노예적 노동 아동들에게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폭력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노예들이 하던 형태의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E.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69. 지역사회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단합의 근원지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래 간의 폭력이나 폭력과 관련된 총기 및 무기들, 집단의 폭력, 경찰폭력, 신체/성폭력, 유괴, 인신매매의 장소가 될 수 도 있다. 폭력은 또한 대중매체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도 연관될 수 가 있다.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고 여아의 성폭력과 성관련 폭력(gender-based violence) 위험에의 노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70. 어떤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에 가고 오는 여정이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처음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아동들은 가사를 돕는 일로 물이나, 연료, 음식, 동물사료들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폭력에 노출 되기도 한다. 이런 가사는 개발도상국의 농촌의 여자아동들에게 부여되곤 하는데 아동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들고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59]

71.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 공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5세 내외의 소년들 간의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요인들을 종합하면 청소년기의 아동들에게 또래간의 폭력이 공통적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많은 곳에서 15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들 사이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들의 비율보다 세배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15세 이상의 아동들의 폭력발생율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살인율이 낮은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폭력 행위를 제어하는 조치들이 10대 중반 이전이거나 10대중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임을 암시한다.[60]

---

59) Profiting from Abuse. Report into children i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New York, UNICEF, 2001), p. 20.

60)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0 Essential Learning Points: Listen and Speak out against Sexual Abuse of Girls and Boys. Global Submission to the U.N. Study on Violence

72. 또래 간에 일어나는 신체폭력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성행되는데 그 도시환경이 일자리의 부족, 교육의 부족, 편의/복지시설의 부족 혹은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있는 곳으로 젊은 층들이 도시로 몰려 빠른 속도로 인구 증가를 이루면서 좌절감, 분노, 억압된 긴장감,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폭력은 친구나 지인들 간의 분쟁이 포함되고, 마약이나 알코올 문제도 강하게 연루 되어있다. 총기와 다른 무기들이 사용되기도 하여 이러한 싸움은 심한 부상이나 죽음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춘기 살인 발생률의 성비 차이는 남성의 사회화 과정이나 남성다움의 기준 등이 폭력에 기여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와 칼리비안 지역에서는 사춘기 살인 발생률이 여자보다 남자가 2-6배나 높다.[61]

73. 폭력이 심각한 곳에는 경찰의 만행과 공정한 법체계에 접근의 어려움도 동시에 발생한다.[62] 어떤 국가에서는 조직적인 범죄나 집단 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저지하는 강한 억압적 조치를 채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한 조치들이 일관성 있는 폭력 예방 전략과 믿을만한 자료 시스템,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연관되지 못할 때 폭력의 위험수위는 높아진다. 증가하는 체벌조치들과 집단 폭력배로 추측되는 자들의 대량구금, 큰 규모의 집단 폭력배들의 구금, 비효율적이고 폭력적인 법집행 등이 가난한 젊은이들을 낙인찍는 일이 되거나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기여하게 된다.

74. 비치명적 폭력에 관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 살인이 있을 때마다 약 20-40명의 희생자가 죽지는 않지만 병원치료가 요청되는 희생자가 발생한다. 살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비 치명적 폭력의 희생자들 역시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난다.[63]

75. 아동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성 폭력과 성 착취로 상처 입기가 쉽다. 성 폭력은 아동이 잘 아는 사람들, 즉 가족이나 믿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운동코치, 성직자, 경찰, 교사, 고용주 등)에 의해 범해 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아동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가해진다.[64] 최근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은 흔히 사춘기 청

---

against Children(Oslo, Save the Children Norway, 2005), p.58.

61) Every Girl Counts. Development, Justice and Gender. Girl Child Report(Ontario, World Vision Canada, 2001), p.17; UNICEF Somalia, From perception to reality: A study on child protection in Somalia(Nairobi, UNICEF, 2003).

62) Global Estimates of Health Consequences due to Violence against Children,op. cit. at footnote 8.

63) Ibid.

64) Easy Targets: Violence against children worldwide(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01).

소년들 사이에서 관계의 한 특성 이라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13세-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학교에 기초한 보건연구 (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의 초기 보고서에 의하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에 신체폭력이 성행하고 있음이 보고 되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상대친구에게 맞거나, 뺨을 맞거나, 의도적인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하여 요르단에서는 15%의 여와와 29%의 남아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나미비아(Namibia)에서는 여자 9%, 남자 16%가, 스와질란드에서는 여자 6%, 남자 8%, 잠비아에서는 여자 18%, 남자 2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65]

76. 지역 사회의 폭력은 소외계층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거리아이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 언어폭력, 때리기, 강간, 기타 성폭력과 고문, 유괴 등 - 은 연구 자료에 흔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 한다. 모든 지역의 아동들은 그들의 사소한 범죄에도 경찰이 잔인하게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66]

77.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광이 성을 즐기는 관광으로 전환되고 흔히 그러한 관광의 희생자들은 아동들이다. 인터넷과 다른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또한 아동들의 성 착취 와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위험이 심해지는 일과 연관되고 있다.

78. 난민 가정의 아동들은 독특한 폭력을 경험한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난민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에서 아동들이 성과 관련된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특히 여아들에게 그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다.[67] 많은 난민수용소(캠프)에 안전한 건물이 부족하고, 규칙적인 법 시행이나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가 부족하거나 보상 받는 체계가 부족하다.[68] 강제적인 이주 난민의 경우 여성과 여아들이 특히 성과 관련된 폭력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아들은 그들의 문화와 사회 경제적 위치, 법적 지위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이들의 권리행사는 남자와 남아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 하는데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한다.

79. 아동을 포함한 인신매매는 여러 국가 내에서, 또 국가간의 경계지대에서 일어나고 있

65) Krug, op. cit. at footnote 1, p. 27.
66) 10 Essential Learning Points,op. cit. at footnote 59, p. 22.
67) Analysis provided to the Study by the 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p. cit. at footnote 9.
68) M. Wernham, An Outside Chance: Street Children and Juvenile Justice~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Consortium for Street Children, 2004).

는데 이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선 빈곤, 이주노동, 갈등, 인구 강제 이동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복합적인 현상이다.[69] 인신매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폭력이 포함 된다. 유괴, 아동과 부모와 후견인 및 연계하는 중개인에 의한 속임수,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목적지로 이송되는 중[70] 가해지는 성 폭력, 그리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당하게 되는 폭력 등이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인신매매 되어 빚 때문에, 혹은 계약으로 묶여서 노예처럼 강제결혼, 가사조동, 농사일로 착취당한다.

80. 때때로 대중매체는 인쇄물에서, 텔레비전이나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시청각 자료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려낸다.[71] 인터넷 역시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담을 자료들을 생산하여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부추긴다. 인터넷은 아동을 유인하여 아동들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한다. 인터넷은 또한 아동들을 폭력적이고 포르노그래픽한 자료들에 노출시키고, 성인들과 다른 친구들에게 당하는 왕따, 괴롭힘 등의 위험에도 노출시킨다.[72] 캐나다와 영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이동전화기에 의해 괴롭힘과 왕따에 희생되고 있다고 한다.[73] 또한 타인에 대한 거짓정보를 온라인에 올려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도 한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아동들에게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쇄물, 텔레비전, 혹은 영화를 보는 것을 제한하는 일 보다 훨씬 어렵다.

---

69) Darfur: women raped even after seeking refuge; donors must increase support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Human Rights Watch, press release, 11 April 2005; Lives blown apart: Crimes against women in times of conflict(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04); A. C. Okot, I. Amony and G. Otim, Suffering in Silence: A Study of 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SGBV) in Pabbo Camp, Gulu District, Northern Uganda(New York, UNICEF, 2005); J. Gardner and J. El Bushra, Somalia, The Untold Story: The War through the eyes of Somali Women(London, CIIR and Pluto Press, 2004).

70) J. Ward, If not now, when?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refugee, internally displaced, and post-conflict settings (The Reproductive Health for Refugees Consortium, 2002); Seeking Protection: Address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in Tanzania's Refugee Camps (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00).

71) Trafficking in human being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in Africa(2nd edition) (Florence, UNICEF Innocenti Insight, 2004).

72)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exploitative practices(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5).

73)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Desk Review: North America(2005).

IV. 성과

81. 본인의 연구 설문지에 대한 각 정부의 응답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결과보고는 본인이 위에서 제시한 아동폭력의 모든 형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기관들에 의해 이미 수많은 노력들이 개발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82.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은 지역자문단(Regional Consultations)에게 발표 되었고, 이 중요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역량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83. 192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 선택의정서와 무력분쟁 관여에 과한 선택의정서에 많은 국가들이 비준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시행된 이래로 다른 중요한 국제문건들이 채택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비준하였다. 국제노동기구협약(ILO) 182호는 1999년에 채택되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 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억압, 체벌, 그리고 인신매매 방치를 위한 선택의 정서가 2000년에 채택되었다.

84. 이러한 법적인 문건에 기초하여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고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졌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182호를 통해 새로운 노동법들과 국가 행동계획들이 제정되거나 수정되었고 가장 잔악한 형태의 노동을 없애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아동인신매매는 반 아동인신매매 법을 통하여 아동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된 국가들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이 강화되어 왔다.

85. 본인의 설문지에 대한 답들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응한 활동들이 현저하게 입법적이었음을 알린다. 국가들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선택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 법에다가 자국의 법을 조화시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 개혁은 아주 미시적인 접근으로 아동폭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효과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아동폭력과 관련된 그 행위(비록 중요하긴 하지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주 적은 수의 국가들만이 효율적으로 아동 폭력을 다룰 수 있는 관점의 법제도적 점검을 했을 뿐, 법적 개혁을 포함한 실천이 과제로 남아있다.

86. 여러 국가에서 아동폭력에 대해 언급한 법적 조치는 주로 성폭력과 신체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심리적 폭력은 간과하고 있다. 보호와 처벌에 집중을 하는 반면 회복, 재통합, 보상에는 관심이 적다. 또, 어떤 국가들은 예방을 법적 측면에서 보호와 처

벌 등을 통해 단순한 대응만 하고 있을 뿐이다.

87. 본인의 설문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아동폭력과 관련, 각 국가에서 행동계획, 사업, 정책 고안들이 주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아동의 성 착취나 인신매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어떤 국가들은 아동보호와 아동관련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구조- 청소년법원 혹은 가정법원을 포함한 -를 창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국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권리와 아동보호 문제를 위해 아동권리옹호, 인식증진, 그리고 아동권리교육/훈련 사업들이 수행 되었다. 또한 대중매체들도 아동권리 인식 증진과 정보 확산 및 사회동원 문제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은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하여 보고 하기도 하였다. 즉, 폭력에 희생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등의 해로운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88. 법시행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조치들이 충분치 않지만,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 특별절차 훈령소지자들은 여러 현장에서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역 당사국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좋은 프로그램들과 조치들을 통해 여성 성기절단문제, 아동노동 특히 가장 잔악한 형태의 노동문제들, 또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등을 철폐하기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거리아이들을 돕고 지원하기위한 프로그램들, 부모를 돕고 부모들의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 - 장애를 가진 아동들, HIV/AIDS에 감염되거나 영향 받은 아동들, 토착민 자녀들과 국가, 민족, 종교, 언어 등의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들이 제정되었다.

89. 지역적 인권보호기구들이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한 법적기준을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인권법원과 유럽 사회권위원회를 포함한 유럽인권기구의회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적학대와 체벌을 포함하는 모든 폭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결과 결단을 이행 하였다. 아동인신매매 및 신정보기술과 연관된 폭력을 문제 삼는 법적 문건들이 유럽 법기구 의회와 함께 개발 되었다. 아프리카연합의 회원국들은 여성성기 절단 같은 해로운 전통 행위의 근절과 관련된 추가 조치들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아프리카 인권 헌장을 채택하였다. 또 지역 내 수준에서는 2000년에 지역협력을 위한 아시아 연합에서 아동과 여성 매춘을 위한 인신매

매 예방과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대한 지역협약을 채택하였다.

Ⅴ. 결론

90.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위해 제안되거나 개발된 조치들의 영향을 저해하는 요인들 또한 존재한다. 이는 아동폭력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고,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폭력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통계의 부족도 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폭력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흔히 사건에 반응하는 식으로, 폭력이 낳은 증상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전략들도 단편적으로 수립되어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문제제기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할당된 자원도 불충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약속들이 국가 수준에서 실천되지 못하였다.

91. 당사국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약속을 이미 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과정에서 만난 아동들의 증언과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과 관련된 약속들이 충족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미연에 방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들은 이제 인권에 대한 긴급한 의무수행과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 한다는 국제 약속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법적 의무가 당사국에게 있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와 개인들과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아동희생자들에게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인정하거나 용인 한다면 그 누구도 아동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92. 동시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그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폭력의 형태,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 가해자 혹은 가해자들을 반영하여 다각도로 접근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93. 연구과정에서 아래의 원칙들이 나의 제언에 영향을 주었다.

(a)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동이 성인보다 덜 보호 되어서는 안 된다

(b) 모든 폭력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폭력을 만연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정책들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c) 국가는 아동들의 보호권을 지켜주고, 서비스에 도움을 받게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줄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d)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 아동이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나이나 성숙과정과 연관 된다. 어떤 아동들은 성별, 인종, 인종적 태생, 장애 혹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특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f) 아동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행 될 때 반드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VI. 제언

94. 본인의 제언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모든 노력에 적용하기위한 포괄적인 권고문이며, 가정과 학교, 그리고 다른 교육 세팅, 보호와 구금을 위한 시설들, 일터와 지역사회에 적용할 구체적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95. 우선적으로 국가들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의 법, 행정, 사법, 정책제정, 서비스 전달체계, 제도적 기능을 다루고 있다. 어떤 제언은 사회의 매우 중요한 다른 부분들에게 제안하는 사항들이다. 이에는 전문가기구, 무역연합, 연구소, 고용인, 그리고 비정부기관과 지역사회조직들이 포함된다. 또한 부모와 아동들에게도 전하는 제언들이다.

A. 포괄적인 제언

1. 국가 및 지방의 약속과 행동 강화

96. 모든 국가들이 아동폭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개발하고 그것이 국가행동계획 절차에 통합되어야 함을 권고 한다. 한 국가의 전략, 정책, 행동계획은 현실감 있어야 하고, 기한 안에 시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광범위한 시행전략에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킬 역량이 갖춰진 기관과 협력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국가의 법, 전략, 정책, 계획, 그리고 사업들은 국제적 인권과 공인된 과학적 지식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의 전략, 정책, 계획의 실행은 목표와 시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 정책, 계획과 사업은 각국의 상황과 자원을 충분히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

2.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

97. 본인은 18세 미만의 어떤 아동도 사형제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석방의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처해도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이 행한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사형집행을 즉시 정지하고 국제 인권기준에 준한 다른 방법으로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한다. 18세에 이르기 전에 지은 범죄에 대하여 내려진 사형선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98. 본인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들, 즉 체벌이나 조기결혼, 여성 성기절단 같은 해로운 전통적 습관들, 그리고 소위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범죄, 성폭력, 고문을 비롯하여, 다른 형태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등은 아동권리협약이나 고문 및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국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등 국제적인 법적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 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위원회가 General comment No. 8(2006)에서 아동들을 체벌과 그 외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협약 제19항, 제28항 2호, 특히, 제37항) (CRC/C/GC/8)

3. 예방우선

99. 본인은 국가들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 그 근본원인을 다루면서 미연에 방지 하도록 권한다. 폭력이 발생한 후 개입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고 위험한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이 분배되어야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부재, 가족해체, 알코올과 약물 남용 그리고 총기나 다른 무기에의 접근성 등을 다루어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에 따라서, 빈곤, 성별 및 다른 형태의 불평등, 수입의 격차, 실업, 도시인구집중 등 사회를 약화시키는 모든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비폭력 가치와 인식증진

100. 본인은 국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아동폭력, 일반화 되어있는 성역할과 차별, 체벌의 수용, 그리고 해로운 전통관습들을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을 주장한다. 국가들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이해 시켜야 한다. 아동폭력으로 생기는 해로운 영향에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모든 행태의 언론 매체가 아동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들은 대중매체가 비폭력 가치를 갖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5. 아동을 위하여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 개선

101.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함을 권고 한다. 일차적, 그리고 이후의 연수를 통해 또는 사업활동 중에 아동의 권리존중과 아동권리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하여 일하는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 모두가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야 한다.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과 명백한 활동 기준들이 조성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6.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102. 각 국가는 입원전의 간호와 긴급 치료, 그리고 아동을 위한 법의 지원은 물론 폭력이 목격되거나 적발되는 등의 적절한 경우에는 아동의 가족들에게도 법률적 지원과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보건과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건, 범죄 재판, 사회복지 제도는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고안되어야 한다.

7. 아동 참여 보장

103. 각 국가는 적극적으로 아동의 참여를 도모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항을 고려하여,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폭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아동기구와 아동중심프로그램들은 지원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8.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 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104. 아동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보호 및 처벌기관에 있는 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동이 학대를 신고하고, 전문 상담가에게 말하고, 지원 및 조언을 비밀리에 요청할 수 있는 상담전화서비스와 같은 방법들이 고안되어야 하며, 신기술을 이용하여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의 수립도 고려되어야 한다.

9. 책임보장과 처벌 감형의 폐지

105. 각 국가들은 모든 아동 폭력범을 적합한 형사상, 시민의, 행정의, 전문적 절차와 제재를 통해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폭력범죄와 아동성학대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들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0. 성별적 차원의 아동 폭력에 대한 대응

106. 각 국가들은 폭력에서 여아와 남아가 겪게 되는 다른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여, 비폭력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성인지의 측면에서 고안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들은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이며, 폭력예방의 포괄적 전략 중 한 부분으로써 성차별의 모든 형태에 대응해야 한다.

11. 제도적인 국가 자료 수집과 조사의 개발 및 시행

107. 각 국가들은 취약 그룹을 찾아내고, 모든 단계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목표달성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정보 체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제적으로 동의된 기준들로 국가 지표를 나타내야 하고, 각 시대의 진행과정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취합, 분석,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국가적 자료 수집에 출생, 사망, 결혼 자료 등록을 생성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한다. 국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아동과 형사상 관할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자료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자료는 성별, 연령, 도시/시골, 가정, 가족 특징, 교

육, 인종에 따라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폭력이 자행되는 상황들에 대한 아동폭력 국가연구안 개발을 제안하는데, 조사는 취약한 여아와 남아 그룹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동 및 부모와의 인터뷰 등으로 실시될 수 있다.

12. 국제적 약속의 강화

108. 각 국가는 아동권리협약과 무력 분쟁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참여와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두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시행해야 한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의 행동계획(Plan of Action)과 비엔나 선언에 따라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목적과 동기에 모순 된 유보사항들은 철수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관련된 국제 및 지역 인권협약들을 비준해야 한다. 관련 인권협약은 다음과 같다: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Punishment 와 이의 선택의정서,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와 이의 선택의정서, 최소고용연령에 대한 ILO 제 138호, 최악의 아동노동에 대한 협약 제 182호,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완하는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국가는 국가의 모든 국제적인 법적의무를 시행해야 하고, 협정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109. 각 국가는 폭력 및 보건에 대한 세계 보고서(Wor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74]의 제안사항 시행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보건총회 결의안과 그 외 본 결의안을 지지하는 지역공공보건 결의안과 관련하여 유엔아동총회에서 수립된 폭력예방을 위한 약속들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B. 환경 특별 제언

1. 가정과 가족

110. 가족은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주요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보호를 위해 부모와 양육자들을 지원할 것을 숙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 한다:

---

74)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Report of the World Health Assembly(WHA56.24), Fifty-sixth World Health Assembly(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a) 아동양육의 역할에 있어서 부모와 그 외 양육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한다. 보건,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질 높은 초기 아동발달 프로그램, 가정 방문, 출산 전·후 관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수입증대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b)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구체적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가정들에는 여성 혹은 아동 가장인 가정, 소수민족이나 차별을 당하는 그룹에 속한 가정,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포함된다.

(c) 훈육의 비폭력적인 형태를 중점으로 하는 성인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동의 발달 역량과 아동관점 존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부모-아동 관계를 촉진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훈육의 형태와 아동발달접근들을 소개해야 한다.

2. 학교와 그 외 교육환경

111.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친아동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폭력을 묵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는 시정되고 비폭력적 가치들과 행동이 학습되어야 함을 숙지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a) 국가는 학교가 성차별 고정관념과 행동, 그리고 차별의 다른 형태들과 관련, 모든 직원과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b)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 혹은 신체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들을 채택하도록 한다.

(c) 비폭력적인 분쟁해결방법과 같은 기술들의 수립을 장려, 비협박적 정책들의 시행, 학교 내의 모두에 대한 존중 촉진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실태 보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의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d) 모든 형태의 차별을 활발하게 혹은 소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교과과정, 수업진행, 그리고 그 밖의 시행들은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3. 보호 및 사법 제도

112. 국가는 보호기관과 청소년 구류시설에 있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a) 시설 보호는 최후의 방법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가운데, 가정보존과 지역사회기반 대처방안들을 지원함으로써 시설기관화 비율감소를 최우선으로 한다. 가정기반 보호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어야 하는 동시에 영유 아에게는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마다, 국가는 보호기관에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상황 하에 그들의 가족들과 재결합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원주민 아동과 소수민족에 속한 아동은 특별히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식하며, 국가는 이러한 아동과 그들의 가정이 문화기반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지사들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b) “우범죄” (아동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범죄, 예, 무단결석, 가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생존을 위한 행동들(구걸, 성매매, 버려진 음식 등을 찾아 헤매는 것, 빈둥거림, 부랑생활), 밀매 혹은 불법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등을 비범죄화 함으로서 처벌기관에 들어가는 아동의 수를 감소한다. 국가는 또한, 국제 기준[75]을 반영하는 포괄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회복될 수 있는 청소년 구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타인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된 우범자들만 구금해야 하며, 지역사회기반 재활과 재통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방법들에도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c) 아동을 가정 혹은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시설로 이송한 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동이 보호기관 혹은 구류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원인들을 검토함으로서 아동의 이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d) 보호 및 구류시설에서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고발, 조사, 강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e) 기관에 있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도록 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보

75) See, for example, articles 37, 39 and 40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the Beijing Rules),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the Riyadh Guidelines),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 the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호되기 위한 방법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f) 사전공고하지 않은 방문을 행하고, 사적으로 아동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며, 폭력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진술을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독립 기관에 의해 보호 및 구류시설들이 효과적으로 모니터 되고 정기적으로 접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 구류시설에 예방을 위한 독립적인 방문 가능 제도를 제공하는 고문반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4. 노동현장

11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제 138, 182호,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그 외 국제협약들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미성년은 노동에 가담할 수 없으며, 일터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보호해야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제안 한다:

(a) 국내 노동법을 시행하고, 아동노동철폐를 국가 개발 정책으로 포함시키고, 아동노동의 “잔혹한 형태”를 제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이러한 “잔혹한 형태”는 폭력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착취가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 어업, 가사일과 같은 비공공부문에서 아동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에 아동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b) 아동이 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즉, 국제협약을 준수하는)에서는 폭력예방프로그램, 고발 제도, 소송절차들을 명백히 포함하는 규제제도와 조사과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c) 아동이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미성년과 “잔혹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일을 그만 두고,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삶의 기회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복 및 통합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d) 기업 사회책임 방법들을 고무하고, 사기업 부문, 무역 연합과 시민 사회가 노동현장에서 예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윤리지침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기업 부문, 무역 연합, 시민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5. 지역사회

114.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이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들과 그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a) 지역사회의 긴급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전략을 시행한다. 위험 요소들은 장소마다 차이를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알코올과 마약에 대한 쉬운 접촉, 총 및 그 외 무기들을 소지하는 것, 불법적 활동에 아동을 사용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b)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취약성과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공공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 가정, 고용, 그리고 질 높은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시행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 집단간, 집단내의 참여와 빈곤, 그리고 관계망 개선을 위한 접근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c) 특별히, 소외된 계층과 차별당하는 그룹에 속해있는 아동들을 비롯하여, 모든 아동들을 대할 때에 적합한 방법들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아동권리 교육이 경찰력을 위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안하고 시행한다. 또한, 아동발달의 단계, 정체성 발달의 과정, 아동에 대한 폭력의 행태와 성격, 일반 또래 그룹과 비행 소년 그룹의 차이점, 알코올 및 마약의 영향에 있는 아동들의 적절한 관리 등의 교육이 경찰들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d) 희생자와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들의 상호 추천과 사후 점검을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들에 대한 조기 접근을 제공한다. 입원전의 치료와 희생자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지원 서비스와 함께 응급치료를 개선시킨다. 가해자가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가해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도 제공해주어야 한다.

(e)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지방정부 및 시민 사회의 노력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특별히, 절대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염두에 두면서, 소년 소녀들을 위한 안전한 오락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등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f) 지방 및 시(市)정부가 물리적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니기에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이, 밝고 안전한 공공장소의 제공은 도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g) 관련 국제 협약과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는 적합한 법적 틀을 개발하고 인신매매 근절 국내법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양자의, 지역 내에서, 지역 간의,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아동을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법적 정의들, 절차들, 그리고 모든 단계의 협력을 조화시켜야 한다. 전략은 일차 예방에서부터 인신매매 범들을 다루는 법적 강화에까지 이르러 세워져야 하고(즉, 아동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을 바꾸는 것), 인신매매 및 관련된 모든 착취의 희생자들이 유죄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h) "이중 범죄[76]"의 조건들을 폐지하고,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법행위의 처벌 강화를 위해 국내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에 대한 선택의 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선택의 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법행위자의 본국송환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사용하는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당부한다.

(i) 인신매매당한 아동이 범죄 조사와 법적 절차에 연루되는 경우, 이들에게 보호, 의료적 도움, 적절한 지원, 사회 재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들은 아동 희생자와 범죄행위 목격자를 포함하는 사법관련 사항들에 대한 유엔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에 만반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77]

(j) 아동의 성착취와 기타 폭력의 모든 형태에서 인터넷, 핸드폰, 전자오락을 포함한 정보기기의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위험적 상황들을 교육하고 알리는 방법들을 지원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유통시키고,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적절한 처벌이 있도록 조치한다.

(k) 아동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기준이 고안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산업을 장려시킨다. 각각의 보호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신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전 세계적 교육 캠페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C. 시행과 사후점검

---

76)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5/20.

77) Under 18-Delegates' Keynote Address, in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Outcome Report: East Asia and the Pacific(2005).

"아동에 대한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속담에 "Gu Cheung Lan M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와 아동이 한 손이면, 어른들은 다른 한 손이다. 지역사회도 한 손이다. 정부도 한 손이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평화, 사랑, 화합이 있는 지역사회가 세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Young People, 아시아태평양

115. 제안된 사항들의 시행에 대한 근본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다른 집단의 참여는 국가의 의무수행에 절대적인 지원이 된다. 이러한 참여는 유엔기구들, 국가 인권 기구를 포함하는 시민 사회 기구, 의사・간호사 연합과 같은 전문 기구, 지역사회 연합, 교육자, 부모,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다.

1. 국가 및 지역적 수준

116. 국가차원의 시행은 지체 없이 곧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한 국가 계획 절차의 통합은 2007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면 장관급으로 구심점이 임명되어야 한다. 2009년까지 아동에 대한 폭력금지 법을 마련하고 신뢰로운 국가 데이터 수집 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이상의 제안에 대한 자료를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권고한다. 제 65차 유엔 총회에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권고한다.
117. 국제기구들은 정부가 본 제안사항들의 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 재정 기구들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책과 활동을 검토해주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유엔 국가 팀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빈곤감소 전략, 국가 평가들, 개발 원조 틀에 포함시켜야 한다.
118. 국가 인권 기구 지위 관련 규범(The Paris Principles)[78]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를 위한 옴부즈맨(Ombudsperson)이나 감독관의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보건과 아동보호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의 차원에서 분명한 임무를 가

78)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vailable at http://www.unhchr.ch/html/menu6/2/fs19.htm#annex. These recommendations were endors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48/134 of 20 December 1993.

지고 아동권리를 모니터하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적절한 경우,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이 아동권리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사항들을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19. 연구개발에 대한 지역적 기관들의 기여하는데 있어, 지역 기관들은 제안사항들의 시행과 사후점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사후점검을 위한 전반적인 틀의 주요부분으로써, 지역적 체계의 향후개발이 장려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 보호체계들도 또한 제안사항 시행 모니터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2. 국제적 수준

120. 아동 폭력을 대처하는 데에 다양한 분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유엔총회는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의 예방과 제거를 촉진시키고, 국제적·지역적 통합을 고무하며, 현 제안사항들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고위급의 글로벌 애드보킷의 역할을 하는 아동폭력 특별대표의 임명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

121. 특별대표는 각각의 국제, 지역, 국가 포럼에서 본 연구의 제안사항들을 알리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제 65차 총회에 제출될 제안사항들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122. 특별대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해야 하지만,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과 무력분쟁을 위한 사무총장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특별 보고관,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 보고관,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대표는 지역 인권 보호 제도와 그 외 모든 지역 및 국가들의 사후점검을 위한 노력에 협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3. 특별대표는 일차적으로 4년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시하고 있는 기관간의 성공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비정부기구와 아동들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폭력 기관간 그룹(UN Inter-agency group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도 사후점검을 지원하기를 요청한다.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1)]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때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체벌과 관련하여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는
부모와 가족의 삶에서 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책자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묻는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제공하고
체벌금지에 대한 이유와
그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없애줄 것이다.
또한 이 질문과 대답들은
아동이 읽기 쉽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보고서는 2004년 1월에 시작된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Save the children sweden이 함께 발간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때, 가장 빈번하게 묻는 질문들에 답을 제공하고, 신체적 체벌금지 이유와 그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없애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질문과 대답들은 또한 아동이 읽기 쉽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를 가진다.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이유

신체적 체벌은 정말로 해롭나요?

네, 물론입니다! 체벌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해를 끼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신체적 체벌이 아동의 존재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종종 간과합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12조에는 '아동은 그들에게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를 통해, 아동들이 신체적 체벌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발간된『UN 아동 폭력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아동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체벌 문제의 특성과 범주에 대해 최초로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이 보고서를 집필한 Paulo Sergio Pinheiro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구 과정 동안, 아동은 시종일관 모든 폭력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어른들의 용인과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던 폭력은 아동에게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피해를 가져왔다. 정부는 실제로 이 문제의 시급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아동은 오랜 시간 동안 어른들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 받아왔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규모와 영향이 점차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동들의 침해되는 권리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시점이 되었다."

신체적 체벌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신체적 체벌이 장단기적인 잠재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개인과 사회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발행되었던 88편의 메타 분석연구는 신체적 학대의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와 그것이 아동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 아동의 폭력성, 반사회적 행동, 낮은 수준의 도덕적 내면화, 그리고 낮은 수준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매를 사용할 때 가해지는 힘에 관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그들 중 2/5정도가 의도한 것과 다른 강도의 힘을 사용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런던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는, 힘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일 때 사용되는 힘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이 때 가해지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부정확해지는 뇌의 활동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폭력을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이나 성인을 때렸을 때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여성 폭력, 인종차별과 같은 다른 이슈들처럼 체벌 또한 정책가들은 공공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먼저 이끌어야 하지요. 중요한 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들도 어른과 같이 절대적 인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낸 나라는 대부분 대중의 의견에 앞서 실행했어요. 그러면 대중들은 재빨리 그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지요. 아마 몇 년 후, 우리는 아동 체벌을 법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후회할 날이 올 거에요. 그게 당연한 결과이지요. 사실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질문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진술되었는가, 답변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만약 사람들이 체벌금지와 그 목적, 그리고 아동보호에 존재하는 불평등성에 대하여 전부 알고 있다면, 체벌 금지에 매우 지지적일 거에요. 똑같은 여론조사가 다른 질문방식으로 제공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인 사례도 이미 있지요.

어렸을 때 맞았던 것은 나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신체적 체벌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당신을 때리지 않았다면, 잘 자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부모님께 맞거나 창피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 겪었던 체벌이 전혀 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신체적 체벌을 하는 것으로 아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만큼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어렸을 적 경험했던 고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때리는 부모들은 보통 자신이 아동일 때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훈육이 필요한 순간에 체벌을 사용하기 시작하지요. 연구결과에서 보면, 부모들이 체벌 후 종종 죄책감을 느

낀다고 나오지만, 부모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여전히 자녀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체벌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 세대를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세대의 사람들은 또 그 시대의 문화적 흐름에 맞게 행동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현재의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시대는 변했고, 사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아동을 어른과 똑 같은 권리의 주체로 재인식하는 것은 사회에서 여성 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아동 폭력을 막고자 하는 사회적 수용과 법제화에 대한 실질적 행동이 요구되지요.

몇몇 사람들은 "나는 아동기 때 맞았지만 잘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부정적 경험을 참으면서 '잘 자라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들의 경험이 '괜찮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 경험을 다루고, 그들 삶이 '괜찮았다'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일 뿐이지요.

저는 아동, 청소년들이 신체적 체벌을 옹호 하는 것을 종종 들었어요.
그들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동들이 "신체적 체벌은 때로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신체적 체벌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체벌을 통해 부모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물론 우리는 이런 아동청소년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른들은 아동의 말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에요. 우리는 이미 아동이 신체적 체벌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체적 체벌은 정말, 상처를 줍니다"라고 말한 3쪽을 보세요.) 아동들이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고 좋다고 이야기 할 때는 신체적 폭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적 규준에 맞춰 사회화 되어가고, 그들의 부모님의 행동과 태도가 답습되어가며, 그들의 경험을 합리화시켜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아동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을 수 있는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학대와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동에게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알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와 다른 성인들의 책임이지요.

부모는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를 키울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학대와 같은 극도의 사례에 한해서만 비난 받아야 하지
않은가요?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스스로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권리를 가진 것처럼, 아동 또한 똑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아동 권리의 문제가 가정에서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아동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금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가족의 삶에 개인이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동을 보호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양육 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어요(제 18조항). 어떤 사람들은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를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일이라고 주장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해 아동권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지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원칙의 해석은 일관적으로 모든 협약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의 의무화가 포함되고, 아동의 견해가 힘을 가지는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다른 종류의 잔혹하고 품위를 저하시키는 벌의 형태를 포함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신체의 소중함을 침해하는 신체적 체벌은 어떠한 것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이를 때려 학대하는 것과 사랑의 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너무 구분 없이 모두 신체적 체벌로 여겨 금지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이를 때려 학대하는 것은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보다 신체적으로 더욱 큰 해를 끼칠 거에요. 그렇지만 둘 다 폭력의 연속선상에 있고 둘 다 아동의 권리, 즉 존중받고 신체적으로 고결할 권리를 위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이나 일반성인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폭력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폭력수준이라는 기초선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이 아동에게만 적용되어야만 하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사이에 연결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 위험성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해요. 사랑의 매는 '최악의 모순적인 말'입니다. 이 단어는 나쁘지 않은 용어처럼 보임으로써 폭력을 암묵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속임수일 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몇 대 매를 때리는 것과 아동학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반발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사용된 폭력의 강도에만 집중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폭력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폭력 그 자체가 '아동의 신체가 보존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체벌은 법 아래에서 학대와

보호,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아동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법 제정자들과 정부는 전통적으로 '아동학대'와 '신체적 체벌'을 분리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대는 신체적 체벌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벌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동을 때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성 폭력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위협은 어떤 것도 수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동의 경우에만 법으로 용인되는 폭력과 그렇지 않은 학대 사이에 임의적인 구별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아동 학대와 신체적 체벌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체벌을 전적으로 금지하기 보다 안전한 체벌을 정의하는 것은 어떤가요?

때리는 것, 맞는 것에 있어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매는 아동의 신체보존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경시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가벼운 신체적 체벌이 학대상황의 심각한 폭력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힘의 사용 시 그 정도에 대해 개인적으로 판단이 부정확해지는 경향성에 대해서도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안전한 체벌이라는 것 자체를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3쪽)

어떤 나라에서는 아동을 때리는 방법, 나이, 몸의 부분, 사용되는 도구 등에서 수용될 수 있는 정도를 정의하고자 하였지요.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실행이에요. 여성이나 다른 성인, 아니면 또 다른 인구집단을 학대하는 방법에서 수용적인 방법에 대한 정의를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동들 또한 모든 인간과 동등하게 폭력으로부터 마땅히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 종교는 제가 신체적 체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저에게 체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종교적 자유는 인권에 위배되면서 지켜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동 권리 위원회는 분명히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기반해서 신체적 체벌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요. 체벌사용의 정당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체벌의 필요성과 의무를 제공하는 종교교리의 해석도 함께 제시하지요. 종교적 신앙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보장됩니다(Art. 18). 그렇지만 종교나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타인의 존엄성과 신체에 대한 존중과 반드시 공존되어야 해요. 따라서 개인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지나친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아동을 때리거나 다른 형태의 심각한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최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정을 포함해 모든 신체적 체벌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평화를 위한 세계종교인의 모임이 일본 교토에서 열렸고, 800명이 넘는 종교지도자들이 "아동폭력에 반대하는 종교적 합의문"을 채택하였지요. 그 협약문은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면서 동시에 신체적 체벌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뜻을 함께 합니다. 이상의 존경 받는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 신체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폭력을 금지하고 아동 폭력에 대해 아동 권리 협약 기준에서 명시하는 것에 맞게 법적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재촉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이야기 하나요? 신체적 체벌을 막을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하는 수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가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부모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워요. 우리에게는 "법이 허락해야만 무조건 괜찮다."는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교육은 법적으로 지지 받을 때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모든 신체적 체벌과 잔인하고 모욕적인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과 강제적 금지 둘 다 필요해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은 아동들이 가정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든 최소한 성인과 똑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해요. 법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는 법 개정 또한 대중과 부모를 교육하는 것과 연결될 필요성이 있어요. 체벌 금지는 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을 찾도록 동기화 시키고, 전문가와 정책가, 그리고 대중매체들이 교육을 제공하고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선생님들과 다른 학교 관계자들도 자원부족과 혼란스러움 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신체적 체벌 금지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러한 조건들이 개선될 때까지 그들을 좀 기다려주고,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신체적 체벌이 아동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 어른들이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배출한 결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가정을 비롯하여 많은 시설들에서, 성인들이 아동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인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아동에게 폭발해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요. 여성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남성들의 상태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동들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들의 생각과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을 때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화가 나서 아동을 때리게 되는 성인들은 자주 죄책감을 느끼고, 침착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자녀양육 방식에 화를 내고 있음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고 대신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 아동을 지도하는 가정과 시설에서의 삶은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습니다.

분쟁영향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성인들은, 부모와 교사를 포함해서 모두 아동들과 똑같이 폭력과 착취의 희생자들이지요. 그들은 아동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아동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게 아동권리 침해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 그들 고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서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보존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들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백인사회나 유럽 사회 중심의 문제입니다. 신체적 체벌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자 아동 양육의 전통방식이에요.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 아닌가요?

아동을 때리는 것이 문화적인 자랑거리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여하튼 역사적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이 많은 부분 노예, 식민지배 그리고 선교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어요. 아동에게 신체적인 체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문화권은 매우 적고, 수렵채집 사회 같은 곳밖에 없는데, 그런 가장 '자연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회는 이제 도시화 영향으로 급속히 사라져버렸지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간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전 세계 아동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나 전통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화권은 신체적 체벌을 근절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이 인종, 문화, 전통과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체벌을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불법이라고 판결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정책가들을 포함한 성인들이 이런 이슈가 쉽다고 생각했다면, 매우 오래 전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거에요. 아동들도 어른과 똑같이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보존에 대해 존중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아동이 매우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인들은 여전히 훈육이나 통제라는 이름하에 아동들을 때리고 해를 가하는 것을 권리라고 인지하고, 포기하기 어려워하지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 개인적인 경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맞았어요. 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때렸지요. 우리들 중 어떤 사람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가 받아왔던 양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정책가들과 의견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아동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체벌을 인간의 권리와 동등한 기초적인 이슈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이 비난 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사회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해왔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동들과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신체적 체벌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아동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즉, 모욕적이고, 잔인하고, 또는 인격을 깎아 내리는 체벌의 모든 형태에서 아동을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ii) 성인들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종종 아동을 때립니다. 많은 성인들이 아동을 이성적으로 훈육하기 보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때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자주 거듭되면서, 아이들을 때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는 자연스럽게 문제 행동을 다루는 방법으로 자동화 되지요. 자동화 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정부는 비폭력적이고 긍정적인 자녀양육 방법에 대해 대중을 교육시키고 인식증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때릴 필요가 없어지고,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의 성격들도 달라질 수 있지요.

(iii) 대체 행동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원인이지요. 법 개정은 부모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과 사회가 일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동과 성인이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기 전에, 성인들이 자녀를 때리지 않으면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폭력근절을 법제화시키기 전에 남자들이 여자를 적절하게 대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모든 신체적 체벌금지의 영향력

만약 부모들이 그들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 존중하지 못하는 응석받이로 무례하게 자라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훈육은 체벌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훈육은 강제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관용,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자랄 때 성인, 특히 그들의 부모에게 자기 통제가 성숙되도록 안내 되고 지지 받으며 부모에게 완전하게 의존하며 삶을 시작하지요. 신체적 체벌은 아동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도 주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나 갈등의 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는 격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아동을 때리는 것은 자녀를 혼란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아동들은 다른 친구들을 함부로 때릴 수 없고, 어른들은 또 다른 어른을 함부로 때릴 수 없는데, 자신보다 더 크거나 강한 어른들이 작고 약한 아동을 때리는 것은 괜찮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즉 이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틀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아동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답니다.

존경은 공포에 대한 혼란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타나는 좋은 행동은 아동이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른에 대한 존경 때문에 보이는 행동은 아니에요. 아동은 그 사람이나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을 때, 진정한 존경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때렸을 때, 아동은 오직 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배우고 폭력이 논쟁을 다루기 위한 수용적인 방법이라는 인식만을 배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다른 아동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보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거에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면서 문제나 갈등 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신체적 체벌과 다른 잔혹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체벌은 훈육의 긍정적 형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동들을 망치는 이러한 체벌 대신, 자녀가 자기 행동의 결과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긍정적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을 번역하고 적용 '폭력 없는 긍정적인 양육 및 교육 증진을 위해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신체적 체벌이 금지된다면 정서적 학대나 비난 또는 감금과 같은 다른 더 안 좋은 방법들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아동은 신체적 체벌뿐 만 아니라 모욕적이고 잔인한 처벌과 같은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 개정은 아동에게 비폭력적인 관계증진과 인식증진과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가능한 최상의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지요. 그러한 부모가 자녀를 때린다면, 자녀의 긍정적인 삶의 시작에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렵고, 대개 자신들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훈육은 그런 부모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 없이 서로 존경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아동을 '그들 스스로의 삶에 권리를 가진 존재로 간주하고, 아동을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벌을 범죄로 여긴다면, 수천 명의 부모가 체포되고 그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주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모든 신체적인 체벌을 금지하는 법의 중요점은 부모를 감옥에 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동 권리를 실행하고, 아동들과 비폭력적이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를 움직인다는 의미이지요. 신체적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에서 부모의 구속율 증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신체적 체벌 금지는 아동을 위한 국가의 인권의무 수행을 달성시켜줍니다. 체벌금지 법제화 작업은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요. 각 가정에서 자녀를 때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수용될 수 없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주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체벌금지 법제화 이행은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가장 중시한다는 사실을, 경찰을 비롯해 지방 공공기관의 권위자들까지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유해한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체포나 다른 공적 개입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한 절차는 아동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동 권리 위원회는 일반 논평 8에서 부모들에 의한 신체적 체벌 금지의 맥락으로 체포에 대한 이슈

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정을 포함해 모욕으로부터 아동과 성인 모두를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은, 부모들에 의해 아동이 신체적 체벌을 받은 사례 모두를 부모체포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Minimis(라틴어: 약 최소한의 물건)의 원리 – 법은 사소한 문제를 모두 고려하지는 않는다 – 처럼, 즉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폭력이 법정에 오는 것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 것처럼,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정부는 효과적인 신고체계와 위탁시설의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동 폭력에 대한 모든 보고서는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의미 있는 상해로부터 아동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상해제공에 대한 형벌이 아닌 교육적, 지지적 개입을 통해 부모들의 잔혹한 신체적 폭력 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예방적 목적입니다."

"아동의 의존적인 위치와 가족 관계에서의 특별한 친밀함을 고려할 때, 부모체포에 대한 결정이나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법적 절차와 개입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체포하는 것은 그들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부합하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견해는 체포와 다른 형식적 법적 절차가 개입될 때는, 예를 들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거나, 범인과 격리하는 것은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특별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었을 때 가능한 절차여야 합니다. 이 때 아동의 나이나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 반영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해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때리는 것도 옳지 않은가요?

그것은 무의미해요. 매를 때리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녀가 자해하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충고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특히 영아나 유아일 경우 거의 모든 시간 신체적인 행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양육의 자연적인 부분일 뿐이지요. 만약 아동이 불을 향해 기어가거나 위험한 길로 뛰어든다면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려고 그들을 붙잡거나, 들어올리거나, 위험에 대해 말해주거나 보여주는 행동들을 할 거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신체적인 행동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을 때려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메시지의 의미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아동 권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 양육과 아동을 돌보는 것, 특히 아기와 어린 아동의 경우 종종 신체적인 행동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것은 형벌적이고 고의적인 힘의 사용, 즉 해를 끼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불

편감을 주는 힘의 사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적인 행동과 형벌적인 폭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을 아동에게 하는 행동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과 그들을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 벌을 주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모든 국가법은 형벌적인 성격이 아닌 보호의 목적을 띈 힘의 사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또는 함축적으로 용인하고 있어요. 체벌에 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성격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

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

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

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c)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e)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a)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처
   (b)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처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처
   (d)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처
   (e)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처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

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

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

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ⅰ.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ⅱ.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ⅲ.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ⅴ.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ⅵ.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ⅶ.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

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b)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b)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